

# 우리나라 酒稅制度의 政策課題와 改編方向

1997. 11

成 明 宰

## 序 言

우리나라의 酒稅는 1960년대 말부터 酒精을 제외한 모든 주류에 대해 從價稅 體系로 과세하고 있다. 대부분의 외국에서 주세의 과세 체계가 從量稅 體系로 되어 있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하겠다.

酒類는 전통적으로 主要 財政品目の 하나로 오래 전부터 과세되어 왔는바 國家財政收入 確保에 기여해온 바가 매우 크다. 그러나 주류의 소비가 소득에 대해 비탄력적일 뿐만 아니라 인구증가율이 크게 둔화되면서 飲酒人口의 증가율 또한 크게 저하되고 있는 가운데 酒類의 消費增加 趨勢가 둔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주류산업이 창출하는 附加價値의 國民總生産 對比 占有比와 總租稅收入 對比 酒稅收入 占有比 역시 減少趨勢에 있다. 따라서 최근에는 酒稅의 財政役割이 점차 약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酒稅率 體系는 高級酒 高價酒에 대해서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반면 低級酒·低價酒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의 주세는 과세의 형평성에 입각하여 주세율을 차등화하고 있다. 그러나 소득수준이 향상되면서 소비자들의 주류 소비패턴 또한 高級化되는 추세에 있어 주류의 高級度나 價格과 酒稅率間的 상관관계가 점차 미약해지고 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일부 주종의 경우 課稅의 衡平이 저해되고 있는 경우도 상당수 있다. 이에 따라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기 위해 주세율 체계가 조정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세율 체계는 주류 전반에 대한 주세율 체계의 합리적 조정보다는 부분적 조정에 국한되었던 만큼 현행 주세율 체계는 변화된 주류 소비패턴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주세수입의 증가율이 둔화되면서 財政收入 確保機能이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酒稅가 消費抑制的 租稅로서의 機能하여야 할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범세계적으로도 그러한 방향으로 주세제도를 개편하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주세제도는 아직 주류의 高級度나 價格에 따른 稅率 差等化, 稅收確保 등에 주력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최근 자동차의 보급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飲酒運轉에 따른 社會的 費用이 크게 증대되고 있고, 알콜중독이나 음주에 따른 노동력 손실 및 이에 따른 생산성 저하 등 음주에 따른 총체적인 社會的 外部不經濟 문제가 커다란 社會 經濟的 問題가 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주세제도는 이러한 점에 초점을 맞추어 소비억제적 조세로서의 기능을 강화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음주의 폐해를 축소하기 위한 방향으로 주세제도를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EU를 비롯하여 美國과 캐나다 등 일부의 선진국들이 우리나라의 酒稅制度가 輸入酒類에 대한 차별적이라는 주장과 함께 우리나라의 주세제도가 가지는 차별적 요소를 제거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특히 EU를 중심으로 WTO에 우리나라의 주세제도를 제소하는 등 매우 강경하다. 더욱이 1996년에는 日本과 EU간에 주세협정이 진행되었고 WTO에서 이 문제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내려졌는바 일본의 주세제도가 수입주류에 대해 차별적이라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이에 따라 EU는 우리나라의 주세제도에 대해 더욱 강력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록 우리나라와 일본의 주세제도의 과세방식이 서로 다르기는 하지만 유사한 점 또한 상당히 많기 때문에 韓·EU 酒稅協議에 임함에 있어 신중한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酒稅制度는 대내적으로 주세율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을 뿐더러 대외적으로는 외국과의 통상

협상이라는 문제가 함께 제기되고 있는 만큼 차제에 우리나라의 주세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本 報告書는 우리나라 酒稅制度의 機能을 再定立하고 位相을 제고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현실에 부합할 수 있도록 주세제도에 대한 합리적 改編方案을 모색하고 대외 통상문제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本 報告書는 本 研究院의 成明宰 專門研究委員이 執筆하여 완성하였다. 本 報告書가 발간되기까지 院內의 여러 研究委員들과 財政經濟院 및 國稅廳 관계자들이 협조를 아끼지 않았다. 이에 대해 著者는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다.

本 報告書가 담고 있는 內容과 政策示唆點은 모두 著者 個人의 見解이며 本 研究院의 公式的인 見解를 대변하는 것은 아님을 밝혀둔다.

1997年 11月

韓國租稅研究院

院長 金仲秀

# 目 次

I. 序 論 .....	13
1. 背景 .....	13
2. 懸案 .....	16
3. 報告書의 構成 .....	17
II. 消費稅 課稅에 대한 理論的 接近 .....	20
1. 最適租稅 .....	20
가. 最適租稅에 대한 一般的 見解 .....	20
나. 租稅收入制約條件下에서의 最適租稅 .....	23
다. 最適租稅에 대한 理論的 接近 I .....	25
라. 最適租稅에 대한 理論的 接近 II .....	28
2. 外部不經濟와 租稅의 關係 .....	32
3. 代替效果와 消費稅의 關係 .....	37
가. 代替效果가 있는  경우의 均衡 .....	37
나. 代替效果가 없는  경우의 均衡 .....	43
4. 稅負擔의 衡平性과 個別消費稅의 負擔 .....	45
5. 要約, 評價 및 政策示唆點 .....	47
III. 우리나라 酒稅의 現況과 酒稅率의 國際比較 .....	52
1. 酒種의 分類 .....	52
2. 酒種別 酒稅率 .....	53
가. 酒稅率의 變化推移 .....	53
나. 現行 酒稅率 體系 .....	55

3. 酒稅收入과 酒類消費 推移 .....	59
4. 酒類의 輸出入 動向 .....	61
5. 酒稅의 階層別 稅負擔 分布 .....	66
6. 日本의 酒稅 課稅現況 .....	74
7. EU 및 OECD 主要國의 酒稅率 體系 .....	75
IV. 酒類의 需要分析 .....	84
1. 資料와 需要分析模型 .....	84
가. 分析資料 .....	84
나. 需要分析模型 .....	86
2. 需要分析의 推定結果 .....	87
가. 麥酒 .....	87
나. 燒酒 .....	94
다. 위스키 .....	101
3. 主要 酒種間 代替關係 .....	106
V. 韓·EU 酒稅協議와 우리나라 酒稅制度의 問題點 .....	108
1. 우리나라 酒稅率 體系의 問題點 .....	108
2. 最近의 酒稅 關聯 韓·EU 兩者協議 .....	110
3. 最近의 韓·EU 酒稅協議 進行狀況 .....	111
4. 日·EU 및 칠레·EU 酒稅協議 .....	114
가. 日·EU 酒稅協議 .....	114
나. 칠레·EU 酒稅協議의 進行狀況 .....	117
다. 示唆點 .....	118
5. 飲酒와 國民健康 .....	122
6. 從價稅와 從量稅 .....	123
7. 酒類의 供給區域 制限問題 .....	123

VI. 酒稅率 體系의 改善方案과 期待效果 .....	125
1. 現行 酒稅制度의 基本 改編方向 .....	125
가. 스피릿類間 稅率 隔差 問題 .....	125
나. 燒酒와 보드카의 關係 .....	128
다. 其他 酒類에 대한 酒稅率 問題 .....	128
라. 酒稅率 體系 改編의 基本方向 綜合 .....	130
2. 改善方案 .....	133
가. 燒酒와 위스키間 代替關係가 없는 경우 .....	133
나. 스피릿類 稅率에 대한 알콜도수 比例方案 .....	134
다. 스피릿類 稅率 一致方案 .....	135
라. 酒稅分 教育稅率의 改善方案 .....	135
마. 기타 酒類에 대한 酒稅率 調整方案 .....	136
바. 改善方案 綜合 .....	136
3. 期待效果 .....	138
가. 通商問題와 衡平性 및 外部不經濟 .....	138
나. 價格 및 物價效果 .....	139
다. 豫想 需要變化率 .....	142
라. 稅收效果 .....	144
 VII. 맺음말 .....	 149
 參攷文獻 .....	 154

## 表 目 次

<表 Ⅲ- 1> 酒稅率 變化推移 .....	56
<表 Ⅲ- 2> 우리나라의 酒種 分類와 酒稅率(1997年 現在).....	59
<表 Ⅲ- 3> 最近의 酒類 出庫 및 酒稅賦課.....	62
<表 Ⅲ- 4> 年度別 酒類 輸入量 및 輸入額 推移 .....	67
<表 Ⅲ- 5> 年度別 酒類 輸出量 및 輸出額 推移 .....	69
<表 Ⅲ- 6> 階層別 酒稅 負擔率.....	71
<表 Ⅲ- 7> 年齡別·階層別·消費稅目別 總所得 對比 酒稅 負擔率 (1994年) .....	71
<表 Ⅲ- 8> 主要 酒類製品에 대한 酒稅의 階層別 總所得 對比 稅負擔率(1994年).....	73
<表 Ⅲ- 9> 主要 酒類製品의 酒稅 負擔에 대한 逆進度 指數 (1994年) .....	74
<表 Ⅲ-10> 日本의 酒稅 課稅現況.....	76
<表 Ⅲ-11> OECD 主要國의 麥酒 稅率(1996年 1月 1日 現在)...	77
<表 Ⅲ-12> OECD 主要國의 와인 稅率(1996年 1月 1日 現在)...	80
<表 Ⅲ-13> OECD 主要國의 스피릿類 稅率 (1996年 1月 1日 現在) .....	82
<表 Ⅳ- 1> 麥酒에 대한 回歸分析 結果(短期) .....	90
<表 Ⅳ- 2> 麥酒에 대한 回歸分析 結果 (長期; 3年 移動平均).....	93
<表 Ⅳ- 3> 燒酒에 대한 回歸分析 結果(短期) .....	98
<表 Ⅳ- 4> 燒酒에 대한 回歸分析 結果 (長期; 3年 移動平均) .....	100

<表 IV- 5> 위스키에 대한 回歸分析 結果(短期).....102

<表 IV- 6> 위스키에 대한 回歸分析 結果  
(長期; 3年 移動平均) .....104

<表 V- 1> 日本의 酒稅率 調整 .....116

<表 VI- 1> 酒稅率의 改善方案.....138

<表 VI- 2> 酒稅分 教育稅率의 改善方案 .....138

<表 VI- 3> 酒稅率과 教育稅率 調整에 따른 出庫價格  
變化效果 .....141

<表 VI- 4> 酒稅率과 教育稅率 調整에 따른 物價效果 .....142

<表 VI- 5> 酒稅率과 教育稅率 調整에 따른 豫想 需要變化率  
(1996年 換算).....143

<表 VI- 6> 酒稅率과 教育稅率 調整에 따른 稅收效果  
(1996年 換算).....147

## 圖 目 次

[圖 II-1] 消費稅의 賦課와 死重損失 .....29

[圖 II-2] 外部不經濟의 內生化를 위한 個別消費稅의 賦課 .....35

[圖 II-3] 財貨1에 대한 消費稅 賦課時 財貨市場 1의 均衡 .....39

[圖 II-4] 財貨1에 대한 消費稅 賦課時 財貨市場 2의 均衡 .....39

[圖 II-5] 財貨1과 2에 대한 消費稅 賦課時 財貨市場 1의  
均衡 .....42

[圖 II-6] 財貨1과 2에 대한 消費稅 賦課時 財貨市場 2의  
均衡 .....43

# I. 序 論

## 1. 背景

우리나라에서는 1909년에 酒稅가 처음 도입되었으며, 1949년 10월에 酒稅法이 제정되어 과세되기 시작하면서 현행 주세제도의 기본골격이 갖추어졌다. 우리나라의 酒稅는 1960년대 말까지 대부분의 외국과 마찬가지로 從量稅의 體系를 가지고 있었으나 이후 從價稅 體系로 전환되어 현재에는 酒精을 제외한 모든 주류에 대해 從價稅 體系로 과세하고 있다.

酒稅의 일차적인 課稅目的은 財政收入 確保라는 일반적인 재정목적에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酒稅의 稅收增加率이 상당히 낮은데, 이는 1人當 酒類의 消費量 增加率이 鈍化되고 있고 人口增加率 또한 鈍化되는 데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최근에는 주세의 稅收確保 機能이 低下됨으로써 酒稅의 稅收比重이 점차 축소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酒稅는 稅負擔의 衡平性 측면에서 대체로 高價酒(또는 高級酒)에 高稅率을 적용하고 低價酒(또는 下級酒)에 낮은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階層別 酒稅 負擔의 垂直的 衡平性을 提高시키고자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酒類 消費는 특성상 소득에 대해 비탄력적인 구조를 가지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일부의 酒種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階層別 稅負擔 分布가 逆進的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주세 도입 초기부터 지속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다한 飲酒는 國民保健衛生 측면에서 有害하므로 최근에는 酒稅

가 消費抑制的 租稅(sumptuary tax) 또는 罪惡稅(sin tax)로서의 기능도 수행하여야 할 필요성이 점점증하고 있다. 즉 酒稅의 財政收入 確保 機能이 점차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飲酒에 따른 社會的 外部 費用을 감축하고자 하는 기능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이는 자동차 보급의 확대에 따른 음주운전의 확대와 이에 따른 직·간접적인 사회적 비용의 증대, 飲酒에 따른 勤勞意慾 低下 및 勞動力 損失, 이에 따른 總體的 生産性 弱화 등 飲酒와 관련한 社會的 外部不 經濟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sup>1)</sup>.

이에 따라 酒稅의 課稅目的도 점차 稅收確保 및 衡平性 提高 측면뿐만 아니라 社會的 外部不經濟 縮小 측면에서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다만 앞의 두 가지 목적은 전술한 바와 같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 기능이 점차 약화되고 있다.

최근에는 GATT에 의한 자유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世界貿易機構(WTO : World Trade Organization) 체제가 확립되는 과정에서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EU를 비롯한 선진국으로부터 우리나라의 주세제도를 개편하라는 압력이 가중되고 있다.

EC는 우리나라의 酒稅率 體系가 위스키를 비롯한 수입 주류에 대해 차별적이라고 하여 1991년 5월에 韓·EC 고위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이후에도 수차례 걸쳐 韓·EC 酒稅協議가 개최되었다. 이 協議에서 EC는 우리나라에 대해 酒稅의 課稅體系를 현재의 從價稅 體系에서 從量稅 體系로 개편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위스키에 대한 주세율 및 관세율을 대폭 인하할 것과, 燒酒에 대한 酒稅率을 인상하고, 酒稅分 教育稅의 課稅對象(또는 稅率)을 조정하도록 요구하였다. 韓·EC 酒稅協議에서 우리나라는 從量稅 體系로의 전환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개하였는바 이에 따라 EC는 課稅體系 문제에 대한 그들의 요구를 철회하였다. 그 외의 문제에 대해서는 양자간에

1) 成明宰·金珍洙(1993) 참조.

타협안을 마련하였는바 양자협약에 따라 위스키에 대한 주세율을 1994년에 150%에서 120%로, 그리고 1996년에는 다시 100%로 인하하였으며, 위스키 등 증류주에 대한 관세율도 1994년에 40%에서 30%로 그리고 1996년에는 20%로 인하하게 되었다. 또한 燒酒에 대해서는 그 동안 教育稅를 비과세하였으나 1995년부터 세율 10%의 교육세를 부과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1996년에 EU는 우리나라에서 燒酒(35%)와 위스키(100%)에 대한 주세율 격차가 지나치게 크다고 주장함에 따라 1997년 1월 17일 브뤼셀에서 韓·EU 酒稅協議를 가졌으며 동 협의에서 EU는 우리나라에 동년 3월 15일까지 주세율 개편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후 우리나라는 1997년 3월 중순에 EU측에 대하여 주세율 체계 개편안을 제시하고자 5월에 양자협의를 개최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EU는 4월 2일(4월 4일 접수) 이 문제를 WTO에 제소하여 WTO 체계 내에서 주세협의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韓·EU 양자협약에서 합의안을 도출하여야 하며 만약 합의에 실패하게 되면 WTO 분쟁 절차에 회부되어 패널이 구성되고 WTO 체제 내에서 본격적인 분쟁 해결 절차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에 앞서 1995년에 EU는 日本에 대해 日本의 酒稅法이 위스키 등 輸入酒類에 차별적이라고 주장하면서 日·EU 酒稅協議를 개최하였다. 日·EU 酒稅協議에서 EU는 燒酒와 위스키간에 소비의 대체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와 같이 경쟁관계에 있는 酒種에 대해 차등적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자유무역주의를 표방하는 GATT 및 WTO 체제에 위배될 뿐더러 인위적으로 국내 산업을 보호함으로써 자유무역질서에 위배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였다. 日本은 이러한 EU의 주장에 대응하여 燒酒와 위스키간에 대체관계가 없음을 주장하면서 日本의 酒稅法이 국내 주류 산업을 보호할 목적이나 의도가 없을 뿐만 아니라 燒酒와 위스키에 대해 세율을 차등화하는 것이 자국의 산업보호와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주장하였다. 日·EU는 양자간의 주세협약에서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하고 WTO 분쟁 절차를 통해 결론을 짓게 되었다. 1996년에 WTO의 패널은 日本에서 燒酒와 위스키간의 주세율 격차가 지나치게 크다는 EU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일본이 패소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日本에서는 燒酒와 위스키간에 경쟁 또는 대체관계가 있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는바 이에 따라 최근 日本에서는 소주와 위스키 등의 주류에 대한 주세율을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세법을 개정하였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EU는 日·EU 주세협약에서 WTO의 결정에 따라 승소함에 따라 우리나라를 지목하여 소주와 위스키에 대한 세율격차를 문제삼아 우리나라의 주세율 체계를 개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日·EU 酒稅協議에서 EU는 소주와 위스키간에 대체관계가 있다고 하고 양자간의 세율 격차 문제에 대해 매우 강경한 입장을 취하였으며 WTO의 패널은 그러한 EU의 주장을 받아들인 바 있다. 우리나라의 주류 소비패턴을 볼 때 소주와 위스키는 기본적으로 市場이 分離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燒酒와 위스키간에 直接競爭 또는 代替關係가 있다는 EU측의 주장은 부당하다. 그러나 이 문제는 日·EU 酒稅協議에서 燒酒와 위스키간에 直接競爭 또는 代替關係가 있다는 결론이 내려진 바 있어 韓·EU 酒稅協議와 관련하여 WTO의 분쟁 절차를 거쳐 어떠한 결론이 내려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따라서 EU와 소주-위스키간의 주세율 격차 문제를 논함에 있어 우리는 보다 신중하게 대처하는 것이 요망된다.

## 2. 懸案

우리나라의 현행 주세제도와 관련하여 문제점으로는 酒種間의 相對稅率의 隔差가 매우 크다는 점, 주세수입이 특정 주종에 대해 편

증되어 있다는 점, 酒稅率 體系가 外部不經濟 縮小 측면과 상당히 괴리되어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前節에서 간략히 언급하였듯이 최근 EU에서는 우리나라의 주세율 체계가 輸入 酒類에 대해 차별적이라고 하여 주세율 체계를 개편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등 對外 通商協商 問題도 현안이 되고 있다. 따라서 차제에 우리나라 주세제도에 대한 적정성 및 주세제도의 개편 필요성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대외 통상문제와 관련하여 주세제도의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주세의 과세체계 자체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현행 주세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과 함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그 효과를 예측해 보고 집중하는 외부의 압력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해보도록 한다.

### 3. 報告書의 構成

본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第Ⅱ章에서는 本 研究에서 제시하게 될 政策論議에 앞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理論的 根據를 설명한다. 주된 내용은 個別消費稅를 과세함에 있어 課稅 衡平性和 外部不經濟 側面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한 것과 消費의 代替關係에 있는 財貨에 個別消費稅를 과세할 경우 각 財貨市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다. 특히 이 가운데 代替關係가 있는 경우 각 個別財貨에 대해 個別消費稅를 차등적으로 賦課할 경우에 市場의 歪曲을 초래하게 된다면 어떤 방법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이러한 분석은 주종별로 代替關係가 있는 酒類가 상당수 존재하기 때문에 酒稅率 體系의 變化가 酒類市場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요소를 감안하여 酒類市場 歪曲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향에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필요하다.

第Ⅲ章에서는 우리나라 酒稅制度 및 消費推移, 稅收에 대하여 살펴보고 주요 외국의 주세율 체계에 대해 간략히 살펴본다. 第1節과 第2節에서는 酒種의 分類와 酒稅率에 대해 살펴본다. 第3節에서는 酒稅收入과 酒類의 出庫動向을 연도별·주종별로 나누어 살펴보고, 第4節에서는 주류의 輸出入 動向에 대해 간략히 살펴본다. 第5節에서는 階層別 酒稅負擔 分布에 대해 1960년대부터의 기존 연구 결과를 간략히 소개한다. 第6節에서는 日本의 酒稅 課稅現況에 대해 살펴보고, 第7節에서는 EU 主要國의 酒稅率 體系를 살펴본다.

第Ⅳ章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많이 소비되고 있는 대표적인 酒種, 즉 麥酒, 燒酒, 위스키에 대한 수요를 분석한다. 第1節에서는 수요분석에 사용되는 자료와 분석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第2節에서는 需要分析 推定結果를 정리하고 第3節에서는 需要分析 結果를 바탕으로 酒種間 消費의 代替關係에 대해 간략히 서술한다.

第Ⅴ章에서는 酒稅率 體系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酒稅制度의 問題點을 짚어보고 改編의 必要性에 대해 논의한다. 그리고 1990년대 초부터 우리나라의 주세제도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와 EU간에 진행되었거나 현재 진행중인 通商協商에 대해 살펴본다. 第1節에서는 우리나라 酒稅率 體系의 問題點에 대해 살펴본다. 第2節에서는 1990년대 초에 전개되었던 韓·EU 酒稅 關聯 協議에 대해 살펴보고, 第3節에서는 최근에 전개되고 있는 韓·EU間 酒稅 關聯 懸案에 대해 살펴본다. 第4節에서는 韓·EU 酒稅協議와 매우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日·EU 酒稅協議와 칠레·EU 酒稅協議에 대해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점을 찾아본다. 第5節에서는 飲酒와 國民健康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 적합한 酒稅政策의 基本方向에 대해 논의한다. 第6節에서는 從價稅와 從量稅 體系를 중심으로 酒稅의 課稅體系로서 각각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해 본다. 第7節에서는

일부 주류 제품에 대한 공급구역 제한제도에 대해 간략히 논의한다.

第VI章에서는 상기의 분석을 종합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개선안에 따른 각각의 효과를 예측해 본다. 第1節에서는 現行 酒稅制度의 問題點과 酒稅率 體系 改編을 위한 基本方向을 정립해 본다. 第2節에서는 주세율 체계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고, 第3節에서는 그에 따라 기대되는 효과를 예측해 본다.

마지막으로 第VII章에서는 本 研究의 주요 논점을 정리하여 개선방안과 기대효과를 재조명해 본다. 또한 本 研究에서 불충분하거나 미흡한 연구 방법 및 결과를 지적하여 향후의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안점을 제시한다.

## II. 消費稅 課稅에 대한 理論的 接近

租稅는 政府 財政收入의 根幹을 이루고 있다. 租稅를 賦課함에 있어서는 일정 규모의 財政收入을 확보한다는 전제하에 資源配分에 최대한 中立적(效率性)이면서 衡平性和 簡便性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本章에서는 消費稅를 부과함에 있어 세 가지 원칙 가운데 效率性和 衡平性を 중심으로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간략히 살펴본다<sup>1)</sup>. 第1節~第3節에서는 效率性 側面에서 最適租稅 등에 논의하고 第4節에서는 衡平性 側面에서의 租稅의 役割과 機能에 대해 살펴본다. 그리고 第5節에서는 第1節~第4節의 논의를 토대로 消費稅를 賦課함에 있어 유의하여야 할 示唆點에 대해 살펴본다.

### 1. 最適租稅

#### 가. 最適租稅에 대한 一般的 見解

消費者는 주어진 또는 획득한 所得이나 富를 바탕으로 消費行爲를 함으로써 效用을 얻는다. 일반적으로 消費者는 消費行爲를 함과 동시에 勞動을 供給한다는 의미에서 供給者로서의 역할도 수행한다<sup>2)</sup>. 消費의 對象은 有形·無形의 財貨와 用役을 포괄하며 消費者가 勞動供給을 결정함으로써 餘暇(또는 總可用時間에서 勞動供給時間을 제외한 時間)도 하나의 消費對象으로 선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消費者는 財貨, 用役, 餘暇를 소비함으로써 效用을 얻는다고 할 수 있다.

- 1) 本章에서의 논의의 핵심은 消費稅의 賦課가 資源配分 및 稅負擔에 미치는 영향에 있기 때문에 簡便性에 대한 논의는 제외하기로 한다.
- 2) 消費者가 資本도 공급하지만 이것이 본질에서 핵심적인 사항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논의는 하지 않기로 한다.

만약 財貨나 用役의 消費過程이나 生産過程에서 外部效果가 발생하지 않으며 아무런 租稅도 부과되지 않는다면 경쟁시장에서의 均衡에서는 資源이 效率적으로 配分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政府가 정부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財源을 租稅를 통해 충당하기 위해 일정 규모의 租稅收入을 확보하여야 한다면 租稅를 賦課함에 따라 資源配分이 歪曲될 수 있다. 왜냐하면 租稅를 賦課하게 되면 消費者들의 消費行爲의 근간이 되는 豫算制約條件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消費의 對象이 되는 財貨나 用役, 餘暇에 대한 相對價格 構造를 變化시킴으로써 消費對象間에 消費構成을 변화시키기 때문이다. 즉, 效用極大化의 原則下에서 消費者는 열등재가 아닌 이상 상대적으로 가격이 하락한 財貨나 用役에 대해서는 消費比重을 增大시키는 반면 상대적으로 가격이 상승한 財貨나 用役에 대해서는 消費比重을 縮小시킴으로써 消費組合(consumption bundle)의 構成을 변화시키기 때문이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租稅를 賦課하여 課稅對象의 가격을 변화시키더라도 資源配分을 歪曲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財貨나 用役, 그리고 餘暇 間의 相對價格 構造를 변화시키지 않아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각 消費對象에 대한 價格을 동일한 만큼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財貨, 用役, 餘暇에 대해 세율이 동일한 조세를 賦課하여야 한다. 다만 이 가운데 餘暇에 대해 價格을 引上시키기 위해서는 賃金率을 동일한 비율만큼 上昇시켜 주어야 한다. 왜냐하면 餘暇에 대한 價格은 勞動供給을 포기하는 것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餘暇의 價格上昇은 곧 賃金水準이 上昇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賃金水準의 上昇은 곧 勞動의 供給에 대한 補助金の 支給을 의미하며, 相對價格 構造가 歪曲되지 않는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財貨나 用役에 대해 賦課·徵收한 租稅收入 전부를 賃金補塡을 위해 지출해야 한다. 이 경우 補助金 支給後의 純租稅收入은 零이 된다. 따라서 相對價格

構造, 즉 資源配分에 대한 歪曲없이 租稅를 賦課하기 위해서는 징수된 세금을 모두 보조금으로 지출해야 하는 만큼 결국 이는 租稅를 전혀 부과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의 경우가 된다. 따라서 資源配分の 歪曲을 초래하지 않는 것과 일정 수준의 조세수입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것은 서로 모순된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를 전제로 할 때에는 어떠한 租稅도 그러한 條件을 충족시켜 주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다 준다.

그러나 財貨(用役 포함)와 餘暇 間에 代替關係가 없는 상황에서는 租稅를 賦課하더라도 資源配分이 歪曲되지 않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消費의 對象이라 하면 有形·無形의 財貨와 用役만을 생각하기 쉽다. 만약 분석의 관심대상이 財貨와 用役에만 국한되고 餘暇에 대한 消費水準이 外生的으로 결정되는 상황, 즉 賃金率 水準에 관계없이 勞動市場에서의 勞動供給이 외생적으로 결정되어 消費者들이 餘暇水準에 대한 選擇可能性(또는 財貨나 用役과의 代替關係)이 없다고 할 때 財貨와 用役に 대해 무차별적으로 동일한 세율의 消費稅를 부과한다면 相對價格 構造를 歪曲하지 않기 때문에 資源配分을 歪曲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財貨나 用役의 種類에 관계없이 단일세율의 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이 歪曲없이 소기의 조세수입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消費者가 餘暇를 消費함에 있어 效用極大化의 原則에 따라 자율적으로 消費水準을 결정할 수 있다면 어떠한 형태의 租稅(消費稅)를 부과하더라도 租稅收入을 陽으로 제한하는 이상 財貨(또는 用役)와 餘暇 間의 相對價格 隔差로 인해 資源配分の 效率性이 沮害됨을 볼 수 있다. 반면에 餘暇가 외생적으로 주어지거나 또는 기타의 요인으로 인해 여타의 財貨나 用役과의 代替關係가 없다고 한다면 財貨와 用役に 대해 동일한 세율의 消費稅를 賦課할 경우 일정 수준의 조세수입을 확보하면서 財貨와 用役 間의 相對價格 構造를 歪曲하지 않음으로써 資源配分도 歪曲하지

않는다는 관점에서 효율적인 조세로 볼 수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附加價値稅는 일부의 品目에 대해 免稅하는 등 다소의 예외적인 점이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單一稅率로 課稅하고 있다는 점에서 財貨(用役 포함)와 餘暇 間에 代替關係가 없다는 制約下에서 最適租稅의 하나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 나. 租稅收入制約條件下에서의 最適租稅

앞의 '가'項에서 살펴보았듯이 財貨와 用役, 그리고 餘暇 상호간에 대체관계가 있는 경우에, 일정 규모의 租稅收入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전제하에서는 어떠한 형태의 租稅도 資源配分의 效率性을 阻害하지 않는 경우는 없다. 따라서 租稅의 效率性 側面에서 最適租稅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다만 效率性 條件을 모두 만족시켜 줄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차선택으로 社會的 厚生損失을 最小化한다는 전제하에서는 最適租稅를 도출할 수 있다. 여기서 社會的 厚生損失이라 함은 死重損失(dead weight loss)을 일컫는다. 死重損失에 대해서는 아래의 '라'項에서 보다 자세히 논의하기로 한다.

결론적으로 말해 일정 규모의 租稅收入을 確保한다는 전제하에 社會的 厚生損失을 最小化하는 수준에서의 最適租稅는 각 財貨나 用役에 대한 (價格)彈力性的의 逆數에 比例하도록 個別消費稅의 稅率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때 消費稅 稅率의 절대수준은 確保하고자 하는 租稅收入의 크기에 의존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彈力성이 작은 財貨나 用役에 대해서는 높은 稅率을 책정하고 彈力성이 큰 財貨나 用役에 대해서는 낮은 稅率을 책정하여야 한다.

모든 財貨와 用役에 대해 동일한 세율의 消費稅를 부과하면 彈力성이 작은 財貨나 用役의 경우에는 需要量의 減少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厚生損失(또는 死重損失)이 작게 나타난다. 반면 彈力성이 큰 財貨나 用役의 경우에는 需要量의 減少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厚生損失 역시 크게 나타난다. 따라서 동일한 規模

의 租稅收入을 전제로 하더라도 總厚生損失을 最小化하기 위해서는 消費稅를 賦課함에 따라 발생하는 限界厚生損失이 각 財貨나 用役別로 동일하게 되도록 稅率을 差等化하여야 한다<sup>3)</sup>. 즉 社會的 厚生損失을 最小化하기 위해서는 消費稅를 賦課함에 따라 限界厚生損失이 크게 나타나는 財貨나 用役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限界厚生損失이 작게 나타나는 財貨나 用役에 대해서는 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前者의 경우에 낮은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厚生損失이 상대적으로 크게 축소되는 반면 後者の 경우에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더라도 厚生損失이 상대적으로 작게 증가하여 전체적으로는 厚生損失이 縮소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個別消費稅의 稅率을 差等的으로 적용하는 것에 대한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生活必需品의 경우에는 需要가 價格에 대해 非彈力的인 경우가 많다. 반면에 高級·高價의 奢侈品의 경우에는 需要가 價格에 대해 彈力的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일정 규모의 租稅收入을 確保하여야 한다는 制約條件下에서 社會的 厚生損失을 最小化하기 위해서는 需要가 非彈力的인 生活必需品에 대해서는 높은 稅率을 適用하고 需要가 彈力的인 奢侈品에 대해서는 낮은 稅率을 適用하는 것이 最適 個別消費稅로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는 中低所得層에 대한 消費稅 負擔이 過重해지는 반면 高所得層에 대한 稅負擔이 상대적으로 적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稅負擔의 衡平性 側面에서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즉, 衡平性 측면에서는 生活必需品 등에 대해 낮은 稅率의 消費稅를 부과하고 대신 奢侈品 등에 대해서는 높은 稅率의 消費稅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한바 양자간에는 이러한 측면에서 대립된다.

3) 이를 보다 정확히 말한다면 租稅收入 1원을 산출하기 위해 희생하여야 하는 厚生이 모든 財貨나 用役에 대해 동일하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비록 逆彈力性 原則에 입각한 最適租稅가 效率性 側面에서 바람직하다고 하더라도 衡平性 側面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 따라서 위에서 논의한 最適租稅는 비록 效率性 측면에서 여러 가지 長點이 많지만 衡平性 측면과 마찰을 빚고 있는 만큼 현실적으로 逆彈力性 原則에 입각하여 個別消費稅의 稅率을 책정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그렇지만 所得階層別로 稅負擔分布가 대체로 유사하거나 또는 衡平性 問題가 심각하지 않은 경우에는 逆彈力性의 원칙을 적용하여 각 財貨나 用役에 대한 個別消費稅의 稅率을 차등하여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sup>4)</sup>.

이 외에도 현실적으로는 逆彈力性 原則을 적용하여 個別消費稅의 稅率을 책정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각 財貨나 用役에 대한 需要函數가 관찰되지 않기 때문에 彈力性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 다. 最適租稅에 대한 理論的 接近 I

消費者는 주어진 또는 획득한 所得이나 富를 바탕으로 消費行爲를 하며 동시에 所得을 얻기 위해 勞働을 공급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勞働의 供給은 餘暇에 대한 選擇行爲로도 볼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勞働의 供給 또는 餘暇의 選擇 역시 消費者가

---

4) 家電製品이나 술은 生活必需品 또는 嗜好品の 하나로 일상생활과 매우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두 가지 財貨에 대한 需要의 彈力性에 대한 完결되어 있는 實證分析이 없기 때문에 확정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지만, 만약 前者가 後者에 비해 價格彈力性이 크다고 한다면 酒稅率을 主要 家電製品에 대해 과세하고 있는 特別消費稅率보다 높게 책정하는 것이 效率性 側面에서 바람직하다. 물론 後者의 경우에는 음주에 따른 外部不經濟라는 다른 變數가 있어 일반적인 財貨에 비해 보다 높은 消費稅率이 적용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만큼 逆彈力性 原則에만 국한하여 논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에 유의하기 바란다. 이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실증분석이 필요한바 여기서는 逆彈力性 原則이 示唆해주는 것만으로 만족하기로 한다. 그리고 外部不經濟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第2節을 참조하기 바란다.

財貨나 用役을 消費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sup>5)</sup>.

消費者가 消費行爲와 勞動의 供給(또는 餘暇의 選擇)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消費者(또는 勞動의 供給者)는 財貨, 用役, 餘暇(Z)에 대한 消費를 통해 效用을 얻게 되는바, 자신에게 주어진 總可用時間(H)과 賃金率(w)이라는 제약조건하에서 勞動의 供給 또는 餘暇의 選擇을 통해 效用을 極大化하고자 한다고 하자<sup>6)</sup>.

모든 消費者에게 總可用時間이 한정되어 있고 賃金率은 논의의 편의상 外生的으로 주어졌다고 하자. 그리고 두 가지 財貨(X, Y)만이 존재하고 각각의 가격은  $p_x$ 와  $p_y$ 라고 하자. 그러면 消費者의 豫算制約條件은 다음과 같다.

$$p_x X + p_y Y + wZ = wH \dots\dots\dots(1)$$

一般均衡에서는 다음과 같은 條件이 성립하여 資源이 效率的으로 配分된다.

$$\text{限界代替率}_{x,y} = \text{MRS}_{x,y} = \frac{P_x}{P_y} = \text{MRT}_{x,y} = \text{限界變換率}_{x,y} \dots\dots\dots(2)$$

$$\text{限界代替率}_{y,z} = \text{MRS}_{y,z} = \frac{P_y}{w} = \text{MRT}_{y,z} = \text{限界變換率}_{y,z} \dots\dots\dots(3)$$

$$\text{限界代替率}_{z,x} = \text{MRS}_{z,x} = \frac{w}{p_x} = \text{MRT}_{z,x} = \text{限界變換率}_{z,x} \dots\dots\dots(4)$$

여기서 X財와 Y財에 대해 稅率  $t$ 의 消費稅를 賦課하여서  $TR = tp_x X + tp_y Y$  만큼의 조세를 징수한다고 하자. 그러면 式 (1)의 豫算

- 5) 여기서는 주어진 또는 획득한 所得이나 富를 모두 소비하는 것으로 전제로 하고 있어 貯蓄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이 없다. 그러나 貯蓄이란 未來時點에서의 消費를 전제로 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貯蓄도 未來消費라는 하나의 財貨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저축을 이와 같이 정의한다면 所得이나 富를 모두 소진한다고 하더라도 별다른 무리가 없을 것이다.
- 6) 消費者가 합리적으로 행동하여 자신의 效用을 極大化한다는 차원에서 행동한다는 假定은 많은 經濟理論에서 채택하고 있다. 다만 그러한 가정이 반드시 모든 소비자에게 보편타당하게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는 만큼 非現實的일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制約條件과 式 (2)~式 (4)는 다음과 같이 變化된다.

$$(1+t)p_xX+(1+t)p_yY+wZ=wH \dots\dots\dots(5)$$

$$MRS_{x,y}=\frac{(1+t)p_x}{(1+t)p_y}=\frac{p_x}{p_y}=MRT_{x,y} \dots\dots\dots(6)$$

$$MRS_{y,z}=\frac{(1+t)p_y}{w}\neq\frac{p_y}{w}=MRT_{y,z} \dots\dots\dots(7)$$

$$MRS_{z,x}=\frac{w}{(1+t)p_x}\neq\frac{w}{p_x}=MRT_{z,x} \dots\dots\dots(8)$$

따라서 X財와 Y財 間에는 限界代替率과 限界變換率이 일치하지  
만 Y財와 Z財(餘暇), 그리고 X財와 Z財(餘暇) 間에는 相對價格 構  
造가 왜곡됨에 따라 일치하지 않게 되어 資源配分이 歪曲된다. 물론  
X財와 Y財 間에도 서로 상이한 세율의 소비세를 부과하게 되면 資  
源配分이 歪曲된다.

여기서 式 (2)~式 (4)와 같은 條件을 충족시킴으로써 資源配分  
의 效率性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X財, Y財, 餘暇 間 稅後價格의 相  
對比를 消費稅 賦課 前과 일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  
해서는 餘暇에 대해서도 稅率 t로 과세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한  
경우의 豫算制約條件과 效率性 條件은 다음과 같다.

$$(1+t)p_xX+(1+t)p_yY+(1+t)wZ=(1+t)wH\dots\dots\dots(9)$$

$$\rightarrow p_xX+p_yY+wZ=wH \dots\dots\dots(9-1)$$

$$MRS_{x,y}=\frac{(1+t)p_x}{(1+t)p_y}=\frac{p_x}{p_y}=MRT_{x,y} \dots\dots\dots(10)$$

$$MRS_{y,z}=\frac{(1+t)p_y}{(1+t)w}=\frac{p_y}{w}=MRT_{y,z} \dots\dots\dots(11)$$

$$MRS_{z,x}=\frac{(1+t)w}{(1+t)p_x}=\frac{w}{p_x}=MRT_{z,x} \dots\dots\dots(12)$$

따라서 財貨 및 餘暇 모두에 대해 동일한 稅率의 消費稅를 賦課

하면 效率性 條件이 충족되어 資源配分の 歪曲現象이 제거된다. 그러나 餘暇에 대한 價格을  $w$ 에서  $(1+t)w$ 로 인상시키기 위해서는 임금률 역시  $w$ 에서  $(1+t)w$ 로 인상시켜주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는 餘暇의 價格은 勞動供給을 拋棄함에 따른 대가이기 때문에 이는 곧 賃金率과 같아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餘暇에 대한 價格을 上向調整하기 위해서는 賃金率을  $tw$ 만큼 引上시켜 주어야 한다. 이는 곧 補助金を 지급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위의 效率性 條件을 충족시켜 주기 위해 지급해야 하는 補助金の 總額은 消費稅의 賦課를 통해 징수한 消費稅 收入과 완전히 일치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補助金 支給總額은  $tw(H-Z)$ 으로서  $tp_xX + tp_yY + twZ$ 과 완전히 일치하기 때문이며 만약 그렇지 않다면 式 (9) 또는 式 (9-1)이 성립하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補助金 支給 後의 純租稅收入은 零이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소비세를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資源配分の 效率性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징수된 稅收入을 모두 補助金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중국적으로는 消費稅를 전혀 賦課하지 않은 경우와 아무런 차이가 없게 된다.

그러므로 財貨나 用役, 그리고 餘暇 間에 대체관계가 존재할 경우에는 陽의 租稅收入을 얻기 위해서는 效率性 條件을 위배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한 경우에는 資源配分이 歪曲되므로 資源配分에 중립적인 最適租稅組合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勞動의 供給 또는 餘暇에 대한 消費水準이 外生的으로 주어짐으로써 財貨(또는 用役)과 餘暇 間에 代替關係가 없다고 한다면 X財와 Y財에 대해서만 效率性 條件을 고려하면 되기 때문에 X財와 Y財에 대해 동일한 稅率의 消費稅를 賦課하게 되면 資源配分の 效率性을 沮害하지 않으면서 效率性 條件을 充足시킬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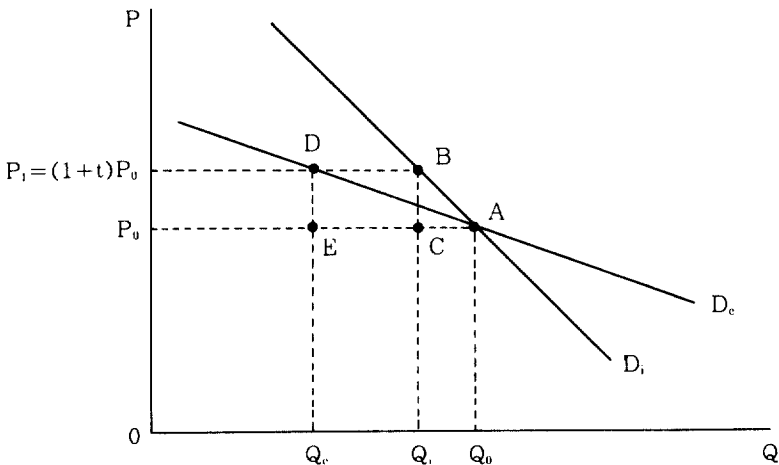
## 라. 最適租稅에 대한 理論的 接近 II

현실적으로 消費者가 餘暇를 임의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경우는 혼

하지 않다. 왜냐하면 勞動市場이 經濟學 理論에서 가정하는 것처럼 柔軟하지 않을 뿐더러 현재 종사하고 있는 직장에서도 주어진 賃金 率 水準에 따라 임의대로 勞動供給量을 조절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부분적으로는 餘暇水準에 대한 選擇이 가능한 만큼 財貨나 用役과 餘暇 間에는 미약하나마 代替關係가 성립한다고 할 수 있다. 만약 그러한 경우라면 陽의 租稅收入이 전제되는 이상 모든 財貨와 用役, 餘暇에 대해 單一稅率의 消費稅를 課稅한다고 하더라도 消費稅를 賦課함에 따라 資源配分이 歪曲된다. 따라서 그러한 경우에는 最適租稅란 존재하지 않게 되는 바 차선책으로 일정 규모의 租稅收入을 確保한다는 制約條件下에서 社會的 厚生損失을 最小化할 수 있는 租稅組合을 모색하여야 한다. 이하의 논의에서는 그러한 경우의 租稅組合을 最適租稅라고 하기로 하자.

먼저 財貨나 用役に 대해 個別消費稅를 賦課하면 일반적으로 死重損失이라고 일컫어지는 厚生損失이 발생한다. 이를 [圖 II-1]을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圖 II-1] 消費稅의 賦課와 死重損失



특정 財貨에 대한 需要曲線이  $D_1$ 로 주어져 있다고 하고 ([圖 II-1]에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供給曲線은  $P_0$ 에서 完全彈力的이라고 하자. 그러면 均衡은 A에서 이루어진다. 이 財貨에 대해 稅率  $t$ 의 個別消費稅를 과세하여 새로운 均衡이 B로 이동하였다고 하자. 그러면 均衡量은  $Q_0$ 에서  $Q_1$ 로 減少하고 均衡價格은  $P_0$ 에서  $P_1 = (1+t)P_0$ 로 上昇하게 된다. 이 경우 個別消費稅를 賦課함에 따라  $ABC (= \frac{1}{2}tP_0 \times \Delta Q_0, \Delta Q_0 \equiv Q_0 - Q_1)$ 만큼의 消費者 剩餘, 즉 社會的 厚生(또는 死重損失)이 減少한다<sup>7)</sup>. 또한 이 때의 租稅收入 規模는  $BCP_0P_1 = tP_0 \times Q_1$ 가 된다.

만약 需要曲線이  $D_0$ 로 주어졌다면 社會的 厚生損失은  $ADE (= \frac{1}{2}tP_0 \times \Delta Q_0, \Delta Q_0 \equiv Q_0 - Q_1)$ 가 되어 非彈力的인 경우보다 社會的 厚生損失이 더 커진다. 이 경우 租稅收入은  $DEP_0P_1 = tP_0 \times Q_0$ 가 되어 需要가 非彈力的인 경우보다 크기가 작아진다. 따라서 동일한 稅率의 (個別)消費稅를 부과할 경우 租稅收入에 대비한 厚生損失의 크기는 需要가 非彈力的인 경우가 彈力的인 경우보다 작게 나타난다.

일정 규모의 租稅收入을 확보한다는 전제하에 社會的 厚生損失, 즉 死重損失을 最小化하기 위해서는 모든 財貨와 用役に 대해 個別消費稅를 과세할 때 租稅收入 1원당 社會的 限界厚生損失이 균등해 지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에서 보듯이 동일한 세율의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需要의 彈力性 또는 需要曲線의 기울기 差異에 따라 租稅收入 1원당 社會的 限界厚生損失이 달라진다.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式 (13)과 같다.

만약 두 재화에 부과되는 소비세의 세율이 매우 작다면 式 (13)의 左邊과 右邊은 각각 非彈力的 需要( $D_1$ )와 彈力的 需要( $D_0$ )의 租稅收入 1원당 限界死重損失에 근사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社會

7) 供給曲線이 完全彈力的이라고 假定하였으므로 이 경우 生産者 剩餘는 零이다.

의 厚生損失을 最小化하기 위해서는 式 (13)의 等式이 성립하여야 한다. 그러한 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需要의 彈力性이 상이한 두 財貨에 부과되는 個別消費稅의 稅率을 差等化하여야 한다. 彈力的인 需要와 非彈力的인 需要를 가지는 財貨에 대해 각각 稅率  $t_i$ 와  $t_e$ 의 個別消費稅를 賦課하는 경우에 대해 살펴보자.

$$\frac{ABC}{BCP_0P_1} = \frac{\frac{1}{2}t_iP_0 \times \Delta Q_{0i}}{t_iP_0 \times Q_i} < \frac{ADE}{DEP_0P_1} = \frac{\frac{1}{2}t_eP_0 \times \Delta Q_{0e}}{t_eP_0 \times Q_e} \dots\dots\dots(13)$$

$$\therefore \Delta Q_{0i} < \Delta Q_{0e} \quad Q_e < Q_i$$

먼저 需要가 非彈力的인 경우에 稅率 $t_i$ 의 個別消費稅가 부과되면 總死重損失과 租稅收入, 租稅收入 1원당 限界死重損失은 각각  $\frac{1}{2}t_iP_0 \times \Delta Q_i$ ,  $t_iP_0 \times Q_i$ ,  $(\frac{1}{2}t_iP_0 \times \Delta Q_i) \div (t_iP_0 \times Q_i)$ 가 된다(여기서  $\Delta Q_i$ 는 陰의 값을 가지는 均衡量의 變化로 정의함).  $t_iP_0$ 는 個別消費稅를 賦課함에 따른 價格의 變化를 나타낸다. 이를  $\Delta P_i \equiv t_iP_0$ 라고 정의하자. 그러면 租稅收入 1원당 限界死重損失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frac{\frac{1}{2}t_iP_0 \times \Delta Q_i}{t_iP_0 \times Q_i} = \frac{\frac{1}{2}t_iP_0 \times \Delta Q_i}{\Delta P_i \times Q_i} = -\frac{t_i}{2} \left( -\frac{\Delta Q_i/Q_i}{\Delta P_i/P_0} \right) \cong -\frac{t_i}{2}\eta_i \dots\dots\dots(14)$$

단,  $\eta_i$ 는 價格彈力性

式 (14)의 맨 마지막 관계( $\cong$ )는 需要의 價格彈力性, 특히 그 가운데 弧彈力性(arc elasticity)에 근사한 값으로 볼 수 있는바 특히  $t_i$ 가 작으면 작을수록 그 오차가 작아지게 된다. 만약 點彈力性(point elasticity)를 염두에 두는 경우에는  $\cong$ 는  $=$ 로 전환됨으로써 양변이 완전히 일치하게 된다.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需要가 彈力的인 경우에 稅率 $t_e$ 의 個別消費稅를 賦課하면 死重損失과 租稅收入은 각각  $\frac{1}{2}t_eP_0 \times \Delta Q_e$ ,  $t_eP_0 \times Q_e$ 이 되고 限界死重損失은

$$\frac{\frac{1}{2}t_c P_0 \times \Delta Q_c}{t_c P_0 \times Q_c} = \frac{\frac{1}{2}t_c P_0 \times \Delta Q_c}{\Delta P_c \times Q_c} = -\frac{t_c}{2} \left( -\frac{\Delta Q_c / Q_c}{\Delta P_c / P_0} \right) \cong -\frac{t_c}{2} \eta_c \quad \dots\dots (15)$$

단,  $\eta_c$ 는 價格彈力性

이 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死重損失을 最小化하기 위해서는 式 (14)와 式 (15)가 일치하여야 하는바 그러한 경우에는 다음의 관계가 성립한다.

$$-\frac{t_i}{2}\eta_i = -\frac{t_c}{2}\eta_c \Rightarrow \frac{t_i}{t_c} = \frac{\eta_c}{\eta_i} \quad \dots\dots\dots (16)$$

式 (16)에 의하면 일정 규모의 租稅收入을 확보한다는 制約條件下에서 社會的 厚生損失을 最小化하기 위해서는 租稅收入 1원당 限界死重損失이 일치하게 하는 수준에서 個別消費稅의 稅率을 差等化하여야 한다. 즉, 最適 個別消費稅의 稅率은 需要의 價格彈力性的 逆數에 比例하여야 한다.

## 2. 外部不經濟와 租稅의 關係

完全競爭市場에서는 私的 限界便益 및 私的 限界費用, 즉 需要와 供給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均衡이 성립한다. 그러나 財貨나 用役의 生産·消費過程에서 外部效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民間의 自律的인 競爭의 結果로 나타나는 均衡, 즉 私的 限界便益과 私的 限界費用이 일치하는 수준에서의 均衡은 社會적으로 바람직한 均衡, 즉 社會的 限界便益과 社會的 限界費用이 일치하는 수준의 均衡과 다르게 된다<sup>8)</sup>. 이러한 경우에는 民間의 자율적인 경쟁을 통해 나타난 結果가 진정한 의미에서 社會적으로 바람직한 均衡과 괴리를 보이게 됨으

8) 이러한 것은 需要나 供給 가운데 어느 하나가 完全非彈力的인 경우에는 兩者가 일치할 수도 있으나 이는 이론적으로만 가능한 것이고 현실에서는 그러한 경우를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로써 資源配分の 效率性을 沮害하게 된다. 經濟學에서는 이러한 것을 '市場의 失敗'(market failure)라고 한다.

競爭市場에서 市場의 失敗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민간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으로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에서 균형을 이루기 어렵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개입, 특히 政府의 介入이 요청된다. 市場의 失敗가 존재할 때 政府의 개입방향은 외부효과가 어떠한 종류의 것이냐에 따라 상이하하다. 만약 외부효과가 긍정적인 것, 즉 外部經濟의 경우라면 民間의 自律的 競爭을 통한 均衡에서의 均衡量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에 미달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補助金 등을 지급함으로써 均衡量을 增大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반면에 外部不經濟를 발생시키는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競爭均衡에서의 均衡量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을 초과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外部不經濟를 발생시키는 財貨나 用役에 대해 租稅(消費稅)를 부과함으로써 均衡量을 減縮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補助金을 支給하거나 消費稅를 賦課하는 방법, 즉 價格機構의 機能을 이용하여 外部效果를 內生化하는 방법은 이론적으로만 논의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도 많이 채택되고 있다<sup>9)</sup>.

本節에서는 이상의 두 가지 경우 가운데 外部不經濟가 발생하는 경우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하기로 한다. 消費稅는 稅收確保의 機能 이외에도 외부효과, 특히 그 가운데 外部不經濟에 의해 발생하는 市場의 失敗를 矯正하려는 목적에서 外部不經濟를 內生化하기 위한 手段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것을 그림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특정 財貨에 대한 需要曲線(D)과 供給曲線(S)이 私的 限界便益(MB)과 私的 限界費用(MPC)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자. 그러면

9) 北유럽에서 시행하고 있는 炭素稅 등이 外部不經濟에 따른 政府 介入의 대표적인 예이다.

完全競爭市場에서는 需要曲線과 供給曲線이 교차하는  $E_0$ 에서 균형을 이루게 되고 均衡量과 均衡價格은 각각  $Q_0$ 와  $P_0$ 가 된다. 만약 財貨의 生産·消費過程에서 아무런 外部效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民間의 自律競爭의 결과로 나타난 均衡  $E_0$ 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의 均衡과 一致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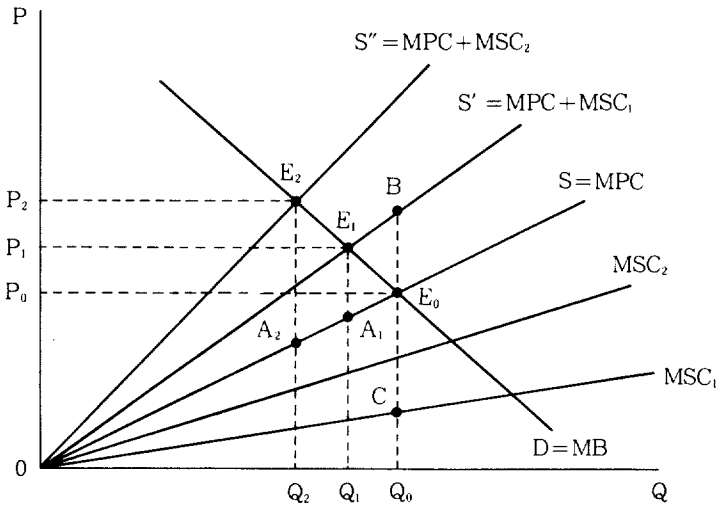
그러나 財貨의 生産이나 消費過程에서  $MSC_1$ 만큼의 外部不經濟가 초래된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자율경쟁의 결과로 나타난 均衡量  $Q_0$ 에서의 社會的 限界費用은 私的 限界費用  $Q_0E_0$ 와 社會的 外部費用(또는 社會的 外部不經濟)  $Q_0C$ 의 垂直的 合인  $Q_0B$ 가 되며 社會的 限界便益은 私的 限界便益과 같은  $Q_0E_0$ 가 된다. 따라서  $E_0$ 에서는 社會的 限界費用이 社會的 限界便益(여기서는 私的 限界便益과 일치함)을 超過하게 된다. 그러므로  $E_0$ 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의 均衡이라고 볼 수 없으며 消費가 社會的으로 바람직한 水準을 超過하여 과다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하게 된다. 이 경우 社會的으로 바람직한 수준의 均衡은 社會的 限界費用曲線( $S'$ )과 社會的 限界便益曲線( $D$ )이 교차하는  $E_1$ 이고 이 때의 均衡量과 均衡價格은 각각  $Q_1$ 과  $P_1$ 이 된다. 즉,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의 均衡量  $Q_1$ 은  $Q_0$ 보다 작으며 이 때의 均衡價格  $P_1$ 은 자율경쟁에 의한 가격  $P_0$ 보다 높다.

만약 社會的 外部費用이  $MSC_1$ 보다 더 높은  $MSC_2$ 라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의 均衡은  $E_2$ 에서 결정되는바 이 때의 均衡量은  $E_1$ 보다 작고 均衡價格  $P_2$ 는  $P_1$ 보다 높은 수준에서 결정된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外部不經濟가 발생할 경우에는 民間의 自律競爭을 통한 均衡에서의 價格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民間의 自律競爭을 통해 성립한 均衡에서의 均衡量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과다해지는 결과가 초래된다. 民間의 自律競爭을 통한 均衡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의 均衡과 乖離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民間의 자율적인 의

사결정을 통해 해소할 수 없다. 따라서 市場의 價格機構를 통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社會的 外部費用만큼을 조세, 특히 그 가운데 消費稅의 형태로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다.

[圖 II-2] 外部不經濟의 內生化를 위한 個別消費稅의 賦課



消費稅를 부과함으로써 社會的 外部不經濟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消費稅의 稅率을 社會的 外部費用의 크기와 동일하게 책정하여야 한다. 즉, [圖 II-2]에서 보듯이 社會的 外部費用이  $MSC_1$ 인 경우에는  $MSC_1$ 만큼 소비세를 부과하면  $E_1$ 에서 균형이 이루어지게 되어 사회적으로 적정한 균형을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消費稅의 稅率이 이보다 높거나 낮게 책정된다면 均衡이  $E_1$ 에서 이탈하게 되어 消費量이 과다 또는 과소해지는 결과를 낳게 된다. 만약 社會的 外部費用이  $MSC_2 (> MSC_1)$ 인 경우에는  $MSC_2$ 만큼 消費稅를 賦課해야 한다. 즉, 外部費用이 크면 클수록 消費稅는 더 높은 稅率을 책정하여야만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의 균형에 도달할 수 있다.

酒類를 소비하는 경우에는 음주에 따라 소비자가 효용을 느끼기도 하지만 飲酒에 따른 外部不經濟, 즉 알콜중독, 음주에 따른 노동

력 손실 및 생산성 감소, 음주운전에 따른 교통사고 및 치료비의 증가 등과 같은 外部費用을 낳는다<sup>10)</sup>. 모든 주류는 ‘술’이라는 관점에서 飲酒에 따른 外部不經濟를 發生시킨다는 특성을 지니지만 酒種에 따라 外部不經濟 또는 外部費用의 정도는 상이하다고 할 수 있다. 高알콜酒의 경우에는 소량만 음용하더라도 숙취에 따른 외부효과가 크게 나타나지만 低알콜酒의 경우에는 그러한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다. 따라서 低알콜酒와 高알콜酒를 소비할 경우에 초래되는 外部不經濟를 구별하여 각각 [圖 II-2]의  $MSC_1$ 과  $MSC_2$ 라고 표현할 수 있다<sup>11)</sup>. 이러한 경우에 민간의 자율경쟁에 의한 均衡은 두 가지 경우 모두  $E_0$ 이지만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의 均衡은 低알콜酒의 경우에는  $E_1$ 이고 高알콜酒의 경우에는  $E_2$ 이다. 따라서 高알콜酒의 경우에는 低알콜酒에 비해 社會的 外部費用이 더 크므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의 均衡消費量도 低알콜酒보다 낮은 수준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수준의 均衡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高알콜酒에 대해서는 低알콜酒보다 높은 (개별)소비세율을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말해, 外部效果가 없는 경우에는 民間의 自律競爭을 통한 均衡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均衡과 일치하지만, 外部效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양자가 不一致하게 된다. 이러한 괴리는 자율경

10) 음주에 따른 노동력 손실과 생산성 감소는 음주자 자신의 노동공급의 양과 질이 변화시킨다는 차원에서 개인의 비용에 내재된 효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그러한 측면에서 그러한 효과는 外部不經濟가 아니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음주에 따라 노동공급의 감소와 생산성 하락이 나타난다면 이는 機會費用 측면에서 資源의 非效率的 活用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러한 측면에서 外部不經濟로 볼 수 있음에 유의하기 바란다.

11) 이러한 논거는 다소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低알콜酒와 高알콜酒에 대한 공급곡선과 수요곡선이 각각 서로 다른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고려 없이 일방적으로 하나의 그림으로 분석하는 것이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外部不經濟의 정도 차이에 따른 消費稅의 稅率 差等化에 대한 결과를 이해함에 있어서는 아무런 질적인 차이가 없다.

쟁을 통해 해소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게 된다. 방법론상으로는 外部經濟가 있는 경우 補助金을 支給하고 外部不經濟가 있는 경우에는 租稅를 賦課하여야 한다. 다만 補助金이나 租稅의 水準은 外部經濟 또는 外部不經濟의 정도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外部不經濟를 더 많이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더 높은 세율을 부과하여야 한다.

### 3. 代替效果와 消費稅의 關係

本節에서는 財貨나 用役 間에 競爭이나 代替關係가 존재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消費稅를 賦課하는 경우에 각 財貨나 用役市場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지에 대해 분석한다. 논의의 편의를 위해 本節에서는 部分均衡分析에 입각하여 期待效果를 논의하도록 하고, 논의대상은 임의의 財貨 1과 財貨2의 두 가지로 구분하며, 消費稅를 하나의 財貨에만 賦課하는 경우와 두 가지 모두에 대해 부과하는 두 가지 경우를 상정하도록 한다.

#### 가. 代替效果가 있는 경우의 均衡

本項에서는 財貨1과 財貨2 間에 消費의 競爭 또는 代替關係가 있다고 假定한다. 이 때 財貨1에만 (個別)消費稅를 과세하고 財貨2에는 消費稅를 과세하지 않는 경우와 두 가지 재화 모두에 대해 (個別)消費稅를 과세하는 경우로 구분하고, 각각의 경우에 대해 消費稅의 賦課가 財貨市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다.

##### 1) 財貨1에 대한 消費稅 賦課時의 均衡

財貨1 및 財貨2에 대한 需要曲線과 供給曲線을 각각 [圖 II-1]과 [圖 II-2]의  $D_1$ ,  $D_2$ 와  $S_1$ ,  $S_2$ 라고 하자. 그러면 競爭市場에서의 均衡은 需要曲線과 供給曲線이 교차하는  $A_1$ 과  $A_2$ 에서 이루어지고 이 때의 均衡量과 均衡價格은 각각  $(P_{10}, Q_{10})$ 와  $(P_{20}, Q_{20})$ 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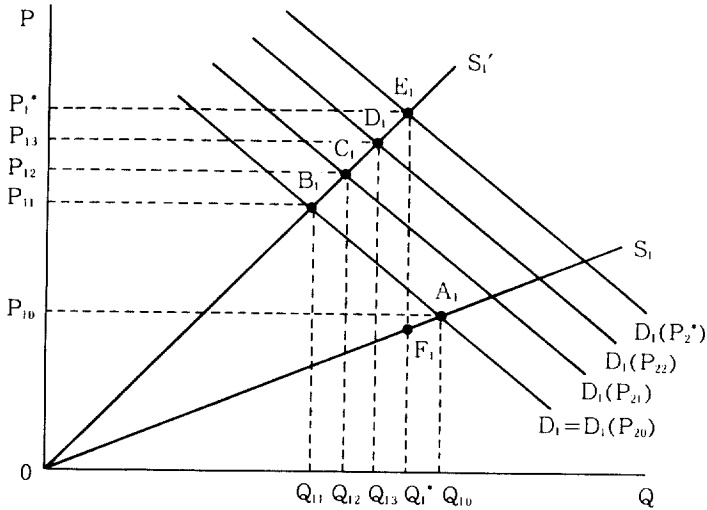
먼저 財貨1에 대해 消費稅를 賦課하는 경우를 상정해 보자. 消費稅가 생산자에게 부과된다고 하면 財貨1에 대한 供給曲線은  $S_1$ 에서  $S_1'$ 로 이동하게 된다. 이 경우 財貨市場1에서 최초의 균형은  $B_1$ 에서 성립되고 財貨1의 均衡價格은  $P_{10}$ 에서  $P_{11}$ 으로 上昇하는 한편 均衡量은 종전( $Q_{10}$ )보다 작은  $Q_{11}$ 이 된다.

그러나 消費稅가 賦課되어 財貨1의 價格이  $P_{10}$ 에서  $P_{11}$ 으로 上昇하면 財貨1과 競爭 또는 代替關係에 있는 財貨2에 대한 需要가 增加하게 된다. 이에 따라 財貨2의 需要曲線은  $D_2=D_2(P_{10})$ 에서  $D_2(P_{11})$ 으로 이동하게 되고 財貨2의 均衡은 수요곡선  $D_2(P_{11})$ 와 供給曲線  $S_2$ 가 교차하는  $B_2$ 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財貨2의 價格과 均衡量은  $(P_{21}, Q_{21})$ 이 되어 종전보다 모두 큰 값을 갖게 된다. 財貨市場 2에서의 균형변화는 다시 財貨2와 競爭 또는 代替關係에 있는 財貨市場 1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財貨2의 需要增加와 이에 따른 財貨2의 價格上昇에 따라 財貨1의 需要가 增加하면서 財貨1의 需要曲線이  $D_1=D_1(P_{20})$ 에서  $D_1(P_{21})$ 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에 따라 財貨1의 均衡價格과 均衡량은 增加하게 되고 이는 다시 財貨2에 대한 需要增加( $D_2(P_{11}) \rightarrow D_2(P_{12})$ )를 가져오게 되며, 이는 다시 財貨1에 대한 需要增加( $D_1(P_{21}) \rightarrow D_1(P_{22})$ )를 가져온다. 財貨1과 財貨2의 均衡은 財貨1에 대한 消費稅의 賦課  $\rightarrow$  財貨1의 價格上昇  $\rightarrow$  財貨2의 需要增加  $\rightarrow$  財貨2의 價格上昇  $\rightarrow$  財貨1의 需要增加  $\rightarrow$  財貨1의 價格上昇  $\rightarrow$  財貨2의 需要增加  $\rightarrow \dots$ 의 반복적인 과정을 거쳐 양자간의 代替關係에 따른 수요변화가 수렴함으로써 종결된다. 따라서 최종적으로는 財貨1과 財貨2의 需要가 각각  $D_1(P_2^*)$ 와  $D_2(P_1^*)$ 가 되어 供給曲線  $S_1'$ 과  $S_2$ 의 교차점  $E_1$ 과  $E_2$ 에서 均衡이 성립하게 된다. 最終均衡에서의 均衡價格과 均衡량은 각각  $(P_1^*, Q_1^*)$ 와  $(P_2^*, Q_2^*)$ 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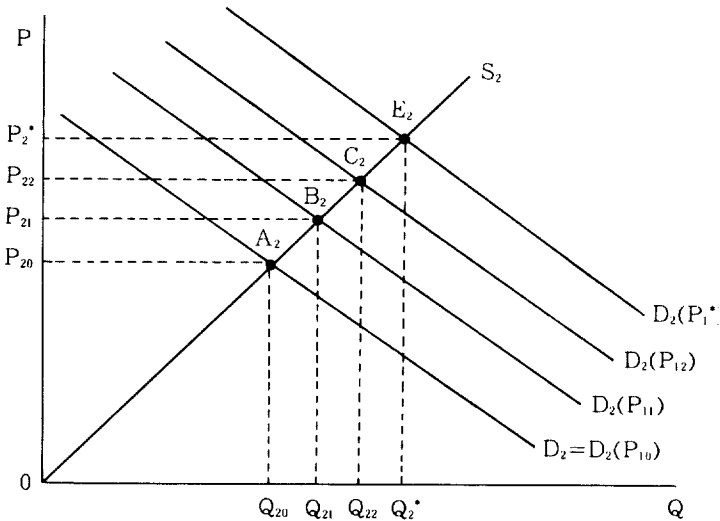
[圖 II-3]과 [圖 II-4]에 따르면 財貨1에 대해 消費稅를 賦課함에 따라 財貨2의 價格과 消費量 모두 종전보다 增加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財貨1의 경우에는 消費稅가 賦課됨에 따라

價格은 종전보다 높은 수준에서 결정되지만 均衡量은 종전( $Q_{10}$ )보다 낮은 수준( $Q_1^*$ )에서 결정된다.

[圖 II-3] 財貨1에 대한 消費稅 賦課時 財貨市場 1의 均衡



[圖 II-4] 財貨1에 대한 消費稅 賦課時 財貨市場 2의 均衡



물론 財貨1의 경우에도 最終均衡에서의 均衡量은 財貨2의 價格變動에 따른 財貨1의 代替效果에 따라  $Q_0$ 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결정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경우는 財貨2의 價格에 대한 財貨1의 代替價格彈力性이 매우 큰 값을 가질 때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러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을 만큼 代替價格彈力性이 큰 값을 가지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最終均衡에서의 財貨1의 均衡量은 消費稅가 賦課되기 이전의 均衡量인  $Q_0$ 보다 작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겠다.

이상에서의 논의를 정리해보면 財貨1에 대해 消費稅를 賦課할 경우에는 財貨1과 競爭 또는 代替關係에 있는 財貨2의 均衡消費量은 항상 종전의 均衡量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增加하지만 財貨1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 消費稅 賦課 以前에 비해 均衡消費량이 減少하게 된다. 다만 財貨1에 대한 最終 均衡量은 競爭 또는 代替關係에 있는 財貨2가 존재함에 따라 그렇지 않은 경우의 均衡量( $Q_1$ )에 비해 均衡量( $Q_1'$ )이 더 크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물론 이러한 논리의 전개에 있어서는 財貨1에 消費稅가 부과됨에 따라 경제 전반에 걸쳐 나타나게 되는 資源配分과 實質所得의 變化效果를 무시하였다는 점에서 다소의 한계가 있다. 그러나 대체관계가 존재함에 따라 특정 財貨에 대해 消費稅를 과세할 경우 그에 따른 영향이 다른 財貨市場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에 대해서는 질적인 차이가 없음은 물론이다.

## 2) 財貨1과 2에 대한 消費稅 賦課時의 均衡

만약 財貨1과 財貨2 모두에 대해 消費稅를 賦課하는 경우에 이것이 均衡價格과 均衡量에 미치는 效果에 대해 살펴보자. 논의의 편의상 財貨1에 대해 消費稅가 부과된 상태에서 財貨2에도 消費稅가 부과되는 경우를 상정하여 期待效果를 분석해 보자.

먼저 財貨1에만 消費稅가 賦課된 경우에는 [圖 II-5]와 [圖 II-6]의  $E_1$ 과  $E_2$ 에서 均衡이 성립된다. 편의상 이 때의  $E_1$ 과  $E_2$ 가 [圖 II-3]과 [圖 II-4]의  $E_1$ 과  $E_2$ 와 같다고 하자. 여기서 財貨2에 消費稅가 새로이 賦課된다고 하자. 그러면 財貨2에 대한 供給曲線은  $S_2$ 에서  $S'_2$ 로 이동하게 되고, 따라서 財貨2는 需要曲線  $D_2(P_1')$ 와 供給曲線  $S'_2$ 이 교차하는  $F_2$ 에서 均衡이 成立하게 된다. 따라서 價格은  $P_{24}$ 가 되어 종전보다 上昇하고 均衡量은 종전보다 작은  $Q_{24}$ 가 된다. 이와 같이 財貨2에 消費稅가 賦課됨에 따라 새로운 均衡에서 財貨2의 價格이 上昇하므로 財貨2와 競爭 또는 代替關係에 있는 財貨1의 需要가 增加( $D_1(P_2') \rightarrow D_1(P_{24})$ )하게 된다. 이는 財貨1의 價格上昇 및 均衡量의 增加를 가져온다. 이는 다시 財貨2의 需要를 增加시켜 財貨2의 價格上昇 및 均衡量 增加를 가져오게 된다. 이와 같은 과정은 앞에서 본 바와 동일한 경로를 통해 최종적으로  $H_1$ 과  $G_2$ 에서 均衡을 이루게 되고 均衡價格과 均衡量은 각각  $(P_1^0, Q_1^0)$ 와  $(P_2^0, Q_2^0)$ 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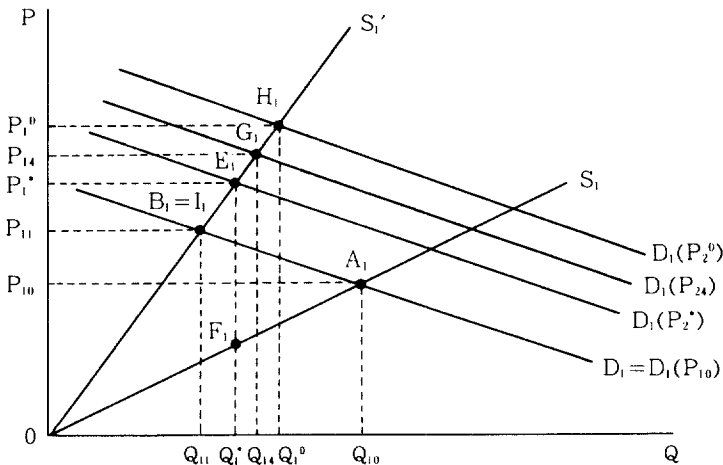
새로운 均衡에서의 均衡價格은 財貨1과 財貨2의 구분 없이 財貨1에만 消費稅가 부과되는 경우의 均衡價格보다 높다. 그렇지만 財貨1의 경우 均衡量은  $Q_1^*$ 보다 다소 增加한  $Q_1^0$ 가 되지만 財貨2의 경우에는 종전( $Q_2^*$ )보다 작은  $Q_2^0$ 이 된다. 이와 같은 차이는 財貨2에 대해 消費稅가 賦課됨에 따라 自己價格效果 및 代替價格效果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財貨2에 대한 消費稅의 賦課와 이에 따른 財貨2의 價格引上 및 그에 따른 과급효과로 인해 財貨1에 대한 均衡量이 增加한 반면 財貨2에 대한 均衡量은 종전보다 減少하게 되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財貨1과 財貨2에 대해 모두 消費稅를 賦課하게 되면 財貨1과 財貨2의 均衡價格은 消費稅를 賦課하기 以前에 비해 모두 上昇하였으며 均衡量은 從前에 비해 모두 減少한 결과를 나타내었다<sup>12)</sup>.

또한 競爭 또는 代替關係에 있는 財貨1과 財貨2에 대해 消費稅를 差等的으로 적용하는 경우, 즉 財貨1에만 消費稅를 賦課하는 경우에는 財貨2에 대한 均衡量은 增加하는 반면 財貨1에 대한 均衡量은 減少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는 財貨1에만 消費稅를 賦課함에 따라 財貨2에 비해 財貨1을 差別받게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바 消費稅가 非對稱的으로 賦課됨에 따라 資源配分이 歪曲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代替關係가 있는 財貨가 존재하는 경우에 特定 財貨(여기서는 財貨1)에 대해서만 消費稅를 賦課하게 되면, 財貨2에 대해서는 아무런 政府의 介入(즉 租稅의 賦課)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財貨2가 惠澤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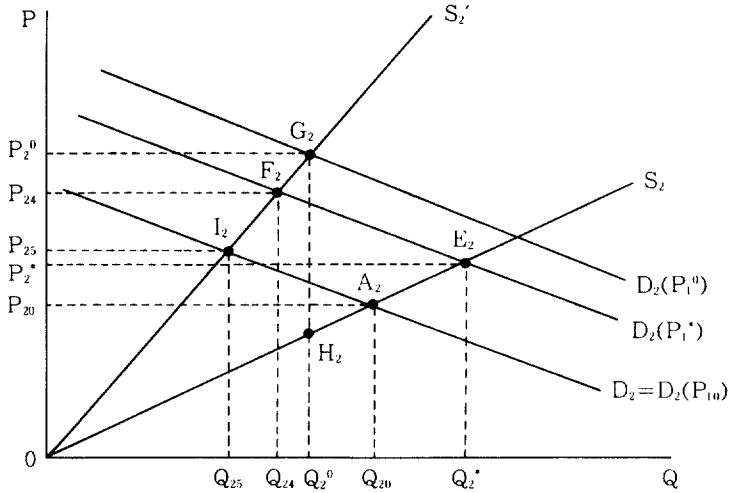
반면에 財貨1과 財貨2에 대해 모두 消費稅를 賦課하는 경우에는 대체로 財貨1과 財貨2에 대한 均衡量이 모두 消費稅를 課稅하기 以前에 비해 減少하게 된다. 따라서 消費稅를 차별하지 않고 賦課하는 경우에는 消費稅의 賦課에 따른 資源配分の 歪曲現象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각 財貨에 대한 消費稅의 稅率이 差

[圖 II-5] 財貨1과 2에 대한 消費稅 賦課時 財貨市場 1의 均衡



12) 이는  $P_1' > P_{10}$  및  $P_2^0 > P_{20}$ 와  $Q_1^0 < Q_{10}$  및  $Q_{20} < Q_2^0$ 로부터 알 수 있다.

[圖 II-6] 財貨1과 2에 대한 消費稅 賦課時 財貨市場 2의 均衡



等化되는 경우에는 다소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음은 물론이다.

그러므로 競爭 또는 代替關係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한 財貨에 대해서만 消費稅를 부과하게 되면 資源配分の 歪曲現象을 초래하게 되는바 財貨1을 생산하는 産業과 財貨1을 소비하는 消費者가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게 되는 반면 財貨2를 생산하는 産業과 財貨2를 소비하는 消費者가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게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왜곡현상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代替關係가 있는 財貨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消費稅를 과세하여야 한다.

나. 代替效果가 없는 경우의 均衡

위의 '가'項에서는 財貨1과 財貨2가 서로 競爭 또는 代替關係에 있는 경우에 개별소비세를 과세함에 있어서의 資源配分の 變化효과를 분석하였다. 만약 두 財貨間에 競爭 또는 對替關係가 없다고 하면 個別消費稅를 부과할 때 다음과 같이 매우 상이한 결론이 도출된다.

## 1) 財貨1에 대한 消費稅 賦課時의 均衡

먼저 財貨1에 대해서만 消費稅가 賦課되는 경우에 대해 살펴보자.

財貨1에 대해서만 消費稅가 賦課되면 [圖 II-5]에서 보는 바와 같이 消費稅의 賦課에 따라 供給曲線이  $S_1$ 에서  $S_1'$ 로 이동하게 된다. 이에 따라 財貨1의 均衡은 需要曲線  $D_1$ 과 供給曲線  $S_1'$ 이 교차하는  $I_1(=B_1)$ 에서 이루어진다. 이 경우 財貨2는 財貨1과 아무런 競爭 또는 代替關係가 없기 때문에 [圖 II-6]에서 보는 바와 같이 消費稅의 賦課에 따라 財貨1의 價格이  $P_{10}$ 에서  $P_{11}$ 으로 上昇하더라도 財貨2의 需要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財貨2의 均衡은 財貨1에 대해 消費稅가 賦課되기 이전의 경우와 동일한  $A_2$ 에서 결정되는바 均衡價格과 均衡量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 2) 財貨1과 2에 대한 消費稅 賦課時의 均衡

財貨1과 財貨2 모두에 대해 消費稅가 賦課되는 경우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

財貨1에 대해서만 消費稅가 賦課되면 財貨1과 財貨2에 대한 競爭 均衡은 각각  $I_1(=B_1)$ 과  $A_2$ 에서 이루어진다. 만약 財貨2에 대해서도 消費稅가 賦課되면 [圖 II-6]에서 보듯이 財貨2에 대한 供給曲線이  $S_2$ 에서  $S_2'$ 로 이동하게 되어 財貨2의 均衡은 需要曲線  $D_2$ 와 供給曲線  $S_2'$ 이 교차하는  $I_2$ 에서 이루어진다. 財貨1의 경우에는 財貨2의 價格變動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종전과 다름없이  $I_1(=B_1)$ 에서 均衡이 이루어진다.

이와 같이 財貨1과 財貨2 間에 아무런 競爭 또는 代替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각 재화에 대한 均衡價格과 均衡量은  $(P_{11}, Q_{11})$ ,  $(P_{25}, Q_{25})$ 이 된다. 이는 競爭 또는 代替關係가 있는 경우의 均衡價格  $P_1^0$ 와  $P_2^0$ 보다 모두 낮으며 均衡量  $Q_1^0$ 와  $Q_2^0$ 보다 작다. 이는 두 財貨間에 競爭 또는 代替關係가 없으므로 他財貨의 價格變動에 따른 需要變化가 없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 4. 稅負擔의 衡平性和 個別消費稅의 負擔

低所得層의 경우에는 平均消費性向이 높고 高所得層의 경우에는 平均消費性向이 낮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附加價値稅와 같이 모든 물품이나 용역을 대상으로 單一稅率로 消費稅를 과세하면 低所得層의 稅負擔이 高所得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아지게 되어 稅負擔이 逆進的으로 나타난다. 반면에 일부의 재화나 용역을 대상으로 선택적으로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課稅對象의 주된 消費者가 어떤 所得階層에 속하는가에 따라 稅負擔 分布가 달라지므로 반드시 稅負擔이 逆進的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특히 課稅對象別로 稅率을 差等化하는 경우에는 어떤 계층이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대상을 더 많이 소비하느냐에 따라 稅負擔 分布가 달라진다. 즉, 消費稅는 稅率과 課稅對象의 種類, 消費패턴, 消費者의 分布 등에 따라 稅負擔의 垂直的·水平的 衡平性이 달라진다.

만약 個別消費稅의 課稅對象을 高所得層이 대부분 소비하는 高級 高價의 奢侈財로 한정한다면 비록 低所得層의 平均消費性向이 高所得層보다 높다고 하더라도 개별소비세의 稅負擔은 累進的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課稅對象에 대해 個別消費稅를 課稅하는 것이 垂直的 衡平性 側面에서 바람직하다. 그러나 消費의 底邊이 低所得層에까지 확대된 生活必需品에 個別消費稅를 課稅한다면 반대의 결과가 나타난다. 따라서 消費의 底邊이 넓은 물품이나 용역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는 것은 垂直的 衡平性을 阻害한다고 할 수 있다.

所得階層別 稅負擔 分布가 逆進的인지 또는 累進的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동일한 所得과 消費性向을 가지는 消費者라고 하더라도 개별소비세를 과세함에 따라 消費稅 負擔이 差等化됨으로써 水平的 衡平이 阻害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두 消費者가 동일한 所得과 消費性向을 가지고 있지만 消費패턴이 서로 상이하여 個

別消費稅가 課稅되는 財貨나 用役에 대한 消費組合(consumption bundle)이 서로 달라 稅負擔의 不平等이 초래될 수 있다. 이를 테면 동일한 所得과 消費性向을 가지는 消費者라고 하더라도 한 소비자는 맥주를 선호하고 다른 소비자는 소주를 선호한다고 할 때 麥酒와 燒酒에 대한 酒稅率이 서로 다르다면 두 消費者의 酒稅負擔은 상이해지게 되어 水平的 衡平이 沮害된다<sup>13)</sup>.

이상과 같이 消費稅를 課稅하는 경우에 水平的 衡平이 파괴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논리적으로 그러한 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근거를 찾기 어렵다. 따라서 특정한 소비자가 특정 재화를 더 선호한다는 이유만으로 더 많은 消費稅를 負擔해야만 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찾기 어렵다. 다만 그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特定 財貨나 用役에 대한 生産 또는 消費過程에서 外部效果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稅負擔의 衡平性이 沮害된다고 하더라도 財貨나 用役間에 稅負擔의 隔差를 두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sup>14)</sup>.

그러나 위에서 예를 든 麥酒와 燒酒의 경우처럼, 麥酒의 알콜度數보다 燒酒의 알콜度數가 더 높기 때문에 後者를 소비함에 따른 外部不經濟가 前者보다 더 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麥酒에 대한 酒稅率이 燒酒에 대한 酒稅率보다 더 높은바, 현실적으로는 外部不經濟 側面만으로 그러한 것을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물론 이러한 것은 우리나라의 酒稅率 體系가 衡平 및 外部不經濟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그 밖에도 우리나라에서는 麥酒로부터 징수되는 酒稅가 전체 주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에 租稅의 일차적인 기능인 稅收確保 측면에서 부분적으로나마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13) 이러한 문제는 稅負擔의 水平的 衡平性 側面에서 뿐만 아니라 稅負擔의 差異에 따라 相對價格 構造가 변화하여 特定 財貨에 대한 消費量의 絶對水準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4) 崔 洸(1987) p.28 참조.

일반적으로 消費稅가 부과되면 형식상 消費稅는 消費者가 모두 負擔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물론 소비세가 소비자에게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생산자에게 부과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형식적으로는 消費者가 모든 消費稅를 負擔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특정 財貨나 用役에 消費稅가 賦課될 경우 需要나 供給이 完全非彈力的이거나 完全彈力的인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生産者 또는 消費者가 일방적으로 消費稅를 負擔하는 것이 아니라 양자가 부분적으로 소비세를 나누어 부담하게 된다. 물론 需要曲線과 供給曲線의 상대적인 기울기의 차이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消費稅가 生産者에게 부과되거나 또는 消費者에게 부과되는 두 가지 경우 가운데 어떠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대부분 마찬가지로의 결과를 나타낸다<sup>15)</sup>.

## 5. 要約, 評價 및 政策示唆點

租稅의 일차적인 목적은 租稅收入을 確保하는 데 있는 만큼 그러한 전제하에 가능한 한 資源配分에 中立의이면서 稅負擔의 效率性을 최대한 발휘하여야 한다. 效率性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最適租稅라 함은 租稅를 賦課하더라도 資源配分의 效率性을 왜곡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는 곧 租稅를 부과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差別을 받거나 또는 惠澤을 받는 경우가 없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전통적인 租稅理論에 의하면 완벽한 의미에서 그러한 租稅는 존재하지 않는다. 즉, 일정 규모의 租稅收入을 보장해주는 동시에 財貨와 用役, 餘暇 間의 選擇에 歪曲을 낳지 않는 租稅는 현실적으로 없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租稅를 賦課하게 되면 불가피하게 死重損失이라는 社會的 厚生損失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러한 제약하에서는

15) 물론 이러한 논의도 部分均衡 分析에 입각하여 결론을 도출한 것인 만큼 一般均衡 分析에 기초하여 논리를 전개하면 다른 결론이 도출될 수도 있음에 유의하기 바란다.

社會的 厚生損失을 最小化할 수 있는 租稅를 부과함으로써 일정 규모의 稅收을 確保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 餘暇, 즉 勞動의 供給이 外生的으로 주어짐으로써 여타의 財貨나 用役과 代替關係가 없다면 모든 財貨와 用役을 대상으로 單一稅率의 一般消費稅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에서 우리나라의 附加價値稅가 單一稅率 構造를 가지면서 원칙적으로 모든 財貨와 用役에 대해 과세하고 있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財貨나 用役, 餘暇 間에 代替關係가 있다고 보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러한 것이 타당하다면 單一稅率의 一般消費稅를 課稅할 경우 社會的 厚生損失이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한 경우에는 각 課稅對象別로 價格彈力性의 逆數에 比例하도록 個別消費稅의 稅率을 差等化하여 賦課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에서 特別消費稅나 酒稅 등과 같이 稅率이 差等化된 個別消費稅를 부과하는 것에 대한 正當性을 찾을 수 있다.

主要 家電製品과 乘用車 등을 주된 課稅對象으로 하고 있는 特別消費稅의 경우에는 前者보다는 後者が (價格)彈力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社會的 厚生損失을 축소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逆彈力性 原則에 입각해 볼 때 前者에 대한 稅率을 後者に 대한 稅率보다 높게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現行 特別消費稅의 稅率을 보면 그러한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小型乘用車의 경우에는 TV·冷藏庫 등의 家電製品에 비해 需要가 보다 價格彈力的이지만 特別消費稅의 稅率은 각 10%와 15%로 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衡平性 側面에서 상당히 큰 문제점을 안고 있다. 왜냐하면 家電製品의 경우에는 대부분 生活必需品으로서 低所得層까지도 광범위하게 소비하고 있는 반면 乘用車의 경우에는 최근들어 보급이 급속히 확대되어 점차 生活必需品化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家電製品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奢侈品이라고 할 수 있는 바 이에 따라 稅負擔의 水平的·垂直的 衡平性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衡平性 側面에서 본다면 乘用車에 대해 상대적으로 보다 重課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效率性 側面뿐만 아니라 衡平性 側面까지 함께 고려한다면 逆彈力性 原則을 고수하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하지만은 않음을 알 수 있다. 현재 小型乘用車에 대해서는 家電製品에 대한 特別消費稅率보다 낮은 稅率이 적용되고 있지만 製造·取得時에 登錄稅, 取得稅 등의 租稅도 함께 부과되고 있는 것까지 감안한다면 乘用車에 대한 諸稅負擔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는바 總體的인 稅負擔은 逆彈力性 原則에 의한 것보다 더 높으며 또한 그것이 정당화된다고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酒類와 家電製品의 경우에도 逆彈力性 原則을 적용하여 부분적으로나마 양자간의 稅率隔差에 대해 그 요인을 찾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酒類가 家電製品에 비해 價格彈力性이 낮다고 볼 수 있다<sup>16)</sup>. 우리나라의 特別消費稅와 酒稅의 稅率水準을 볼 때 대체로 後者が 前者의 경우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는 逆彈力性 原則이 부분적으로나마 적용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물론 酒類의 경우에는 家電製品 등과 달리 飲酒에 따른 外部不經濟 問題가 상당히 심각한 만큼 그러한 측면에서 稅率水準이 보다 높게 책정되어야 할 當爲性이 있기 때문에 兩者間의 稅率隔差를 모두 逆彈力性 原則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정도 그러한 原則이 적용되고 있다고 보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特別消費稅와 酒稅 間의 稅率隔差가 존재하는 것에 대한 理論的 根據를 찾을 수 있는바, 現行 個別消費稅의 差等稅率 構造를 정당화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6) 물론 이러한 設定은 實證分析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논의 자체의 信賴性이 의문시될 수 있으므로 다음의 논의에 대해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그러한 것이 의미하는 바를 부분적으로만 수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이러한 논의에는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현행 特別消費稅의 과세목적은 재정수입 확보와 사치성 소비재에 대해 과세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부담의 역진성을 보완한다는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역탄력성 원칙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별소비세의 세율 책정에 있어서는 역탄력성 원칙의 적용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한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消費나 生産過程에서 外部不經濟를 야기하는 경우에는 外部費用만큼의 租稅를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외부비용만큼의 租稅賦課를 통해 社會的 厚生損失을 最小化하기 위해서이다. 즉, 外部不經濟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民間의 自律的 經濟活動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消費水準은 適正水準을 초과하여 과다하게 消費가 이루어지게 되는 만큼 適正水準 超過分에 대한 消費抑制가 필요하다.

최근 들어 飲酒에 따른 각종 弊害, 화석연료 소비 급증에 따른 環境汚染, 交通混雜 등이 매우 심각한 社會問題化하고 있는 것을 볼 때 外部不經濟 縮小를 위한 租稅 賦課의 必要性이 급증하고 있다. 交通稅 등이 外部不經濟 縮小를 위한 租稅로 볼 수 있는바, 여기에서 個別消費稅 課稅에 대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다만 個別消費稅의 課稅目的이 그러한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는 그러한 體系가 상당히 미흡하다. 따라서 우리나라 個別消費稅의 主要 課稅目的을 外部不經濟 是正이라는 측면에까지 크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酒稅도 飲酒에 따른 弊害의 정도 差異에 따라 稅率을 差等化할 수 있다는 理論的 根據를 마련할 수 있다고 하겠다.

第3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두 財貨間에 競爭 또는 代替關係의 與否에 따라 消費稅 賦課에 따른 均衡價格 및 均衡量의 變化效果가 상이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競爭 또는 代替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特定 財貨에 대해 消費稅를 賦課하더라도 그것이 다른 財貨의

消費에 미치는 영향이 없기 때문에 財貨間 消費稅率의 差異에 따른 資源配分의 歪曲問題가 없다고 할 수 있다<sup>17)</sup>. 그러나 財貨間에 競爭 또는 代替關係가 있는 경우에 特定 財貨에만 消費稅를 賦課하게 되면, 消費稅가 賦課되는 財貨의 경우에는 差別을 받게 되는 반면에 競爭 또는 代替關係에 있으면서 消費稅가 부과되지 않는 財貨는 惠澤을 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資源配分이 歪曲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競爭 또는 代替關係에 있는 모든 財貨에 대해 消費稅를 賦課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또한 消費稅의 稅率도 일정한 원칙에 따라 동등한 수준에서 책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결과는 競爭 또는 代替關係에 있는 財貨間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補充關係가 있는 경우에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特定 財貨에 대해 消費稅를 부과하는 경우 그 財貨와 補充關係에 있는 財貨의 消費量(또는 均衡量)에 負(-)의 效果를 미칠 수 있다는 것이 代替關係가 있는 경우와의 차이라고 하겠다.

---

17) 물론 이와 같은 論據는 進술한 바와 같이 部分均衡分析에 입각한 경우에만 타당하다. 만약 一般均衡分析에 입각하여 財貨間의 相對價格이 변동함에 따른 消費組合(consumption bundle)의 變化效果를 감안한다면 이러한 결론은 타당하지 않게 될 수 있음에 유의하기 바란다.

### Ⅲ. 우리나라 酒稅의 現況과 酒稅率의 國際比較

#### 1. 酒種의 分類

現行 酒稅法에 따르면 酒精과 알콜分 1度 이상의 飲料를 酒類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주세법은 주류를 酒精, 濁酒, 藥酒, 麥酒, 果實酒, 燒酒, 위스키, 브랜디, 一般蒸溜酒, 리큐르, 其他 酒類의 11가지로 구분하고 있다.<sup>1)</sup>

현행 주세법에 의하면 보드카는 一般蒸溜酒에 해당된다. 보드카는 제조공법이 소주와 거의 동일하나 제조공정상 여과시에 자작나무숯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현행 酒稅法에서는 자작나무숯으로 여과하는 보드카의 경우에는 제조공법이 상당히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燒酒에서 제외되고 一般蒸溜酒로 분류되고 있다. 이는 日本의 酒稅法에서도 보드카와 소주를 별개의 주류로 구분하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 종결된 日 EU 酒稅協議에서 WTO의 패널은 최종 보고서를 통해 燒酒와 보드카가 類似 製品('like' products)인 것으로 판정한 바 있다. 따라서 WTO 패널의 결정사항을 참조하거나, 제조공법상의 유사성 등을 놓고 볼 때 우리나라에서 보드카와 소주를 서로 다른 주종으로 구분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큰 논란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1) 淸酒는 藥酒類에 포함된다.

## 2. 酒種別 酒稅率

### 가. 酒稅率의 變化推移

우리나라 酒稅의 課稅體系는 酒稅法 制定 당시(1949년)에는 從量稅 體系로 출발하였으며, 1967년 말과 1971년 말의 두 차례에 걸친 稅法改正을 거쳐 酒精을 제외한 모든 酒類製品에 대해 從價稅 體系로 전환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1950년대 초반까지 단위당 酒稅率(額)이 가장 높았던 것은 酒精으로 1석(=144Kg)당 4萬圓이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淸酒, 高粱酒, 麥酒, 其他再製酒 등의 順으로 酒稅率이 높았다. 이후 麥酒에 대한 酒稅率이 계속 上向調整되어 1960년대 중반에는 酒稅率이 높은 酒種이 되었다. 淸酒의 경우에는 一般淸酒에 대한 稅率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으나 特級淸酒가 등장하면서 이에 대한 稅率이 크게 引上되었다. 高粱酒와 其他釀造酒의 稅率도 크게 인상되어 稅率水準이 상당히 높은 편이었다.<sup>2)</sup>

1968년 1월 1일부터는 酒稅法이 개정되어 濁酒, 藥酒, 酒精의 세 가지 酒種을 제외한 나머지 酒類에 대해 酒稅의 課稅體系가 從價稅로 개편되었다. 또한 위스키에 대한 酒稅率이 150%로 결정됨에 따라 위스키가 麥酒를 제치고 酒稅率이 가장 높은 酒種이 되었다. 麥酒는 100%(단, 合成麥酒는 90%), 高粱酒와 其他釀造酒는 90%, 淸酒는 80%(단, 合成淸酒는 60%)의 세율이 적용되었는바 이들 주종은 다른 주종에 비해 酒稅率이 높은 편이었다. 반면에 燒酒와 果實酒에 대해서는 각각 30%와 20%의 稅率이 적용되었는바 다른 酒種에 비해 낮은 세율이 적용되었다.

1971년 말에도 酒稅率 體系가 크게 개편되었는바 濁酒와 藥酒에

2) 1962년 6월 10일에 단행되었던 通貨改革에 따라 종래의 10환이 1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1962년 8월 18일부터 새로이 개편된 通貨單位로 환산하여 酒稅率 體系가 개편되었다.

대해서도 다른 酒種과 마찬가지로 從價稅 體系로 과세체계가 改編되면서 각각 10%와 60%의 세율이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위스키와 麥酒에 대해서는 각각 10%p와 20%p씩 세율이 인상되었으며 나머지 주류제품에 대해서도 대부분 酒稅率이 上向調整되었다. 이후 1991년 상반기까지 일부 酒類製品에 대한 稅率만 변경되었을 뿐 전반적인 酒稅率 水準에는 커다란 변화가 없었다.

1991년 7월 1일부터는 우리나라의 酒種分類 基準이 대폭 개편되었으며 세율도 대폭 조정되었다. 銘藥酒와 合成淸酒 등은 하나의 酒種으로 통합되어 淸酒로 분류되었으며 稅率도 70%로 單一化되었다. 其他釀造酒, 高粱酒, 其他蒸溜酒, 其他再製酒 등의 경우에도 一般蒸溜酒로 재분류되면서 세율도 80%로 조정되었다.

우리나라에서 大衆酒로서 消費의 底邊이 매우 넓은 燒酒의 경우에는 稀釋式燒酒와 蒸溜式燒酒의 두 가지로 구분되면서 稅率도 각각 35%와 50%로 차등화되었다. 위스키와 브랜디의 세율도 하나로 통일되면서 맥주에 대한 酒稅率과 같은 150%로 조정되었다.

1990년대에는 EU의 요구에 따라 韓·EU 酒稅協議가 전개되었다. 이 협의에서 EU는 우리나라에 대해 酒稅의 課稅體系를 從價稅에서 從量稅 體系로 개편할 것을 주장하였으며, 위스키에 대한 酒稅率 및 關稅率을 引下하라는 등의 요구조건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과세체계와 관련해서는 從量稅 體系로 전환할 수 없다는 우리나라의 주장이 관철되어 이에 대한 개편은 없었으나 위스키에 대한 주세율 및 관세율의 인하, 그리고 소주에 대한 교육세의 과세 등의 사항에는 양자가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위스키와 브랜디에 대한 稅率은 1994년부터 120%, 1996년부터는 100%로 인하되었다. 반면에 麥酒의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150%의 酒稅率이 그대로 적용되었는바 결과적으로 麥酒가 酒類 가운데 가장 높은 酒稅率을 가지게 되었다. 이와 같은 주세율 체계의 개편에 따라 맥주와 위스키 등의 일부 酒類에 대해 酒稅率 水準이 역전되면서 酒種間 酒稅負擔의 衡平性 問題가

제기되고 있다. 즉 위스키나 브랜디는 麥酒보다 高級 高價酒일 뿐만 아니라 알콜度數도 훨씬 높기 때문에 課稅의 衡平性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外部不經濟 측면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게 되었다. 다만 1996년에는 麥酒에 대한 酒稅率이 130%로 소폭引下되었는바 위스키와의 세율격차가 축소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酒稅率 體系의 衡平性 및 外部不經濟 문제가 남아 있다.

#### 나. 現行 酒稅率 體系

우리나라의 주세율 체계는 酒精에 대해서만 從量稅 體系로 과세하고 있으며 나머지 주류 제품에 대해서는 從價稅 體系로 과세하고 있다. 稅率은 주종별로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통주로서 종전에는 소비량이 상당히 많았으나 최근 들어 소비량이 급속히 감소하고 있는 濁酒의 경우에는 酒稅의 課稅對象 가운데 가장 낮은 5%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며 대중주의 하나인 동시에 단일 주종으로 가장 소비량이 큰 麥酒에 대해서는 가장 높은 130%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그 밖에 서민 대중이 많이 소비하는 燒酒의 경우에는 稀釋式과 蒸溜式에 각각 35%와 50%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며, 위스키, 브랜디에 대해서는 1996년 이래 100%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이 외에 酒稅率이 80% 미만인 주류에 대해서는 주세액의 10%, 酒稅率이 80%를 초과하는 주류에 대해서는 주세액의 30%에 해당하는 教育稅가 附加稅로서 과세되고 있다. 단 藥酒類 가운데 藥酒와 酒精, 濁酒는 교육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表 III-1>의 繼續

(單位: 圓/石[~1954.3.30], 환/석[~1962.8.17], 원/석[~1965.12.31], 원/千리터, %[~1971.12.31])

	1968.1.1~	1972.1.1~	1973.2.26~	1974.1.14~	1975.1.1~	1991.7.1~	1994.1.1~	1996.1.1~	1997.1.1~	비 고
獨 酒	1,470	10	10	10	10	5	5	5	5	
藥 酒	20,000	60	60	60	60	30	30	30	30	
銘藥酒			80	100	100	70	70	70	70	清酒
清 酒	80	100	100	120	120	70	70	70	70	清酒
特級										
1級										
2級										
合成清酒	60	65	65	65	65	70	70	70	70	清酒
1級				150						
2級				100						
麥 酒	100	120	120	25	150	150	150	150	150	
合成麥酒	90	100	100	110	100					麥酒
果實酒	20	25	25	25	25	30	30	30	30	
其他釀造酒	90	110	100	110	110	80	80	80	80	一般蒸溜酒
蒸溜式燒酒	30	35	35	35	35	50	50	50	50	
稀釋式燒酒	30	35	35	35	35	35	35	35	35	
高粱酒	90	110	110	110	110	80	80	80	80	一般蒸溜酒
위스키	150	160	160	250	200	150	150	150	150	
브랜디		100	100	160	150	150	150	150	150	
酒 精	49,350	49,350	49,250	49,350	49,350	57,000	57,000	57,000	57,000	
其他蒸溜酒	50	50	80	80	80	80	80	80	80	一般蒸溜酒
人蔘酒1					100	50	50	50	50	리큐르
人蔘酒2					50	50	50	50	50	
其他再製酒										
其他再製酒1	30	35	35	35	100	80	80	80	80	一般蒸溜酒
其他再製酒2	40	50	50	50	40	80	80	80	80	

註：1. ■■■■한 것은 從量稅 稅率을 나타냄.

2. 人蔘酒1과 其他再製酒1, 그리고 人蔘酒2와 其他再製酒2는 각각 酒稅率이 80% 以上 또는 未滿 酒類를 原料로 사용한 것임.
3. 石 또는 석 = 144kg(1.8가마)임.
4. 防衛稅：1975. 7.16 制定 - 酒稅額의 10%. 단, 濁酒, 酒精 제외, 酒稅率 100% 이상 酒類는 20%.  
 1979.12.28 改正 - 酒稅額의 10%. 단, 濁酒, 酒精 제외, 酒稅率 100% 이상 酒類는 30%.  
 1981.12.31 改正 - 酒稅額의 10%. 단, 濁酒, 酒精 제외, 酒稅率 100% 이상 酒類와 이를 原料로 사용한 酒類는 30%.  
 1990.12.31 廢止.
5. 教育稅：1981.12. 5 制定 - 酒稅額의 10%. 단, 濁酒, 藥酒, 燒酒 제외함.  
 1990.12.31 改正 - 酒稅額의 10%. 단, 濁酒, 藥酒, 燒酒, 酒精 제외, 酒稅率 80% 이상 酒類는 30%.  
 1990.12.31 改正 - 酒稅額의 10%. 단, 濁酒, 藥酒, 燒酒, 酒精 제외, 酒稅率 80% 이상 酒類는 30%.  
 1949~1953.2.27 원  
 1953~1962.6. 9 환

※ 1962. 6. 10 통화개혁에 따른 긴급통화조치법에 따라 10환을 1원으로 결정

<表 III-2> 우리나라의 酒種 分類와 酒稅率(1997年 現在)

(單位: 원/千리터[酒精], %[實減量認定範圍, 酒稅率])

		規 格	實減量認定範圍	酒 稅 率
酒	精	95°	1 이내	57,000
濁	酒	6° 이상	2 이내	5
藥	酒 類			
藥	酒	13° 이하	2 이내	30
清	酒	14° 이상	5 이내	70
麥	酒	25° 미만	3.5 또는 3 이내	130
果	實 酒	25° 미만	2 이내	30
燒	酒			
蒸	溜 式	30° 이상	2 이내	50
稀	釋 式	35° 이하	2 이내	35
위	스 키 類		2 이내	100
브	랜 드 類		2 이내	100
一	般 蒸 溜 酒		2 이내	80
리	큐 르		2 이내	50
其	他 酒 類			
	알콜分 25度 미만		2 이내	70
	엑스分 30度 이상		2 이내	10
	알콜分 20% 이상		2 이내	100
	其 他		2 이내	80

資料: 國稅廳.

### 3. 酒稅收入과 酒類消費 推移

우리나라의 酒稅收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增加率은 점차 둔화되는 趨勢에 있다. 이는 酒類의 消費 增加率이 점차 鈍化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주류에 대한 稅率이 下落한 데에 그 원인이 있다. 최근 酒稅收入의 規模는 약 2조원 정도로 國稅收入 對比 2~3% 정도의 占有比를 차지하고 있다. 국민 1인당 酒類 消費量에 큰

변화가 없는 한 長期的으로 酒類의 消費 增加率은 人口 增加率에 제약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人口 增加率이 계속 下落하고 있는 점을 볼 때 酒稅收入 增加率의 鈍化趨勢는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에서는 1996년 현재 약 35억리터의 酒類가 출고되었는바 이를 국민 1인당 소비량으로 환산하면 연간 약 75~80리터 정도에 이른다. 다만 최근에는 국민 1인당 주류소비량이 거의 변화하지 않는 상황에서 인구증가율이 1% 이내로 축소되는 등 주류에 대한 消費人口의 增加率이 鈍化됨에 따라 酒類 消費量(出庫量) 또한 增加趨勢가 鈍化되고 있다.

우리나라 주류 가운데 가장 많이 소비되고 있는 것은 麥酒인데 1996년 현재 전체 주류 소비량의 약 53.9%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燒酒가 많이 소비되고 있는바 消費比重(物量基準)은 전체의 약 4분의 1(22.7%) 정도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위의 두 가지 주류를 합산할 경우의 소비비중이 총 주류 소비량의 약 4분의 3 정도에 이르는바 이들 두 가지 주류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大衆酒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濁酒, 淸酒, 위스키의 順으로 소비량이 많다. 이 가운데 특히 위스키의 경우에는 최근 소비 증가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國內 出庫分 위스키의 경우에는 1996년 이래 出庫量이 減少하고 있는 반면 輸入分이 대폭 增加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의 위스키 소비증가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輸入 위스키가 주도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이상과 같이 麥酒와 燒酒의 소비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에 두 주류에 대한 주세 부과액은 전체의 약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麥酒의 경우에는 1996년에 1조 3,600억원 정도의 주세가 부과되어 總酒稅 賦課額(1조 9,700억원)의 69.1%를 차지하였고 燒酒는 11.3%의 세수점유비를 나타내었는바 麥酒와 燒酒의 稅收比重은 80.3%에 이른다. 여기서 특징적인 점은 麥酒의 경우 消費量 占有比가

약 54%이지만 稅收占有比는 이보다 훨씬 높은 70% 정도의 수준을 보이는 반면 燒酒의 경우에는 消費量 占有比가 23% 정도인 데 비해 稅收占有比는 거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麥酒에 대해 높은 酒稅率(150%)이 적용되는 반면 燒酒에 대해서는 낮은 酒稅率(35% 또는 50%)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 4. 酒類의 輸出入 動向

酒精 및 變性알콜을 제외한 나머지 주류 제품에 대한 輸入物量 및 輸入金額 관련 統計는 <表 III-4>에 나타난 바와 같다.

먼저 輸入 酒類는 위스키가 대부분인바 전체 주류 수입량의 약 3분의 2 정도의 점유비를 보이고 있다. 輸入金額 기준으로는 위스키의 점유비가 물량기준보다 높은 75~8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위스키가 다른 종류의 주류제품에 비해 輸入金額의 占有比가 輸入物量의 占有比보다 크게 높은 것은 위스키가 다른 주종에 비해 高價이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위스키의 경우에는 최근 輸入增加率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1993년까지만 해도 위스키의 수입증가율은 높지 않았으나 이후 수입증가율이 크게 증가하였는바 1994년에는 전년 대비 48.1%라는 매우 높은 수입증가율을 나타내었다. 뿐만 아니라 위스키는 1995년과 1996년에도 각각 전년 대비 52.4%와 29.9%라는 매우 높은 수입증가율을 시현하였다. 이와 같이 최근에 위스키의 수입물량이 크게 증가한 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으나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요인으로는 1994년과 1996년의 두 차례에 걸친 위스키의 세율 인하와 그에 따른 價格下落을 지적할 수 있다. 그 외에도 1980년대 말 이후 임금수준의 급속한 상승으로 일반 소비자들의 所得水準이 급속히 상승함에 따라 나타난 결과로 해석된다. 이외에도 위스키의 경우에는 원액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출고하는 것

&lt;表 Ⅲ-3&gt; 最近의 酒類 出庫 및 酒稅賦課

(單位：千리터, 百萬圓)

		1991年			1992年			
		出庫量	出庫金額	稅 額	出庫量	出庫金額	稅 額	
國	濁 酒	440,134	148,088	9,783	376,800	158,210	6,851	
	藥 酒	2,228	1,358	357	2,567	2,836	594	
	麥 酒	1,583,928	1,730,864	799,175	1,574,465	1,971,007	910,614	
	清 酒	40,400	95,759	37,280	50,934	113,855	40,703	
	果 實 酒	9,343	25,455	4,776	12,667	29,684	5,911	
	蒸溜式燒酒	194	1,965	538	315	3,762	1,140	
	稀釋式燒酒	677,852	586,404	128,136	723,198	684,949	149,853	
	內	酒 精	194,051	—	7,623	204,106	—	8,811
		위 스 키	9,853	267,435	68,432	11,158	282,948	63,595
		브 랜 드	145	2,421	716	144	2,661	770
一般蒸溜酒		6,064	35,627	9,259	11,437	79,536	19,721	
分	리 큐 르	963	9,254	2,672	3,644	30,668	8,647	
	其他酒類	139	760	220	703	3,933	1,133	
	수 시 분	21,976	72,980	20,218			153	
	國內分計	2,987,280	2,978,291	1,089,185	2,972,138	3,364,049	1,518,496	
	輸 入 分			77,075			79,699	
	總 計	2,987,280	2,978,291	1,166,260	2,972,138	3,364,049	1,298,195	

<表 Ⅲ-3>의 繼續

(單位：千리터, 百萬원)

		1993년			1994년		
		出庫量	出庫金額	稅 額	出庫量	出庫金額	稅 額
國	濁 酒	319,533	150,995	6,539	299,862	157,056	6,800
	藥 酒	2,668	3,764	789	3,018	4,999	1,050
	麥 酒	1,508,854	2,052,174	948,039	1,769,057	2,488,990	1,149,936
	清 酒	48,478	122,161	43,637	50,095	125,798	44,933
	果 實 酒	10,222	26,043	4,976	8,949	23,892	4,145
	蒸 溜 式 燒 酒	715	9,479	2,873	862	9,882	2,994
	稀 釋 式 燒 酒	743,964	779,212	170,849	765,180	883,783	193,309
內	酒 精	208,986	-	8,605	221,159	-	7,837
	위 스 키	11,595	296,301	78,153	15,205	374,072	89,360
	브 랜 드	130	2,525	733	219	4,137	634
	一 般 蒸 溜 酒	4,791	31,596	9,170	4,244	29,118	9,635
分	리 큐 르	5,683	47,419	13,275	6,274	54,613	15,531
	其 他 酒 類	488	2,631	764	560	2,107	186
	수 시 분			6			79
	國 內 分 計	2,866,107	3,524,300	1,288,406	3,144,684	4,158,447	1,526,429
輸 入 分		99,815		83,926	149,672		114,117
總 計		2,965,922		1,372,332	3,294,356		1,640,546

&lt;表 Ⅲ-3&gt;의 繼續

(單位：千리터, 百萬원)

		1995年			1996年		
		出庫量	出庫金額	稅 額	出庫量	出庫金額	稅 額
國 內 分	濁 酒	246,093	141,209	6,114	209,969	141,002	6,102
	藥 酒	3,195	5,977	1,253	2,625	5,913	1,239
	麥 酒	1,850,334	2,781,371	1,283,729	1,868,426	2,951,136	1,363,090
	清 酒	43,302	126,976	45,272	42,564	145,018	51,865
	果 實 酒	7,930	22,536	3,941	6,537	21,064	3,731
	蒸溜式燒酒	816	6,960	2,041	980	10,636	3,118
	稀釋式燒酒	761,839	934,778	192,202	787,320	1,007,922	218,917
	酒 精	221,293	-	7,364	248,838	-	12,274
	위 스 키	16,488	447,578	102,663	13,768	408,221	151,094
	브 랜 드	154	3,517	90	92	1,675	428
	一般蒸溜酒	2,979	19,859	6,844	1,640	10,459	3,604
	리 큐 르	8,520	71,630	20,562	15,543	95,240	27,160
	其他酒類	633	2,286	168	756	2,675	206
수 시 분			93			207	
國內分計		3,163,576	4,564,677	1,672,336	3,199,058	4,800,961	1,843,035
輸 入 分		193,816		168,026	269,557		130,832
總 計		3,359,392		1,840,262	3,468,615		1,973,867

註：1. 免稅出庫分은 除外하고, 酒稅賦課月 基準으로 作成함.

2. 輸入酒類는 위스키가 상당 部分을 차지함.

資料：國稅廳, 『國稅統計年報』, 各 年度.

關稅廳·韓國關稅研究所, 『貿易統計年報』, 各 年度.

보다 완제품을 수입하는 것이 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상당 수의 위스키 제조회사가 직접생산보다는 OEM 방식에 의한 完製品 輸入을 選好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위스키에 대한 輸入增加率을 上昇시키는 要因이 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위스키 다음으로 가장 많이 輸入되고 있는 酒類製品은 와인으로 대표되는 果實酒와 麥酒를 들 수 있다. 이 가운데 果實酒의 경우에는 <表 III-3>에서 보듯이 국내 출고분의 출고량이 수입물량에 비해 약간 높은 수준에 있는바 전반적으로 수입제품의 시장점유율이 상당히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반면에 麥酒의 경우에는 國內 出庫分이 절대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외에 燒酒나 藥酒, 一般蒸溜酒, 리큐르 등도 수입되고 있으나 수입물량 및 수입금액 모두 매우 작은 편이다.

<表 III-4>에서 보듯이 酒類의 輸入額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輸入酒類의 稅收寄與度도 1996년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상승하는 추세에 있다. 다만 수입주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위스키에 대한 세율이 1994년과 1996년에 인하되었는바 1994년의 경우에는 輸入分 酒稅收入이 물량 증가율보다 낮은 증가율을 보였을 뿐더러 1996년에는 오히려 輸入物量이 增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輸入分 酒稅收入이 減少한 것이 특징적이다.

최근 우리나라 酒類輸出의 絕對規模는 매우 작은 편이나 꾸준히 增加하는 趨勢에 있다. 1991년의 경우 주류의 輸出量은 약 2만 5천 톤이던 것이 1996년에는 약 7만 8천톤으로 2.1배 증가하였으며 輸出金額은 1,600만달러에서 8천만달러로 네 배 증가하였다<sup>3)</sup>. 주된 輸出酒種은 燒酒와 麥酒의 두 가지로, 이들 酒種의 輸出量과 輸出金額은 전체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맥주와 소주 다음으로는 藥酒의 輸出이 많으나 규모는 매우 작다. 그 밖의 주류의 경우에는 수

3) 리터單位の 輸出量 統計가 부정확하기 때문에 부득이 kg單位の 輸出量을 사용하였다.

출량과 금액 모두 미미할 뿐더러 연도별로도 기복이 매우 심해 일정한 패턴을 찾기 어렵다.

## 5. 酒稅의 階層別 稅負擔 分布

일반적으로 酒類의 消費는 所得에 대해 非彈力的이기 때문에 酒稅의 負擔分布도 所得과 逆의 關係에 있는 경우가 많다. 이는 酒類가 대중적인 소비기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관찰되고 있다.

1965년을 분석대상 기간으로 선정한 車輶權의 研究에 의하면 일부의 소득 분위를 제외하고는 주세부담률이 다소 불규칙적이지만 대체로 所得과 逆의 關係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970년대를 분석대상으로 한 韓昇洙, 財務部, Heller의 연구 및 1984년을 분석대상으로 한 李啓植·裴竣皓(1986), 1990년대를 분석대상으로 한 成明宰(1993, 1996)의 연구에서도 酒稅負擔이 逆進的인 것으로 나타났다는바 연구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대동소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表 III-6> 참조).

특히 위의 연구 가운데 成明宰(1996)의 경우에는 1994년의 都市家口를 대상으로 가구 전체의 酒稅負擔 分布뿐만 아니라 家口主의 年齡別 구분에 따른 酒稅負擔 分布 그리고 主要 酒類製品의 구분에 따른 酒稅負擔 分布와 逆進度 指數 등 보다 상세한 내용을 분석하였다.

먼저 <表 III-7>에 나타난 家口主의 年齡別 階層別 酒稅負擔 分布를 살펴보자. 酒稅負擔 分布는 전 연령층에 걸쳐 고르게 逆進的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만 가구주의 연령이 10대, 70대 또는 80대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역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불규칙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이 연령대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소득수준이 낮을 뿐만 아니라 주세부담률 또한 가장

<表 Ⅲ-4> 年度別 酒類 輸入量 및 輸入額 推移

(單位：千리터, 千달러)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輸入量	輸入額	輸入量	輸入額	輸入量	輸入額	輸入量	輸入額	輸入量	輸入額	輸入量	輸入額
藥 酒	7.9	25.3	13.8	43.7	13.6	41.9	51.4	132.8	49.2	185.7	62.6	178.6
麥 酒	1,726.8	238.9	376.9	363.5	697.4	603.0	1,550.2	1,137.8	3,735.9	2,547.8	5,377.8	3,377.9
果 實 酒	1,079.4	3,418.8	1,897.4	5,711.3	2,968.4	5,940.6	3,938.1	8,173.8	5,839.3	14,056.3	5,832.2	17,286.0
와 인	1,079.4	3,418.8	1,896.5	5,706.3	2,952.2	5,879.4	3,919.7	8,129.1	5,701.1	13,730.7	5,528.5	16,523.3
其 他	0.0	0.0	0.9	5.0	16.2	61.2	18.4	44.7	138.2	325.6	303.7	762.7
燒 酒	50.4	77.1	32.3	56.5	36.6	63.5	317.2	468.0	40.5	95.8	1.6	1.8
위 스 키	6,428.7	39,030.7	6,351.2	42,038.6	8,215.0	45,110.8	12,167.9	75,989.2	18,538.4	121,658.1	24,088.7	186,916.3
브 랜 디	106.3	767.8	229.0	1,723.4	217.0	1,195.4	513.6	3,343.8	1,241.3	4,814.5	1,203.8	11,878.9
一 般 蒸 溜 酒	443.6	646.8	704.1	1,578.4	1,520.7	2,140.6	2,190.0	3,065.9	1,604.1	2,111.8	2,019.6	1,993.2
럼 및 태피아	4.5	22.4	10.1	45.7	16.2	93.3	44.5	272.0	104.4	203.8	86.1	153.7
진 및 제네바	144.7	79.0	24.4	127.1	6.7	33.2	26.2	81.4	26.6	85.7	51.4	166.9
보 드 카	56.2	109.6	19.1	57.5	37.6	25.3	41.7	102.8	37.8	92.4	45.8	94.8
기 타	238.2	435.8	650.5	1,348.1	1,460.2	1,988.8	2,077.6	2,609.7	1,435.3	1,729.9	1,836.3	1,577.8
리 큐 르	289.5	921.2	291.0	2,250.2	1,728.5	2,142.3	527.7	2,495.9	628.8	2,873.7	839.1	3,755.3
計	10,132.6	45,035.6	9,895.7	53,765.5	15,397.2	57,238.1	21,256.1	94,807.2	31,677.5	148,343.7	39,425.5	225,388.0

註：1. 酒精과 變性알콜(HS 2207)은 제외하였음.

2. 輸入額은 C.I.F. 價格 基準이며 酒類 구분은 1996년 현재의 HS 基準임.

• 藥酒：HS 2206-00-20(穀物醱酵酒) 基準임.

• 麥酒：HS 2203 基準임.

• 果實酒：와인 - HS 2204 및 2205 基準임.

• 其他 果實酒：HS 2206-00-10(사과주, 배술 등) 및 2206-00-90(와인쿨러) 基準임.

• 燒酒：HS 2208-90-40 基準임.

• 위스키：HS 2208-30(위스키류) 基準임.

• 브랜디：HS 2208-20(꼬냑) 및 2208-90-10(브랜디) 基準임.

• 一般蒸溜酒：럼 및 태피아, 진 및 제네바, 보드카는 각각 HS 2208-40, 2208-50, 2208-60 基準이며, 其他는 HS 2208-90-60(高粱酒) 및 2208-90-90(其他)의 合임.

• 리큐르：HS 2208-70 基準임.

資料：關稅廳·韓國關稅研究所, 『貿易統計年報』, 各 年度.

<表 III-5> 年度別 酒類 輸出量 및 輸出額 推移

(單位：千Kg, 千달러)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輸入量	輸入額	輸入量	輸入額	輸入量	輸入額	輸入量	輸入額	輸入量	輸入額	輸入量	輸入額
獨	酒	0.0	0.0	0.0	0.0	474.6	675.5	430.4	553.9	371.9	411.9	545.2	608.2
藥	酒	314.0	847.4	413.7	1,038.6	586.6	1,523.5	1,248.8	2,405.7	3,541.6	4,962.2	2,491.3	3,177.0
麥	酒	20,194.9	9,466.1	27,541.9	13,866.2	30,704.1	15,443.5	35,393.1	17,289.8	28,610.2	15,950.1	41,529.5	23,133.7
果	酒	80.9	173.2	35.3	107.0	62.9	179.8	120.7	307.4	256.4	766.0	155.6	1,112.6
와	인	19.8	27.4	2.5	8.7	30.5	55.9	2.6	7.1	15.8	40.6	23.5	72.0
其	他	61.1	145.8	32.8	98.3	32.4	123.9	118.1	300.3	240.6	725.4	132.1	1,040.6
燒	酒	4,587.6	5,188.5	5,381.9	6,669.9	7,698.1	11,076.0	13,656.7	20,303.9	19,610.7	30,797.0	32,577.9	50,682.6
위	스 키	12.6	123.5	90.2	840.0	46.4	421.0	36.4	257.0	294.4	2,100.2	95.3	1,031.9
브	랜 디	11.1	17.4	0.4	3.3	3.8	12.0	1.5	12.1	101.6	172.6	1.2	34.4
一	般 蒸溜酒	69.6	100.0	94.6	129.9	83.7	130.0	106.4	174.6	160.7	324.1	255.6	536.2
	럼 및 태피아	0.0	0.0	0.0	0.0	0.4	2.4	0.0	0.0	0.0	0.0	0.0	0.0
	진 및 제네바	0.0	0.0	0.0	0.0	44.0	56.5	10.4	17.2	1.3	4.3	0.0	0.0
	보 드 카	0.0	0.0	0.0	0.0	0.0	0.0	0.0	0.0	23.8	40.3	0.0	0.0
	기 타	69.6	100.0	94.6	129.9	39.3	71.1	96.0	157.4	135.6	279.5	255.6	536.2
리	큐 르	67.6	383.8	123.4	732.1	83.6	451.2	62.6	394.0	79.1	486.7	75.1	396.7
	計	25,338.4	17,565.6	33,681.4	25,586.0	39,743.8	31,487.4	51,056.7	44,060.0	53,026.6	59,521.8	77,726.7	82,797.0

註：1. 酒精과 變性알콜(HS 2207)은 제외하였음.

2. 輸出額은 F.O.B. 價格 基準이며 주류 구분은 1996년 현재의 HS 기준임.

- 濁酒：HS 2206-00-2030 基準임.
- 藥酒：HS 2206-00-20(穀物醱酵酒) 基準임.
- 麥酒：HS 2203 基準임.
- 果實酒：와인 -- HS 2204 및 2205 基準임.
- 其他 果實酒：HS 2206-00-10(사과주, 배술 등) 및 2206-00-90(와인쿨러) 基準임.
- 燒酒：HS 2208-90-40 基準임.
- 위스키：HS 2208-30(위스키류) 基準임.
- 브랜디：HS 2208-20(꼬냑) 및 2208-90-10(브랜디) 基準임.
- 一般蒸溜酒：럼 및 테피아, 진 및 체네바, 보드카는 각각 HS 2208-40, 2208-50, 2208-60 基準이며, 其他는 HS 2208-90-60(高粱酒) 및 2208-90-90(其他)의 畧임.
- 리큐르：HS 2208-70 基準임.

資料：關稅廳·韓國關稅研究所, 『貿易統計年報』, 各 年度.

<表 III-6> 階層別 酒稅 負擔率

(單位: %)

研究者 對象年度	所得分位										平均
	1	2	3	4	5	6	7	8	9	10	
車軒權(1965)	0.083	-	0.043	0.054	0.067	0.058	0.072	0.061	0.101	0.044	-
Heller (1976)	0.84	0.93	0.90	0.86	0.81	0.90	0.61	0.83	0.70	0.67	-
韓承洙(1970)	1.44	1.23	1.18	1.13	1.08	1.05	1.00	0.95	0.88	0.77	1.01
韓承洙(1978)	2.34	1.83	1.83	1.52	1.41	1.32	1.23	1.14	1.02	0.78	1.12
財務部(1976)	0.26	0.27	0.26	0.25	0.26	0.24	0.24	0.26	0.25	0.22	0.25
財務部(1978)	0.39	0.32	0.37	0.37	0.36	0.34	0.35	0.31	0.32	0.32	0.33
財務部(1980)	0.61	0.41	0.46	0.42	0.42	0.46	0.45	0.44	0.45	0.37	0.42
李啓植·婁俊晧(1984)	0.25	0.13	0.12	0.11	0.12	0.10	0.10	0.09	0.08	0.07	0.10
成明宰(1991)											
平均消費性向	93.17	80.21	76.96	76.04	73.57	74.03	74.83	75.11	74.82	72.03	75.29
酒稅	0.216	0.211	0.204	0.192	0.158	0.159	0.145	0.151	0.125	0.115	0.152
成明宰(1994)											
平均消費性向	134.7	102.9	96.6	93.2	90.7	88.5	85.5	83.1	81.4	76.6	87.3
酒稅	0.343	0.342	0.329	0.315	0.300	0.299	0.260	0.240	0.247	0.221	0.270
酒稅分教育稅	0.064	0.064	0.063	0.361	0.058	0.062	0.051	0.050	0.054	0.051	0.056

註: 1. 韓承洙의 1970년과 1978년의 연구결과는 非農家를 대상으로 한 것임.

2. 李啓植·婁俊晧와 成明宰의 연구결과는 都市家口를 대상으로 總所得을 기준으로 하여 分析한 것임.

資料: 崔 洸(1991), 成明宰(1993, 1996).

<表 III-7> 年齡別·階層別·消費稅目別 總所得 對比 酒稅 負擔率(1994年)

(單位: %)

	1	2	3	4	5	6	7	8	9	10	平均
10, 70, 80대	0.148	0.312	0.305	0.058	0.218	0.386	-	0.106	0.035	0.071	0.190
20대	0.471	0.330	0.320	0.332	0.289	0.326	0.282	0.264	0.204	0.259	0.303
30대	0.414	0.376	0.367	0.306	0.309	0.295	0.265	0.266	0.261	0.234	0.289
40대	0.328	0.318	0.279	0.334	0.275	0.288	0.235	0.187	0.228	0.196	0.239
50대	0.275	0.329	0.365	0.346	0.373	0.273	0.280	0.261	0.255	0.225	0.261
60대	0.242	0.283	0.225	0.199	0.225	0.455	0.267	0.243	0.308	0.249	0.266
加重平均	0.343	0.342	0.329	0.315	0.300	0.299	0.260	0.240	0.247	0.221	0.270

資料: 成明宰(1996).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노년층과 청소년층의 경우 다른 연령층에 비해 소득수준이 매우 낮지만 주류 소비량은 더욱 낮기 때문이다. 전체적으로는 20대의 稅負擔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대의 경우 본격적으로 酒類를 많이 消費하기 시작하는 반면 所得水準은 아직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기 때문이다. 이후 30대와 40대의 경우 所得水準이 급속히 上昇하기 때문에 酒稅負擔率이 다소 下落하며 50대 이후에는 퇴직 등에 따라 소득수준이 점차 낮아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주세부담률은 다시 조금씩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주류 제품에 대한 階層別 酒稅負擔 分布는 <表 III-8>에 나타난 바와 같다. 먼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중주라고 할 수 있는 麥酒와 燒酒의 경우에는 階層別 稅負擔이 逆進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특히 麥酒의 경우에는 소비량의 절대수준이 가장 클 뿐더러 주세율 높기 때문에 總所得에 對比한 麥酒의 酒稅負擔은 약 0.06%(0.6%)로써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외에 淸酒, 濁酒, 果實酒의 경우에도 약간의 예외적인 경우도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酒稅負擔이 逆進的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위스키(브랜디 포함)와 其他 酒類의 경우에는 다른 酒類 製品과 달리 酒稅負擔이 累進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특히 위스키의 경우에는 주된 消費者層이 低所得層보다는 高所得層이 主流를 이루기 때문이다. 이는 위스키가 麥酒나 燒酒 등의 大衆酒와 달리 상대적으로 消費의 底邊이 高所得層에 集中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소비세는 특성상 계층별 세부담이 누진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점을 놓고 볼 때 위스키 등에 대한 酒稅負擔 分布가 累進的으로 나타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로부터 두 가지의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하나는 麥酒와 燒酒 등의 大衆酒, 특히 燒酒의 경우에는 거의 모든 계층의 소

비자들이 골고루 소비하는 가운데 특히 중저소득층이 대부분 소비하는 반면, 위스키의 경우에는 주로 고소득층이 많이 소비하고 중저소득층의 소비비중이 작은바 양자간에는 主消費者層이 區分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 밖에 위스키 등 高價酒·高級酒로서 低所得層보다는 高所得層으로 갈수록 소비비중이 높은 주류의 경우에는 高所得層의 稅負擔率이 높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稅負擔 分布가 累進的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稅負擔의 垂直的 衡平性 측면에서 酒稅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위스키 등의 高價酒·高級酒에 대해 높은 稅率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表 Ⅲ-8> 主要 酒類製品에 대한 酒稅의 階層別  
總所得 對比 稅負擔率(1994年)

(單位: %)

所得分位	1	2	3	4	5	6	7	8	9	10	平均
清 酒	0.106	0.067	0.059	0.049	0.038	0.047	0.049	0.037	0.043	0.034	0.046
濁 酒	0.028	0.009	0.006	0.006	0.005	0.005	0.004	0.004	0.003	0.002	0.005
燒 酒	0.315	0.183	0.145	0.127	0.131	0.125	0.110	0.100	0.082	0.063	0.112
麥 酒	0.920	0.802	0.813	0.770	0.636	0.646	0.577	0.564	0.455	0.364	0.577
위 스 키	0.053	0.019	0.034	0.054	0.050	0.076	0.034	0.051	0.077	0.059	0.054
果 實 酒	0.007	0.004	0.009	0.005	0.005	0.004	0.004	0.004	0.009	0.004	0.005
其他酒類	0.020	0.016	0.015	0.023	0.026	0.039	0.020	0.028	0.015	0.030	0.024

資料: 成明宰(1996).

다음의 <表 Ⅲ-9>에서는 主要 酒類製品에 대한 階層別 稅負擔 分布에 대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지니係數와 KPS指數 등의 逆進度 指數를 추정한 결과이다. 추정 결과 淸酒, 濁酒, 燒酒, 麥酒, 果實 酒의 경우에는 지니係數와 KPS指數 모두 稅負擔이 逆進的으로 나타났다. 즉 지니係數의 경우에는 이들 제품에 酒稅를 부과함에 따라 값이 소폭 上昇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KPS指數의 경우에는 그 값이

1을 초과함에 따라 酒稅後 所得分配가 酒稅賦課 이전에 비해 惡化되었다는 점, 즉 酒稅負擔 分布가 逆進的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위스키와 기타 주류의 경우에는 주세를 부과함에 따라 지니係數의 값이 下落하였을 뿐더러 KPS指數의 값도 1에 未達하여 이들 제품에 대한 酒稅負擔이 累進的임을 보여주고 있다.

<表 Ⅲ-9> 主要 酒類製品의 酒稅 負擔에 대한 逆進度 指數(1994年)  
(單位:  $\times 10^{-2}$ )

	지니係數	KPS指數
消費稅前	27.2481 —	—
清酒	27.2488 (-0.0006)	113.8136
獨酒	27.2483 (-0.0002)	133.5882
燒酒	27.2506 (-0.0024)	121.6861
麥酒	27.2568 (-0.0086)	115.8538
위스키	27.2477 (0.0005)	91.1574
果實酒	27.2482 (-0.0000)	103.7568
其他酒類	27.2480 (0.0001)	95.3700

註: 1. 지니係數의 경우 ( ) 안은 消費稅前 지니係數로부터 各 酒類製品別 酒稅를 차감한 후의 지니係數를 차감한 것으로 陰數이면 各 消費稅負擔이 逆進的이고 陽數이면 累進的인 것을 나타냄.

2. KPS指數가 1이면 酒稅負擔이 比例的, 1을 초과하면 逆進的, 1보다 적으면 累進的인 것을 나타냄.

資料: 成明宰(1996).

## 6. 日本의 酒稅 課稅現況

최근 日本의 酒稅收入은 약 2조 1천억엔 정도로 日本 國稅收入 전체의 3.7~3.9% 정도를 점유하고 있다. 이러한 수준은 우리나라의 國稅 對比 酒稅收入의 점유비가 3% 정도인 것을 놓고 볼 때 우리나라보다 주세수입 점유비가 다소 높음을 알 수 있다. 日本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주세수입 증가율은 매우 미미하다.

日本의 酒類 消費量(課稅物量 基準)은 1994년 현재 약 96억리터로 이를 국민 1인당 소비량으로 환산하면 약 75리터 정도로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다만 日本의 경우에는 麥酒의 消費比重이 전체의 4분의 3 정도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다. 日本에서는 麥酒 다음으로 淸酒가 가장 많이 消費되는바 약 13% 정도의 占有比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에 燒酒는 消費比重이 약 6% 정도에 불과하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燒酒의 消費比重이 20%를 상회하고 있는 점과 비교할 때 매우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우리나라와 日本의 주류 소비패턴의 차이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日本에서는 우리나라보다 麥酒, 위스키, 淸酒 등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소비하고 있는 반면 燒酒의 경우는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절대적·상대적으로 더 많이 소비하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따라서 이로부터 麥酒는 두 나라에서 모두 大衆酒라고 할 수 있는 반면, 燒酒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大衆酒라고 할 수 있지만 日本에서는 燒酒를 大衆酒로 보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 7. EU 및 OECD 主要國의 酒稅率 體系

EU 국가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酒稅의 課稅體系가 從量稅 構造로 되어 있다. 그러나 멕시코, 터키 등 일부 국가에서는 從價稅 體系로 課稅하는 경우도 있어 다른 EU 국가와 대조를 이루고 있다.

EU 및 OECD 국가의 酒稅率 體系의 특징을 요약하면 麥酒, 스피릿類, 와인 등 대부분의 주류에 대해 알콜度數에 따라 差等稅率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英國, 獨逸, 프랑스 등 대부분의 EU 國家에서는 스피릿類에 대하여 酒稅率이 알콜도수에 완전히 比例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는 점도 특징적이다. 또한 호

주, 포르투갈, 덴마크, 네덜란드에서는 맥주에 대해서도 알콜도수에 따라 주세율을 차등화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EU 및 OECD 국가의 경우에는 우리나라나 일본과 달리 酒種의 구분을 麥酒, 스피릿類, 와인의 세 가지 정도로 單純化하고 있다는 것도 특징적인 사항의 하나이다. 그 밖에 EU 및 OECD 국가에서는 麥酒나 와인보다는 스피릿類에 대해 더 높은 酒稅率을 책정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EU 및 OECD 국가에서는 연간 생산량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소규모 생산자를 대상으로 주세율을 경감시켜 주는 제도를 가지고 있다. 이 제도는 대부분 국내에서 생산되는 주류제조업자에게만 적용되고 수입되는 주류의 경우에는 본래의 주류제조업자가 소규모 생산자라고 하더라도 경감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表 Ⅲ-10> 日本의 酒稅 課稅現況

(單位: 億엔, %, 千리터)

		1994	1995	1996(豫算)
國	稅	540,006	546,629	544,808
酒	稅	21,127	20,609	21,110
占	有 比	3.19	3.75	3.87
酒	種	課稅數量(1994)	酒 種	課稅數量(1994)
清	酒	1,243,124	위스키類: 위스키	126,094
合	成 清 酒	47,956	브랜디	26,071
燒	酒 : 甲 類	329,855	스 피 릿 類	26,658
	乙 類	275,237	리 큐 르	216,290
미	린	91,874	雜 酒	31,267
麥	酒	7,085,713		
果實酒類: 果實酒		63,988		
甘味果實酒		8,273	計	9,572,408

註: 스피릿類는 우리나라의 一般蒸溜酒에 해당됨.

資料: 大藏省(1996).

<表 Ⅲ-11> OECD 主要國의 麥酒 稅率(1996年 1月 1日 現在)

(單位: 自國通貨/美國달러/百리터)

	알콜 1도당 稅率(Plato)	알콜 1도당 稅 率	附 價 價 值 稅 稅 率	低알콜麥酒 稅 率	알콜도수 차등세율	소규모 생산자 세경감
호 주 <sup>1)</sup>		註 참조	—	0	○	×
오스트리아 <sup>2)</sup>	20/1.80		20		×	○
벨 기 에 <sup>3)</sup>	59/1.85		21		×	○
캐 나 다 <sup>4)</sup>		27.985/19.95	7	註 참조	×	×
덴 마 크 <sup>5)</sup>	249.95/41.09		25	0	○	○
핀 란 드 <sup>6)</sup>		170/35.84	22	10/2.11	×	○
프 랑 스		12.50/2.34	20.6	6.25/1.17	×	×
독 일 <sup>7)</sup>	1.54/0.99		15		×	○
그 리 스 <sup>8)</sup>	384/1.60		18		×	×
아이슬란드		5870/89.99	24.5	0	×	×
아 일 랜 드	—	15.65/24.21	21		×	×
이탈리아	2710/1.75		9		×	×
日 本 <sup>9)</sup>		註 참조	3		×	×
룩셈부르크 <sup>10)</sup>	32/1.00		15		×	○
멕 시 코 <sup>11)</sup>		19%	15		×	×
네덜란드 <sup>12)</sup>	3.90/2.25		17.5		○	○
뉴질랜드 <sup>13)</sup>		註 참조	12.5	27.61/18.50	×	×
노르웨이 <sup>14)</sup>		289.3/42.80	23	110/16.27	×	×
포르투갈 <sup>15)</sup>			17	1100/6.91	○	×
스 페 인 <sup>16)</sup>	註 참조		16	0	×	×
스 웨 덴 <sup>17)</sup>		238/31.89	25/12	0	×	×
스 위 스	2.32/1.77		6.5			
터 키 <sup>18)</sup>		15%	15		×	×
英 國 <sup>19)</sup>		10.82/16.91	17.5	0	×	×
美 國 <sup>20)</sup>		註 참조	—		×	○

- 註: 1) 호주 - 완제품 세율은 1리터당 A\$ 15.35/US\$ 11.92임. 酒稅는 알콜도수 1.15% 초과분을 대상으로 하며 그 이하는 비과세함. 도매단계의 판매세의 세율은 22%임. 세율은 6개월 단위로 소비자물가지수에 연동하여 조정함.
- 2) 오스트리아 - 연 생산량 500만리터 이하의 소규모 생산자인 경우에는 OS12/US\$ 1.08~OS18/US\$ 1.62의 세율을 적용함.
- 3) 벨기에 - 연 생산량 2천만리터 이하의 소규모 생산자는 BFR50/US\$ 1.57~BFR58/US\$ 1.82의 세율이 적용됨. 알콜도수 0.5%의 경우에는 1리터당 BFR3의 세율이 적용됨.
- 4) 캐나다 - 100리터당 세율: 알콜도수 2.5% 이상 - CAN\$ 27.985/US\$ 19.95, 1.20~2.5% - CAN\$ 13.99/US\$ 9.97, 1.2% 이하 - CAN\$ 2.591/US\$ 1.85.
- 5) 덴마크 - 100리터 알콜 1도당 세율: 알콜도수 11도(Plato) 이하 - DKR249.95/US\$ 41.09, 알콜도수 11~14도(Plato) - DKR321.80/US\$ 52.90, 알콜도수 14~18도(Plato) - DKR429.00/US\$ 70.52, 알콜도수 18~22도(Plato) - DKR475.00/US\$ 78.09, 알콜도수 22도(Plato) 초과 - DKR25.00/US\$ 4.11. 기타 소규모 생산자에 대한 감면이 있음.
- 6) 핀란드 - 소규모 생산자에 대한 세율은 FMK 153/US\$ 32.25임.
- 7) 獨逸 - 연 생산량 2천만리터 이하의 소규모 생산자에 대한 세율은 DM0.77/US\$ 0.50~DM1.16/US\$ 0.75임.
- 8) 아이슬란드 - 알콜도수 2.25% 초과 알콜 1도당 IKR5,870/US\$ 89.99임.
- 9) 日本 - 100리터당 Y22,200/US\$ 222.58임.
- 10) 룩셈부르크 - 연 생산량 2천만리터 이하의 소규모 생산자에 대한 세율은 LFR16/US\$ 0.50~LFR 18/US\$ 0.57임.
- 11) 멕시코 - 종가세 채택.
- 12) 네덜란드 - 알콜도수 11~15도(Plato)는 1도당 HFL3.90/US\$ 2.25(12도는 HFL46.90/US\$ 27.06), 100리터당 7도 이하(Plato) - HFL20.00/US\$ 11.53, 7~11도(Plato) - HFL35.20/US\$ 20.29, 11~15도(Plato) - HFL46.90/US\$ 27.03, 15도 이상(Plato) - HFL58.65/US\$ 33.80. 연 생산량 2천만리터 이하의 소규모 생산자는 7도 이하(Plato) - HFL20.00/US\$ 11.53, 7~11도(Plato) - HFL32.56/US\$ 18.76, 11~15도(Plato) - HFL43.38/US\$ 25.00, 15도 이상(Plato) - HFL54.25/US\$ 31.26임. 알콜도수 0.5% 이하 맥주에 대한 부가세율은 6%임.
- 13) 뉴질랜드 - 알콜도수 2.5% 이상의 경우 세율은 알콜 1도, 1리터당 NZ\$ 18.408/US\$ 12.33임. 알콜도수 1.15~2.5%의 경우에는 100리터당 NZ\$ 27.63/US\$ 18.50임. 알콜도수 1.15% 이하의 경우에는 비과세함.

- 14) 노르웨이 - 100리터당 세율은 알콜도수 0.00~0.70% - NOK110.00/US\$ 16.24, 0.70~2.75% - NOK200.00/US\$ 29.47, 2.75~3.75% - NOK751.00/US\$ 111.05, 3.75~4.75% - NOK1,302/US\$ 192.54, 4.75~5.75% - NOK1,852.00/US\$ 273.88, 5.75~6.75% - NOK2,403.00/US\$ 355.37, 6.76~7.00% - NOK2,513.00/US\$ 371.64임. 알콜도수 7% 이상은 판매금지.
- 15) 포르투갈 - 알콜도수 2.8% 이상 맥주의 세율: 2.8~8도(Plato) - ESC1,380/US\$ 8.67, 8~11도(Plato) - ESC2,200/US\$ 13.83, 11~13도(Plato) - ESC2,760/US\$ 17.35, 13~15도(Plato) - ESC3,310/US\$ 20.80, 15도 이상(Plato) - ESC3,860/US\$ 24.26임.
- 16) 스페인 - 알콜도수 1.2% 이하 - 비과세, 알콜도수 1.2~2.8% - 100리터당 PTA376 /US\$ 2.88, 2.8% 이상 알콜도수(Plato) 11도 이하 - 100리터당 865 pts, 알콜도수 11~15도(Plato) - 100리터당 1853pts, 알콜도수 19도(Plato) 이상 - 100리터, 알콜도수 1도(Plato)당 124 pts임.
- 17) 스웨덴 - 상기의 세율은 알콜도수 3.5% 이상에 대한 것임. 알콜도수 2.25~3.5% - 100리터당 SEK121.00/US\$ 16.21임. 알콜도수 3.5% 이상 맥주에 대한 부가가치세율은 12%임.
- 18) 터키 - 증가세 채택.
- 19) 英國 - 알콜도수 1.2% 이하는 비과세함.
- 20) 美國 - 1배럴(31갤런)당 연방주세는 US\$ 18.00임. 1갤런 = 3.785리터. 연 200만 배럴 이하의 소규모 생산자는 첫 6만배럴까지 US\$ 7.00임. 알콜도수 차이에 따른 세율 격차는 없음.

資料 : OECD, *Consumption Tax Trends*, second edition, 1997.

&lt;表 III-12&gt; OECD 主要國의 와인 稅率(1996年 1月 1日 現在)

(單位: 自國通貨/美國달러/百리터)

	스틸 와인		스파클링 와인		스틸와인(8.5%이하)	
	酒 稅	附價稅	酒 稅	附價稅	酒 稅	附價稅
호 주 <sup>1)</sup>	0	註참조	0	註참조	0	註참조
오스트리아	0	20	2000/180.18	20	1000/90.09	20
벨 기 에	1471/46.20	21	5149/161.71	21	0	20.5
캐 나 다 <sup>2)</sup>	51.22/36.51	7	51.22/36.51	7	24.59/17.53	7
덴 마 크 <sup>3)</sup>	655/107.68	25	985/161.93	25	420/69.04	25
핀 란 드 <sup>4)</sup>	1700/358.42	22	1700/358.42	22	註참조	22
프 랑 스	22/4.12	20.6	54.8/10.25	20.6		
독 일	0	15	266/171.72	15		
그 리 스	0	18	0	18		
아이슬란드 <sup>5)</sup>	57232.50/877.40	24.5	57232.50/877.40	24.5	註참조	24.5
아일랜드 <sup>6)</sup>	215.01/332.63	21	430.02/665.25	21	71.66/110.86	21
이탈리아	0	9	0	9		
日 本	5650/56.65	3	5650/56.65	3		
룩셈부르크	0	12/15	0	12/15		
멕시코 <sup>7)</sup>	21.5%	15	30%	15	21.5%	15
네덜란드 <sup>8)</sup>	107.50/61.96	17.5	366.50/211.24	17.5	53.75/30.98	17.5
뉴질랜드 <sup>9)</sup>	註참조	12.5	註참조	12.5	註참조	12.5
노르웨이 <sup>10)</sup>	3828/566.10	23	3628/566.10	23	註참조	23
포르투갈	0	5	0	5		
스 페 인	0	16	0	16		
스웨덴 <sup>11)</sup>	2681/359.29	25	2681/359.29	25	註참조	25
스위스	0	6.5	0	6.5	0	6.5
터 키 <sup>12)</sup>	15%	15	100%	15	15%	15
英 國	140.44/219.44	17.5	220.64/312.50	17.5		
美 國 <sup>13)</sup>	28.27	0	89.82	0	28.27	0

- 註: 1) 호주 - Commonwealth 지역의 판매세율: 26%(알콜도수 1.15% 이하는 12%).
- 2) 캐나다 - 알콜도수 1.2% 이하의 스틸 및 스파클링 와인의 세율은 CAN\$ 2.05/US\$ 1.46임.
- 3) 덴마크 - 저알콜스파클링 와인의 세율은 DKR 750/US\$ 123.29임.
- 4) 핀란드 - 알콜도수 > 5.5% - £ 8.0% vol. FMK 1 300/US\$ 274.09, > 2.8% - £ 5.5% vol. FMK 800/US\$ 168.67. c) > 1.2% - £ 2.8% vol. FMK 27/US\$ 5.69.
- 5) 아이슬란드 - 상기의 세율은 알콜도수 12% 기준임. 알콜도수 2.25% 초과 1도당 세율(100리터)은 IKR 5,870/US\$ 89.99임.
- 6) 아일랜드 - 알콜도수 5.5% 기준 세율임.
- 7) 멕시코 - 와인은 Guy Lussac grades에 따라 구분함. 스틸와인은 13.5° 이상, 스파클링 와인은 13.5°~20°. 저알콜 와인은 스틸와인으로 분류됨.
- 8) 네덜란드 - 저알콜 스파클링 와인의 세율은 HFL 69,50/US\$ 40.06임. 알콜도수 1.2% 이하에 대한 부가가치세율은 6%임.
- 9) 뉴질랜드 - 포도주의 세율은 100리터당 알콜도수 0~14%의 경우 \$NS 184, 14% 이상은 \$NZ 331.36/\$US 222.01임.
- 10) 노르웨이 - 상기의 세율은 알콜도수 12% 기준 세율임. 알콜도수 7~15%의 경우 알콜 100리터, 1도당 NOK 319/US\$ 47.17, 15~22% 의 경우에는 NOK 607/US\$ 89.76. 알콜도수 7%의 경우에는 맥주와 동일하게 과세함.
- 11) 스웨덴 - 알콜도수 7~8.5% - SKR 1 830/US\$ 251.00, 4.5~7% - SKR 1,361/US\$ 182.39. c) 2.25% - 4.5% vol. SKR 921/US\$ 123.42.
- 12) 터키 - 종가세.
- 13) 美國 - 상기의 세율은 알콜도수 14% 이하에 대한 것임. 1갤런당 세율은 알콜도수 14% 이하 - US\$ 1.07, 14~21% - US\$ 1.57, 21~24% - US\$ 3.15, 인공탄산함유와인 - US\$ 3.30, 스파클링 와인 - US\$ 3.40, 26.42 갤런 = 100리터. 소규모 생산자는 연간 10만 갤런까지 1갤런당 \$ 0.90 세액공제 허용해줌. 연간 생산량 12~25만갤런 생산자의 경우 세액공제가 축소됨.

資料: OECD, *Consumption Tax Trends*, second edition, 1997.

<表 Ⅲ-13> OECD 主要國의 스피릿類 稅率(1996年 1月 1日 現在)

(單位: 자국통화, 美달러/純粹알콜100리터, %)

	酒 稅 率	附加價値稅率	小規模 生産者 稅輕減
호 주 <sup>1)</sup>	3573/2776.22	註 참조	×
오스트리아 <sup>2)</sup>	10000/900.90	20	○
벨 기 에	63500/1994.35	21	×
캐 나 다	1106.60/788.74	7	×
덴 마 크 <sup>3)</sup>	29000/4767.38	25	×
핀 란 드 <sup>4)</sup>	30000/6325.11	22	×
프 랑 스	9060/1694.73	20.6	×
독 일 <sup>5)</sup>	2550/1646.22	15	○
그 리 스 <sup>6)</sup>	235579/981.17	18	×
아이슬란드 <sup>7)</sup>	573792.50/9896.45	24.5	×
아일랜드	2183/3377.17	21	×
이탈리아 <sup>8)</sup>	1249600/809.65	19	×
日 本 <sup>9)</sup>	註 참조	3	×
룩셈부르크	42000/1319.10	15	×
멕시코 <sup>10)</sup>	44.5%	15	×
네덜란드 <sup>11)</sup>	3315/1910.66	17.5	×
뉴질랜드	3352.60/2246.24	12.5	×
노르웨이	61500/9094.94	23	×
포르투갈 <sup>12)</sup>	140000/899.95	17	○
스페인 <sup>13)</sup>	90780/689.29	16	○
스웨덴 <sup>17)</sup>	48504/6500.13	25	×
스위스 <sup>14)</sup>	3400/2593.44	6.5	
터키 <sup>15)</sup>	100%	15	×
英 國	2060/3218.75	17.5	×
美 國 <sup>16)</sup>	713.29	-	×

- 註: 1) 호주: 브랜드의 세율은 A\$ 3,056/US\$ 2,370.63임. Commonwealth 주의 도매단계 판매세는 22%임. 주별로 판매세의 세율이 다름.
- 2) 오스트리아: 소규모 생산자의 경우 OS 5,400/US\$ 486.49임.
- 3) 덴마크: 주세율은 DKR 14,300/US\$ 2,350.81 + 부가가치세전 생산자 가격의 37.5%임. 表에 나타난 세율은 평균적 제품을 기준으로 한 세율임.
- 4) 핀란드: 주세율은 CN-코드 2208의 경우 알콜도수 1.2% 이상 - £2.8% FMK 1,000/US\$ 210.84임. CN-코드 2208의 경우 알콜도수 2.8% 이상 - £10.0% FMK 26,500/US\$ 5,587.18임. 기타 제품은 FMK 30,000/US\$ 6,325.11임.
- 5) 獨逸: 소규모 생산자에 대한 세율은 DM2,000/US\$ 1,291.16~2,175/US\$ 1,404.13임.
- 6) 그리스: Ouzo의 세율은 DRA 117,790/US\$ 489.12임.
- 7) 아이슬란드: 주세율은 알콜도수 2.25% 초과 1%당 IKR 5,870/US\$ 89.99임.
- 8) 이탈리아: 1996년 6월 30일까지 와인, 감자, 과일, 곡물 등을 증류하여 제조한 스피릿류의 경우에는 경감세율을 적용함.
- 9) 日本: 주세율은 위스키, 브랜드(알콜도수 40%)가 98,230엔/US\$ 984.86, 스피릿류(알콜도수 37%)가 36,730/US\$ 368.26.엔, 소주 갑류(알콜도수 35%)가 33,455엔/US\$ 335.42, 소주 갑류(알콜도수 25%)가 15,570엔/US\$ 156.11. 소주 을류(알콜도수 35%)가 20,955엔/US\$ 210.10, 소주 을류(알콜도수 25%)가 10,210엔/US\$ 102.37임.
- 10) 멕시코: 스피릿류는 20°~ 55°임.
- 11) 네덜란드: 알콜도수 1.2% 이하의 저알콜 스피릿류의 경우 부가가치세율은 6%임.
- 12) 포르투갈: 1995년 2월 14일부터 소규모 생산자에 대해 경감세율이 적용됨.
- 13) 스페인: 소규모 생산자에 대한 세율은 PTA 79,426/US\$ 603.08임.
- 14) 스위스: 가중평균세율임.
- 15) 터키: 종가세.
- 16) 미국: 1 프루프(proof) 갤런당 US\$ 13.50임. 1프루프갤런 = 알콜도수 50% 3,785리터.

## IV. 酒類의 需要分析

本章에서는 麥酒, 燒酒, 위스키의 세 가지 酒種에 대한 需要를 分析해 본다.

### 1. 資料와 需要分析模型

#### 가. 分析資料

본장에서는 麥酒, 燒酒, 위스키의 세 가지 酒類 製品에 대한 出庫價格과 出庫量을 바탕으로 需要의 價格彈力性과 交叉價格彈力性, 所得彈力性을 推定하였다. 수요분석에서는 연간 자료를 이용하여 短期需要를 추정하였으며, 또한 3년 移動平均法을 이용하여 長期需要도 추정하였다<sup>1)</sup>.

수요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1970~1996년까지 27년 동안의 연도별·주류별 출고현황이다. 다만 위스키의 경우에는 1970년대 초반에 수입품을 중심으로 소량 소비되었으나 본격적인 소비는 1977년부터 이루어졌으며 또한 價格에 대한 資料도 1977년부터 이용가능하였기 때문에 1977~1996까지 20년 동안의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소비자가격에 대한 통계자료는 통일된 것이 없어 稅前 出庫價格을 바탕으로 酒稅와 防衛稅, 教育稅, 附加價值稅를 포함하여 稅後 出庫價格을 추정하고 여기에 유통마진을 40% 정도로 설정하여 추정하였다. 분석의 정확도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제고하기 위해서는 표본의 수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만 자료의 제약상 그

---

1)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는 成明宰(1997)를 참조하기 바란다.

수가 20~27 정도로서 작은 편이기 때문에 수요분석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전반적인 수요변화 추세를 파악하는 데 만족하도록 하며, 이로부터 도출되는 결론에 대해서는 확정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에 유의하기 바란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본장에서는 麥酒, 燒酒, 위스키의 세 가지 酒類를 대상으로 분석한다. 이와 같이 세 가지 주종을 선택한 이유는 <表 III-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들 酒種의 消費比重이 전체 酒類消費量의 약 90% 정도로써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술’이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연상되는 주종이기 때문이다.

분석 기간 동안의 稅制의 變化推移를 稅率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表 III-1>에서 보듯이 麥酒에 대한 酒稅率은 1970~1971년 기간에는 100%, 1972~1973년 기간에는 120%, 1974년 이후에는 150%<sup>2)</sup>이며, 燒酒는 1970~1971년 기간에 30%, 1972년부터는 35%로 인상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위스키는 1970~1971년 기간에는 150%, 1973년까지는 160%, 1974년에는 250%, 그리고 1975년부터는 200%였으나 1991년 7월 1일부터는 150%로 인하되었다. 이후 위스키에 대한 세율은 1990년대 초에 개최되었던 韓·EU(韓 EC) 酒稅協議에 따라 1994년에는 120%, 1996년에는 100%로 인하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1991년 1월 1일에 폐지된 防衛稅는 도입 초에 주세율이 100% 미만 주류에 대해서는 주세액의 10%, 100% 이상 주류에 대해서는 주세액의 20%만큼이 부과되었다. 1980년 1월 1일부터 과세되기 시작한 教育稅는 酒稅率 80%를 기준으로 세율이 각각 10%와 30%로 조정되었다. 教育稅는 防衛稅가 廢止된 1990년까지는 麥酒와 위스키 등에 대하여 酒稅額의 10%, 그 이후에는 酒稅額의 30%가 부과되고 있으며 燒酒와 濁酒 등에 대해서는 非課稅되고 있다.

2) 1997년부터는 酒稅率이 130%로 引下되었다.

다만 燒酒의 경우에는 韓·EC 酒稅協議의 결과에 따라 1995년부터 세율 10%의 교육세가 과세되고 있다. 그리고 酒稅와 防衛稅, 教育稅 이외의 주류에 대한 소비세로는 附加價値稅가 일부의 면세제품을 제외한 모든 酒類 製品에 대해 세율 10%로 과세되고 있다.

#### 나. 需要分析模型

需要函數를 分析함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自然對數線形模型을 채택하였다. 이 모형은 설명변수의 계수가 탄력성의 개념을 가진다는 점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다. 설명변수에 대한 계수 추정치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함에 있어서는 일차적으로 사전검정법(pretest method)을 이용하였다. 또한 본장에서는 수요구조의 변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수요의 구조변화를 포착하기 위해 일정 기간에 대해 더미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더미를 채택함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水準더미(level dummy)와 기울기더미(slope dummy)의 두 가지를 사용하였다. 두 가지 종류의 더미를 선택하는 이유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대체로 前者는 기초수요 부분에 대한 수요 구조의 변화요인을 포착하기 위한 경우에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後者는 해당 설명변수와 관련하여 특정 기간 동안에 수요의 탄력성이 변화하였는지의 여부를 포착하고자 할 때 많이 사용된다.

사전적으로 더미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연구자의 자의적 판단이 많이 가미되기 때문에 더미 선정의 객관성이 보장되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것을 사후적인 검정을 통해 보정함으로써 수요함수의 구조변화를 포착하고자 ‘차우’-검정방법(Chow-test)을 채택하여 분석하였다.

## 2. 需要分析의 推定結果

### 가. 麥酒

麥酒에 대한 需要函數의 설명변수로는 구조변화를 포착하기 위해 더미를 선택하였고, 價格效果를 포착하기 위해서는 麥酒와 燒酒, 위스키의 價格을 선택하였으며 所得效果를 포착하기 위해서는 國民總生産을 선택하였다. 다만 시간추세의 경우에는 분석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제외하였다. 다만 설명변수 가운데 위스키 價格의 경우에는 전술한 바와 같이 1977년부터의 가격만이 이용가능하였기 때문에 위스키 가격을 설명변수로 채택함에 있어서는 1977년부터의 자료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麥酒의 短期需要에 대한 分析結果는 다음과 같다.

먼저 1977년부터의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보면 BEER-4의 경우에 1989년 이후의 기간에 대한 水準더미의 추정치가 陽의 값을 가지면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 반면, 그 외의 기간에 대해 水準더미를 설정한 BEER-2의 경우에는 계수 추정치의 통계적 유의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BEER-4의 경우를 볼 때 1989년 이후의 기간 동안 麥酒의 基礎需要가 다소 增加한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것은 차우-검정 결과에서도 일치되는 결과를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는바 F-통계치가 5.999로 유의수준 5%에서 1989년 이후의 기간에 대한 더미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한다.

麥酒 價格에 대한 추정결과를 보면 1989년 이후의 기간에 대한 水準더미를 설정한 BEER-4의 경우에는 계수가  $-0.928$ 로 추정되었으며  $t$ -값도 상당히 크게 나타나 추정결과와 통계적 유의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반면에 1989년 이후의 기간에 대한 水準더미를 설정하지 않은 BEER-2와 BEER-3의 경우에는 그보다 큰 값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되어 BEER-4와 상당히 다른 추

정결과를 나타냈다. 이와 같은 차이는 麥酒 需要의 構造變化를 나타내는 1989년 이후의 기간에 대한 水準더미가 제대로 설정되지 않음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인 것으로 판단된다.

燒酒 價格에 대한 추정결과를 보면 BEER-4의 경우 약 0.6 정도이고  $t$ -값도 상당히 높게 추정되었다. 이로부터 麥酒와 燒酒間에 消費의 代替關係가 성립됨을 유추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麥酒 價格의 경우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9년 이후의 기간에 대한 水準더미의 설정여부에 따라 燒酒 價格에 대한 係數 推定值의 값이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을 볼 수 있다.

반면에 다음의 '다'項에서 분석한 위스키에 대한 수요분석 결과를 보면 계수 추정치의 절대값이 상당히 작을 뿐만 아니라  $t$ -값도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 위스키 가격의 변동이 맥주수요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

麥酒 需要에 대한 所得彈力性, 즉 國民總生産에 대한 係數 推定值는 대체로 0.6~0.9 정도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그 가운데 1989년 이후의 기간에 대한 水準더미를 설명변수로 채택하고 있는 BEER-4의 경우에는 0.861로 추정되었고 통계적으로도 유의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1977~1996년의 자료를 이용하여 맥주에 대한 수요를 회귀해 본 결과, 麥酒에 대한 需要는 麥酒 價格에 대해서는 逆의 關係를 가지고 있고, 燒酒 價格에 대해서는 正의 關係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위스키 價格에 대해서는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所得에 대해서는 약 0.9에 가까운 수치를 보여 單位彈力的인 모습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麥酒에 대한 需要는 1980년대 말에 構造的인 變化를 거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분석결과는 분석자료의 수가 20개라는 매우 제한적인 정보하에서 추정된 결과이기 때문에 추정치의 신뢰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단점, 즉 自由度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短點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977년부터의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로부터 위스키 가격에 대한 추정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는 결과만을 받아들일도록 하고 이를 토대로 자료의 기간을 1970년으로 확대하여 다시 분석하였는바 그 결과는 BEER-1에서 보는 바와 같다.

BEER-1에 따르면 1989년 이후의 기간에 대한 麥酒의 需要는 基礎需要 부분뿐만 아니라 所得彈力性 부분까지 構造的인 變化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89년 이후의 기간에 대한 水準더미 및 기울기더미에 대한 계수 추정치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 것에서 알 수 있다. 이는 1977년부터의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경우(예: BEER-4)와 다소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인데 이는 분석상의 오류라기보다는 정보의 양, 즉 自由度의 差異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다시 말해 1977년부터의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自由度가 낮기 때문에 기울기더미의 추가에 따른 自由度 減少의 영향이 매우 크게 작용하여 추정결과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난 반면 1970년부터의 자료를 이용한 경우에는 그러한 문제가 상대적으로 덜하기 때문에 1989년 이후 기간에 대한 소득탄력성이 변화한 것으로 통계적으로 포착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추정결과를 볼 때 1989년 이후의 기간 동안에는 麥酒에 대한 基礎需要가 다소 增加한 반면 所得彈力性은 크게 下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麥酒 價格에 대한 추정치는 陰의 값을 가지면서 절대값이 약 1.31 정도로 추정되었는바 麥酒의 自己價格彈力性은 1.31 정도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燒酒 價格에 대해서는 추정치가 약 1.34 정도인 것으로 나타나 燒酒 價格의 變動이 麥酒 需要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국민총생산에 대한 계수, 즉 麥酒 需要에 대한 所得彈力性은 1.21

&lt;表 IV-1&gt; 麥酒에 대한 回歸分析 結果(短期)

資料期間	1970~1996		1977~1996	
	BEER-1	BEER-2	BEER-3	BEER-4
模 型				
常 數	-3.159 (-1.134)	5.276 (1.386)	7.151 (2.599)	6.926 (6.401)
$d_{79-82}$	-	0.090 (0.712)	-	-
$d_{89}$	14.933 (2.497)	-	-	0.127 (3.046)
$d_{91-3}$	-	-0.160 (-1.534)	-	-
$d_{94}$	-	-0.173 (-1.391)	-	-
麥酒 價格	-1.309 (-3.146)	-2.374 (-3.240)	-2.257 (-3.766)	-0.928 (-4.126)
燒酒 價格	1.342 (4.358)	1.753 (3.004)	1.818 (5.001)	0.595 (3.489)
위스키 價格	-	0.323 (1.088)	0.289 (1.388)	-0.021 (-0.268)
$GNP_t$	1.210 (4.801)	0.887 (3.514)	0.612 (4.310)	0.861 (10.424)
$GNP_t \times d_{89}$	-1.044 (-2.501)	-	-	-
$R^2$	0.990 <0.987>	0.977 <0.963>	0.970 <0.963>	0.999 <0.999>
D.W.	1.547	1.787	1.546	1.984
推定方法	C-O	OLS	OLS	C-O
MMSE	2.671	0.715	0.944	8.049
LAD	12.937	6.721	7.995	11.129
構造 變化	4.475	1.125	14.186	5.999
檢定 F-값	[3.49, 5.85]	[3.49, 5.95]	[4.54, 8.68]	[4.67, 9.07]

註 : 1.  $d_{79-82}$ ,  $d_{89}$ ,  $d_{91-3}$ ,  $d_{94}$ 는 각각 1979~1982년 기간, 1989년부터의 기간,

1991~1993년 기간, 1994년부터만 1의 값을 가지고 나머지는 0임.

2. ( ) 안과 < > 안은 t-값과 自由度가 調整된  $R^2$ 값임.

3. [ ] 안은 需要 構造變化 檢定の 5% 및 1%의 臨界值임.

정도로 추정되었는바 麥酒에 대한 需要가 所得에 대해 매우 彈力的임을 시사해 주고 있다. 그러나 1989년 이후의 기간을 대상으로 한 국민총생산에 대한 기술기더미의 계수가  $-1.044$ 로 추정되고 있어 1989년 이후부터는 맥주 수요가 구조적으로 변화하였는바 所得彈力성이 약  $0.166(=1.210-1.044)$  정도로 크게 下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맥주가 전통적으로 소주 등에 비해 고급주로서 중고소득층에서 많이 소비되던 주류제품이지만 지속적인 所得水準의 向上 및 消費패턴의 高度化 趨勢에 따라 최근 消費의 底邊이 급속히 擴散되면서 1980년대 말부터는 所得彈力성이 크게 下落하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은 麥酒에 대한 長期需要의 分析結果를 살펴보자.

먼저 1977년부터의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보면, 장기수요를 분석한 경우에도 단기수요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스키의 價格이 麥酒 需要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977년부터의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한 추정식 가운데 BEERL-6을 보면 위스키 가격에 대한 계수가  $0.043$ 으로 零에 가까울 뿐만 아니라 통계적으로도  $t$ -값이  $0.173$ 에 불과하여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맥주 소비에 대해 위스키가 代替 또는 補完關係가 없다고 할 수 있다.

麥酒 價格의 경우에는 係數가  $-0.93 \sim -1.03$  정도인 것으로 나타나 長期需要 측면에서 麥酒의 自己價格彈力성은 대체로 單位彈力的인 모습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燒酒 價格에 대한 長期 交叉價格彈力성은 대체로  $1.1$  내외인 것으로 추정되었는바 맥주에 대한 수요가 燒酒 價格의 變動에 따라 다소 敏感하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麥酒 需要에 대한 長期所得彈力성은 대체로  $0.5$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최근에는 所得彈力성 측면에서 麥酒 需要에 대한 構造變化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1989년 또는 1991년부터의 기간에

대한 기울기더미의 계수 추정치가  $-0.3$  내외 값을 가지면서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최근에는 麥酒에 대한 長期所得彈力性( $GNP_t$ 의 계수와  $GNP_t \times d_{99}$  또는  $GNP_t \times d_{91}$ 의 계수의 합)이  $0.2$  내외로 축소되었는바 麥酒의 消費가 所得에 대해 매우 非彈力的인 모습으로 바뀐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소비자들의 소득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됨에 따라 麥酒의 消費가 大衆化되어 사실상 消費가 飽和狀態에 도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長期需要에 있어서도 時間趨勢의 통계적 유의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이러한 모습은 1970년부터의 자료를 분석한 경우에도 대체로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다만 BEERL-3의 경우에는 시간추세에 대한 계수 추정치의  $t$ -값이 다소 크게 나타났다. 그러나 BEERL-3에서는 수요구조의 변화를 포착하기 위한 더미가 통계적으로 상당히 유의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설명변수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추측된다.

1977년부터의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에서 위스키 가격의 변동이 맥주 수요에 미치는 영향이 별로 없다는 점을 받아들여 1970년부터의 자료를 분석한 모형에서는 위스키 가격을 고려하지 않고 수요함수를 분석하였다.

먼저 麥酒 價格에 대한 추정결과를 보면 1989년부터의 기간에 대한 더미를 고려하지 않아 추정결과의 신뢰성이 별로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BEERL-3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1.5$  내외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바, 1977년부터의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경우에 비해 계수 추정치의 절대값이 다소 커진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모습은 燒酒 價格의 係數에 대한 推定値의 경우에도 유사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는 아마도 1977년부터의 자료를 사용한 경우 자료의 수가 적을 뿐만 아니라 자료를 3년 移動平均함에 따라 自由度가 2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推定式에서의 自由度가 11 정도로 상

<表 IV-2> 麥酒에 대한 回歸分析 結果(長期; 3年 移動平均)

資料期間 模 型	1970~1996			1977~1996		
	BEERL-1	BEERL-2	BEERL-3	BEERL-4	BEERL-5	BEERL-6
常 數	0.500 (0.192)	251.818 (-1.855)	359.107 (2.542)	3.966 (3.012)	3.899 (3.185)	4.330 (1.542)
時間趨勢	-	-0.139 (-1.857)	-0.198 (-2.538)	-	-	-
$d_{89}$	10.973 (2.807)	8.763 (2.138)	-	3.940 (2.213)	0.126 (3.453)	0.129 (3.098)
$d_{91}$	-	-	-	0.075 (1.552)	4.523 (2.650)	3.881 (0.940)
麥酒 價格	-1.672 (-3.295)	-1.403 (-2.886)	-1.016 (-2.060)	-0.927 (-2.579)	-0.926 (-2.794)	-1.034 (-1.438)
燒酒 價格	1.932 (5.410)	2.077 (5.854)	2.003 (5.166)	1.157 (4.181)	1.161 (4.552)	1.186 (3.903)
위스키 價格	-	-	-	-	-	0.043 (0.173)
$GNP_t$	0.739 (3.270)	2.118 (2.798)	2.510 (3.095)	0.493 (5.650)	0.492 (6.088)	0.495 (5.745)
$GNP_t \times d_{89}$	-0.769 (-2.784)	-0.614 (-2.128)	-	-0.267 (-2.131)	-	-
$GNP_t \times d_{91}$	-	-	-	-	-0.311 (-2.636)	-0.267 (-0.941)
$R^2$	0.997 <0.997>	0.997 <0.996>	0.996 <0.996>	0.997 <0.995>	0.997 <0.996>	0.997 <0.995>
D.W	1.517	1.601	1.626	2.197	2.128	2.141
推定方法	C-O	C-O	C-O	OLS	OLS	OLS
MMSE	1,821	2,619	2,742	0.064	0.056	0.056
LAD	8.917	9.777	10.671	2.110	1.939	1.955
構造 變化	3.933	3.453	-	6.794	8.413	5.454
檢定 F-값	[3.55, 6.01]	[3.59, 6.11]	-	[3.59, 6.22]	[3.59, 6.22]	[3.71, 6.55]

註 : 1.  $d_{89}$ 와  $d_{91}$ 은 각각 1989년과 1991년부터의 기간만 1의 값을 가지고 나머지는 0임.

2. ( ) 안과 < > 안은 t-값과 自由度가 調整된  $R^2$ 값임.

3. [ ] 안은 需要 構造變化 檢定の 5% 및 1%의 臨界值임.

당히 작기 때문에 推定値의 分散이 커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推定値의 信賴性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반면 1970년부터의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경우에는 그러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축소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1977년부터의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는 것은 위스키의 가격변동이 맥주의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기 위한 것이 목적이므로 이로부터 맥주 수요 전반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곤란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장기수요뿐만 아니라 단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높은 더미를 설명변수에 포함하는 대신 유의성이 낮은 시간추세를 설명변수에서 제외한 BEERL-1의 경우를 보면 長期所得彈力性은 0.739 정도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다만 1980년대 말부터 麥酒에 대한 需要構造의 變化가 발생하였는바 이를 감안할 경우 麥酒의 長期所得彈力性은 절대값이 0.03 정도로 거의 零에 가까울 뿐만 아니라 부호가 陰이기 때문에 오히려 소득이 증가할 경우 맥주에 대한 장기수요는 미미하나마 약간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비록 단기의 경우에는 최근의 소득탄력성이 陽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장기의 경우와 부호가 서로 다르기는 하지만 탄력성의 절대값이 매우 낮다는 점은 단기의 경우와도 매우 비슷하다. 이와 같이 최근의 所得彈力性이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최근 麥酒의 消費增加 趨勢가 停滯狀態에 있는 점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 나. 燒酒

燒酒에 대한 需要函數의 설명변수로는 수요구조의 변화를 포착하기 위해 더미, 가격효과를 포착하기 위해 麥酒, 燒酒, 위스키의 價格 그리고 소득효과를 포착하기 위해 國民總生産을 선택하였다. 시간추세의 경우에는 분석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설명변수에서 제외하였다. 위스키 價格의 경우에는 맥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1977년부터의 가격만이 이용가능하기 때문에 위스키 가격을 설명변수로 채택함에 있어서는 1977년부터의 자료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燒酒에 대한 短期需要의 分析結果는 다음과 같다.

위스키와 소주간의 대체 또는 보완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위스키의 가격을 설명변수로 채택한 경우 모두 위스키 가격에 대한 係數推定値의  $t$ -값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 위스키 가격의 변동이 燒酒의 需要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977년부터의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경우를 보면 1980년대 말부터 所得彈力性을 중심으로 燒酒의 需要構造가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SOJU-3, SOJU-5, SOJU-6 등에서 보듯이 1989년부터의 기간을 대상으로 한 水準더미 및 기울기더미의 계수 추정치의  $t$ -값(절대값)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부터 알 수 있다.

燒酒의 (短期)自己價格彈力性은 약 0.25~0.28 정도인 것으로 추정되었는바 燒酒의 需要가 價格에 대해 상당히 非彈力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燒酒가 大衆酒로서 消費의 底邊이 매우 넓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당연한 결과인 것으로 해석된다. 麥酒價格에 대한 交叉價格彈力性은 약 0.6~0.7 정도인 것으로 추정되었는바 燒酒의 自己價格彈力性 推定値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麥酒價格이 變化할 경우 燒酒의 需要가 상대적으로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燒酒 需要의 短期所得彈力性은 약 0.3 내외인 것으로 나타나 燒酒의 消費가 所得에 대해 상당히 非彈力的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일반인들의 음주생활패턴을 볼 때 소주가 애주가를 포함하여 一般消費者들에 의해 상당히 普遍的으로 消費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해 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상과 같이 1977년부터의 자료를 이용하여 소주 수요를 분석한

결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은 위스키와 燒酒間의 消費代替 關係가 없다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는 자료의 수가 상당히 적은 반면에 설명변수의 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추정결과의 통계적 신뢰성이 다소 의문시될 수 있다. 따라서 위스키 가격의 변동이 소주 수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 이외의 것에 대해서는 소주 수요에 대한 개괄적인 분석이라는 점에 만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따라서 보다 통계적인 신뢰성이 높은 결과는 1970년부터의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1970년부터의 자료를 이용하여 燒酒에 대한 短期需要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燒酒의 自己價格彈力性은 약 0.35 정도로 나타나 1977년부터의 자료를 이용한 경우보다 다소 높게 추정되었다. 麥酒에 대한 交叉價格彈力性 推定值도 약 0.75 내외인 것으로 나타나 앞의 경우보다 다소 큰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료의 분석기간이 1970년까지 확대됨에 따라 1977년 이전의 燒酒 需要와 價格間의 關係를 包括的으로 分析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燒酒에 대한 短期所得彈力性의 경우에는 약 1.3 정도로 상당히 크게 나타났지만 1970년대 중반 및 1980년대 말 이후를 대상으로 선정한 더미에 대한 계수 추정치가 陰의 값을 가지면서 통계적으로 상당히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요인을 감안할 때 1970년대의 所得彈力性은 약 1.3 정도, 1980년대의 所得彈力性은 약 0.3 정도, 1990년대의 所得彈力性은 약 0.03 정도인 것으로 추정된다<sup>3)</sup>. 이

3) 1970년대의 所得彈力性은  $GNP_t$ 의 係數를 말하고, 1980년대의 所得彈力性은  $GNP_t$ 와  $GNP_t \times d_{78}$ 의 係數의 畵을 말하며, 1990년대의 所得彈力性은  $GNP_t$ 와  $GNP_t \times d_{78}$  및  $GNP_t \times d_{89}$ (또는  $GNP_t \times d_{91}$ )의 係數의 畵을 말한다.

러한 것을 볼 때 1970년대에는 燒酒의 短期所得彈力性이 1을 超過하였는바 燒酒의 消費가 所得에 대해 매우 彈力的으로 增加하였으나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부터 燒酒의 消費가 所得에 대해 非彈力的인 모습으로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부터는 所得이 增加하더라도 燒酒의 消費 增加趨勢는 상당히 미미하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趨勢의 變化는 所得水準의 向上에 따라 酒類의 消費패턴이 전반적으로 高級化되면서 燒酒의 消費 增加趨勢가 鈍化되는 현상을 반영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燒酒에 대한 長期需要의 分析結果를 살펴보자.

위스키 價格의 變動이 燒酒 需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1977년부터의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보면 短期需要의 경우에서 보는 바와 마찬가지로 위스키 價格에 대한 係數 推定值의  $t$ -값이 상당히 낮아 위스키 價格의 變動에 따른 燒酒 消費의 代替 또는 補完關係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燒酒의 (長期)自己價格彈力性은 약 0.23~0.26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麥酒 價格에 대한 (長期)交叉價格彈力性은 약 0.64 내외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燒酒의 長期所得彈力性은 약 0.3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만 1980년대 말에는 所得彈力性이 減少하는 방향으로 需要構造의 變化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바 이에 따라 1990년대에는 燒酒의 長期所得彈力性이 약 0.05~0.07 정도로 낮아진 것을 볼 수 있다.

1970년부터의 자료를 이용하여 燒酒에 대한 長期需要를 분석한 경우도 1977년부터의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와 대체로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먼저 燒酒 價格에 대한 自己價格彈力性 推定值는 0.23~0.25 정도로서 1977년부터의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경우와 거의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麥酒 價格에 대한 交叉價格彈力性은 약 0.65~0.67 정도로 나타나 麥酒 價格이 變動할 경우 長期的으로 燒酒의 需

&lt;表 IV-3&gt; 燒酒에 대한 回歸分析 結果(短期)

資料期間 模 型	1970~1996		1977~1996			
	SOJU-1	SOJU-2	SOJU-3	SOJU-4	SOJU-5	SOJU-6
常 數	-10.415 (-12.827)	-10.761 (-12.255)	3.731 (11.880)	3.733 (10.222)	3.746 (12.595)	3.526 (10.410)
$d_{74-5}$	-36.362 (-4.863)	-33.670 (-4.344)	-	-	-	-
$d_{78}$	13.759 (18.929)	4.062 (18.466)	-	-	-	-
$d_{89}$	3.395 (6.843)	-	3.603 (5.767)	-	3.536 (8.477)	3.849 (8.013)
$d_{91}$	-	3.452 (4.606)	0.003 (0.144)	3.287 (4.555)	-	-
燒酒 價格	-0.322 (-5.469)	-0.357 (-5.577)	-0.252 (-4.523)	-0.283 (-4.435)	-0.249 (-4.776)	-0.251 (-5.137)
麥酒 價格	0.732 (9.807)	0.783 (9.853)	0.621 (8.046)	0.675 (7.859)	0.617 (8.581)	0.674 (8.059)
위스키 價格	-	-	-	-	-	-0.033 (-1.133)
GNP <sub>t</sub>	1.320 (20.780)	1.327 (19.839)	0.306 (13.833)	0.282 (14.561)	0.307 (13.875)	0.307 (14.723)
GNP <sub>t</sub> × $d_{74-5}$	2.771 (4.876)	2.567 (4.358)	-	-	-	-
GNP <sub>t</sub> × $d_{78}$	-1.029 (-19.189)	-1.051 (-18.705)	-	-	-	-
GNP <sub>t</sub> × $d_{89}$	-0.237 (-3.875)	-	-0.253 (-5.782)	-	-0.248 (-8.546)	-0.270 (-8.071)
GNP <sub>t</sub> × $d_{91}$	-	-0.240 (-4.689)	-	-0.230 (-4.658)	-	-
R <sup>2</sup>	0.999 <0.999>	0.999 <0.999>	0.999 <0.999>	0.999 <0.999>	0.999 <0.999>	0.999 <0.999>
D.W.	2.373	2.350	2.516	2.412	2.520	2.646
推定方法	C-O	C-O	C-O	C-O	C-O	C-O
MMSE	0.058	0.058	0.028	0.034	0.028	0.028
LAD	1.842	1.845	1.206	1.355	1.201	1.251
構造 變化	9.132	8.362	7.292	8.125	11.831	11.630
檢定 F-값	[2.74, 4.20]	[2.74, 4.20]	[3.49, 5.95]	[3.81, 6.70]	[3.81, 6.70]	[3.89, 6.93]

註: 1.  $d_{74-5}$ ,  $d_{78}$ ,  $d_{89}$ ,  $d_{91}$ 은 각각 1974~1975년 기간, 1978년과 1989년, 1991년부터의 기간만 1의 값을 가지고 나머지는 0임.

2. ( ) 안과 < > 안은 t-값과 자유도가 調整된 R<sup>2</sup>값임.

3. [ ] 안은 需要 構造變化 檢定の 5% 및 1%의 臨界值임.

要는 燒酒 價格이 變動할 때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燒酒에 대한 長期所得彈力性은 약 1.4 정도로서 매우 彈力的인 것으로 나타나 1977년부터의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경우와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1970년부터의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경우에는 1978년 및 1989년부터의 기간에 대한 水準 및 기율기더미에 대한 계수 추정치가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보면, 1977년부터의 자료를 이용한 경우와 마찬가지로의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1978년부터의 기간에 대한 더미를 고려할 경우 1980년대의 長期所得彈力性은 약 0.18~0.28 정도이고 1978년 및 1989년부터의 기간에 대한 더미를 고려할 경우 1990년대의 長期所得彈力性은 0.06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는바 양자간의 차이는 별로 없다고 할 수 있다.

燒酒에 대한 短期需要와 長期需要에 대한 推定結果를 비교해 보면, 양자간에는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燒酒 價格 및 麥酒 價格에 대한 係數 推定值, 즉 自己價格彈力性 및 交叉價格彈力性은 短期彈力性의 경우보다 長期彈力性이 다소 작은 값을 가지는 것을 볼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차이는 燒酒 또는 麥酒의 價格이 變動하였을 경우 그것이 一時的인 것이냐 또는 恒久的인 것이냐의 여부, 또는 가격이 변동된 이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기 이전 또는 이후인지의 여부에 따라 소비자들이 서로 다르게 대응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즉, 價格의 變動이 一時的이거나 또는 가격이 변동된 직후에는 消費者들의 消費心理가 상대적으로 크게 萎縮 또는 弛緩되어 消費量이 크게 變動한다.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음주가 일상생활에 깊이 뿌리박고 있을 뿐만 아니라 燒酒가 大衆酒로서 매우 넓은 消費層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價格의 變動이 恒久的이거나 또는 가격이 변동된 이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燒酒의 消費가 價格變動에 대해 상대적으로

&lt;表 IV-4&gt; 燒酒에 대한 回歸分析 結果(長期; 3年 移動平均)

資料期間	1970~1996		1977~1996	
模 型	SOJUL-1	SOJUL-2	SOJUL-3	SOJUL-4
常 數	-11.513 (-13.393)	-12.146 (-5.118)	3.698 (16.481)	3.865 (40.436)
$d_{78}$	15.225 (20.462)	16.661 (6.180)	- -	- -
$d_{89}$	3.173 (6.480)	- -	3.475 (11.466)	3.171 (21.213)
燒酒 價格	-0.253 (-5.102)	-0.231 (-2.544)	-0.233 (-6.114)	-0.255 (-10.033)
麥酒 價格	0.650 (8.883)	0.677 (5.022)	0.644 (11.584)	0.628 (21.409)
위스키 價格	- -	- -	-0.026 (-1.295)	- -
$GNP_t$	1.423 (19.705)	1.433 (6.595)	0.299 (22.614)	0.293 (40.532)
$GNP_t \times d_{78}$	-1.144 (-20.452)	-1.251 (-6.170)	- -	- -
$GNP_t \times d_{89}$	-0.222 (-6.455)	- -	-0.244 (-11.433)	-0.222 (-21.142)
$R^2$	0.999 <0.999>	0.999 <0.999>	0.999 <0.999>	0.999 <0.999>
D.W.	2.121	1.790	2.492	2.422
推定方法	OLS	C-O	OLS	C-O
MMSE	0.011	0.070	0.002	0.002
LAD	0.760	1.992	0.307	0.345
構造 變化 檢定 F-값	139.868 [2.96, 4.67]	87.109 [3.55, 6.01]	67.020 [3.98, 7.21]	66.299 [3.98, 7.21]

註: 1.  $d_{78}$ 과  $d_{89}$ 는 각각 1978년부터의 기간과 1989년부터의 기간만 1의 값을 가지고 나머지는 0임.

2. ( ) 안과 < > 안은 t-값과 自由度가 調整된  $R^2$ 값임.

3. [ ] 안은 需要 構造變化 檢定の 5% 및 1%의 臨界值임.

鈍感하게 반응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 다. 위스키

위스키에 대한 需要函數의 설명변수로는 수요구조의 변화를 포착하기 위해 더미를 채택하였고, 價格效果를 포착하기 위해서는 위스키, 麥酒, 燒酒의 價格을 채택하였다. 그리고 所得效果를 포착하기 위해서는 國民總生產을 선택하였다. 시간추세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위스키의 경우에는 1977년부터 가격과 관련한 자료가 이용가능하였기 때문에 1977년부터의 자료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短期需要에 대한 分析結果를 살펴보자.

위스키의 경우에는 短期所得彈力性이 작게는 1.2 정도에서 크게는 1.9 정도로 매우 높게 추정되었다. 이는 위스키가 고급주로서 消費가 所得에 대해 매우 彈力的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1980년대 초에는 所得彈力性을 중심으로 需要構造의 變化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80~1983년 기간에 대한 水準 및 기울기더미에 대한 추정결과로부터 알 수 있는바, 이 기간 동안 위스키에 대한 所得彈力性은 상당히 크게 減少하였다. 이 시기는 우리나라가 정치적·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였는바 그러한 것이 원인이 되어 위스키의 소비가 불안정하게 변동하였다. 그에 따라 1980년대 초에는 위스키에 대한 所得彈力性이 대체로 陰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는바 위스키가 所得과 反對方向으로 消費되었다.

위스키의 경우에는 燒酒 價格에 대한 交叉價格彈力性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燒酒 價格이 변동하더라도 위스키의 消費는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결과를 '나'項의 燒酒에 대한 수요 분석결과와 연계하여 볼 경우, 燒酒와 위스키간에는 소비의 대체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유도할 수 있다.

&lt;表 IV-5&gt; 위스키에 대한 回歸分析 結果(短期)

模 型	WHISKY-1	WHISKY-2	WHISKY-3	WHISKY-4	WHISKY-5	WHISKY-6
常 數	-16.709 (-5.982)	-16.260 (-8.457)	-12.172 (-7.028)	-11.591 (-5.861)	-18.546 (-10.783)	-17.978 (-7.021)
$d_{90-3}$	23.288 (2.496)	22.391 (2.782)	20.418 (2.215)	24.250 (2.914)	20.983 (2.906)	19.347 (2.090)
$d_{90-9}$	- -	- -	- -	- -	0.117 (1.839)	0.124 (1.786)
위스키 價格	-0.630 (-3.074)	-0.627 (-3.050)	-0.441 (-2.153)	-0.373 (-1.960)	-0.894 (-4.252)	-0.908 (-4.420)
麥酒 價格	1.151 (1.803)	1.045 (2.441)	- -	- -	1.793 (3.834)	1.679 (2.828)
燒酒 價格	-0.099 (-0.179)	- -	0.441 (0.983)	- -	- -	0.151 (0.282)
GNP <sub>t</sub>	1.542 (5.880)	1.516 (8.192)	1.619 (4.948)	1.927 (11.660)	1.248 (6.816)	1.191 (4.225)
GNP <sub>t-3}</sub>	-1.724 (-2.522)	-1.659 (-2.806)	-1.510 (-2.237)	-1.787 (-2.926)	-1.560 (-2.942)	-1.441 (-2.127)
R <sup>2</sup>	0.998 <0.998>	0.998 <0.998>	0.997 <0.996>	0.996 <0.995>	0.999 <0.999>	0.999 <0.998>
D.W.	2.071	2.061	1.894	1.867	2.169	2.167
推定方法	C-O	C-O	C-O	C-O	C-O	C-O
MMSE	1.076	1.052	1.158	1.837	0.994	0.979
LAD	8.873	8.761	9.310	11.306	8.135	8.091
構造 變化	4.289	4.691	3.822	4.236	3.672	3.244
檢定 F-값	[3.89, 7.21]	[3.89, 6.93]	[3.89, 6.93]	[3.81, 6.70]	[3.59, 6.22]	[3.71, 6.55]

註 : 1.  $d_{90-3}$ 과  $d_{90-9}$ 은 각각 1980~1983년, 1989~1991년 기간만 1의 값을 가지고 나머지는 0임.

2. ( ) 안과 < > 안은 t-값과 自由度가 調整된 R<sup>2</sup>값임.

3. [ ] 안은 需要 構造變化 檢定の 5% 및 1%의 臨界值임.

반면에 麥酒 價格에 대한 短期交叉價格彈力性은 작게는 1.045에서 크게는 1.793 정도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麥酒의 價格이 變動됨에 따라 위스키의 消費가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項에서 맥주에 대한 수요 분석결과를 보면 위스키의 價格이 變動하더라도 麥酒의 消費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과 매우 대조적이다. 이는 麥酒 消費의 絶對水準이 매우 큰 반면 위스키의 경우에는 消費의 絶對水準이 상대적으로 매우 작기 때문에 麥酒의 價格이 변동될 경우 위스키의 소비가 조금만 영향을 받아도 위스키의 총소비량에 대비한 소비량의 변화효과가 매우 크게 나타나는 반면에, 위스키의 가격이 변동될 경우 麥酒의 消費가 영향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麥酒의 總消費量에 대비한 麥酒 消費의 變化效果는 상대적으로 매우 작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위스키의 自己價格彈力性은 추정식에 따라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난 燒酒 價格을 설명변수에서 제외하고 또한 상대적으로 추정치의 t-값이 다소 낮게 나타나기는 하였지만 1980년대 말에서 1990년대 초에 이르는 기간 동안에 위스키에 대한 기초수요를 나타내는 水準더미를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WHISKY-5와 WHISKY-6을 보면 대체로 0.9 정도인 것으로 추정되었는바 價格에 대해 상당히 彈力的임을 볼 수 있다.

위스키에 대한 短期需要를 분석한 需要函數 가운데 가장 적절한 推定式으로는 燒酒 價格을 포함하지 않은 WHISKY-5인 것으로 판단된다.

위스키에 대한 長期需要 分析結果는 다음과 같다.

短期需要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長期需要에서도 燒酒 價格이 위스키의 需要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러 기간에 대한 需要構造의 變化를 포착

&lt;表 IV-6&gt; 위스키에 대한 回歸分析 結果(長期; 3年 移動平均)

模 型	WHISKYL-1	WHISKYL-2	WHISKYL-3	WHISKYL-4
常 數	-21.115 (-4.922)	-20.678 (-5.537)	-19.325 (-6.205)	-15.697 (-8.540)
$d_{81-3}$	29.353 (2.362)	29.183 (2.483)	29.092 (2.541)	24.395 (2.133)
$d_{89}$	-0.024 (-0.259)	-	-	-
$d_{91-2}$	0.053 (0.697)	0.0049 (0.701)	-	-
위스키 價格	-0.919 (-3.063)	-0.913 (-3.224)	-0.780 (-3.812)	-0.717 (-3.439)
麥酒 價格	2.265 (2.235)	2.228 (2.345)	1.825 (2.476)	0.950 (2.281)
燒酒 價格	-0.939 (-1.413)	-0.873 (-1.502)	-0.777 (-1.412)	-
$GNP_t$	1.902 (5.620)	1.837 (8.519)	1.891 (9.631)	1.679 (12.740)
$GNP_t \times 91-3$	-2.161 (-2.365)	-2.149 (-2.488)	-2.142 (-2.545)	-1.800 (-2.139)
$R^2$	0.996 <0.992>	0.996 <0.993>	0.996 <0.993>	0.995 <0.992>
D.W	2.074	2.017	1.856	1.524
推定方法	OLS	OLS	OLS	OLS
MMSE	0.202	0.204	0.214	0.260
LAD	3.403	3.434	3.589	4.217
構造 變化	1.591	2.341	3.441	3.129
檢定 F-값	[3.84, 7.01]	[3.86, 6.99]	[4.10, 7.56]	[3.98, 7.21]

註 : 1.  $d_{81-3}$ ,  $d_{89}$ ,  $d_{91-2}$ 는 각각 1981~1983년 기간, 1989년부터의 기간, 1991~1992년 期間만 1의 값을 가지고 나머지는 0임.

2. ( ) 안과 < > 안은 t-값과 自由度가 調整된  $R^2$ 값임.

3. [ ] 안은 需要 構造變化 檢定の 5% 및 1%의 臨界值임.

하기 위해 도입된 水準더미 또는 기울기더미의 종류에 관계없이 모두 동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설명변수에서 燒酒 價格을 제외한 推定式 WHISKYL-4를 중심으로 논의하기로 하자.

WHISKYL-4에 의하면 위스키의 (長期)自己價格彈力性は 약 0.72 정도로서 短期需要의 경우보다 다소 非彈力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燒酒에 대한 需要分析에 있어 燒酒 및 麥酒 價格에 대한 長短期 價格彈力性的의 差異에서 보는 것과 매우 유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특징적이다. 우리나라에서 위스키는 대부분 고가주로서 다른 주류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비층이 일부의 계층으로 국한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위스키의 價格이 變動하게 되면 變動의 絶對水準이 다른 종류의 주류에 비해 크게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위스키의 價格 變動에 따라 위스키의 消費가 크게 영향을 받게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위스키에 대한 기존의 소비층은 상당히 얇지만, 소득수준이 상당히 크게 향상된 현 시점에서 본다면, 종전에는 위스키가 고가이기 때문에 잠재 수요로 남아 있던 소비자들의 상당 부분이 가격이 인하될 경우에는 명시적인 소비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최근에는 위스키의 價格이 상당히 크게 下落하면서 위스키의 消費量이 急增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쉽게 이해할 수 있다.

麥酒 價格에 대한 交叉價格彈力性は 0.95 정도로 매우 높게 나타났는바 만약 麥酒의 價格이 引上된다면 위스키에 대한 消費가 상대적으로 크게 增加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위스키에 대한 長期所得彈力性は 약 1.68 정도로 매우 높게 추정되었다. 이는 위스키가 高級 高價酒로서 所得水準이 크게 向上되고 消費패턴이 高度化·大衆化되면서 위스키가 점차 消費의 底邊을 擴大하고 있는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3. 主要 酒種間 代替關係

第2節의 需要 分析結果를 볼 때 麥酒와 燒酒, 그리고 非對稱的인 것은 하지만 麥酒와 위스키 등과 같은 일부 주종의 경우에는 消費의 代替現象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 반면에 위스키와 燒酒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아무런 消費의 代替關係를 볼 수 없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서로 다른 주종으로 분류되는 麥酒와 燒酒間에는 消費의 代替關係가 존재하는 반면에 燒酒와 위스키는 동일한 스피릿類에 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兩者間에는 消費의 代替關係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특기할 만하다. 이는 최근 日·EU 酒稅協議에서 나타난 결과는 물론이고 현재 진행중에 있는 韓·EU 酒稅協議에서 EU가 주장하고 있는 燒酒와 위스키간의 直接競爭 또는 代替關係가 사실과 다를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계량분석 자체가 지니는 분석의 한계 또는 계량분석시의 가정이 현실적이지 못할 수 있는 가능성 등을 고려한다면 第2節의 計量分析 結果에 대해 그 의미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계량분석 결과가 현상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주류의 소비추이를 모두 반영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나 第2節에 나타난 분석결과는 일반적인 상식과 상당히 부합되는 면이 많은 것으로 사료된다. 예를 들면 종전에는 燒酒와 麥酒에 대한 주된 消費者層이 상당히 區分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다만 최근에는 경제 전반에 걸친 所得水準의 向上 및 平準化에 따라 燒酒의 주된 消費者가 역시 麥酒도 많이 消費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麥酒와 燒酒間에 消費의 代替關係가 있다는 분석결과가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 또한 麥酒와 위스키간에도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미약하나마 그러한 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燒酒의 경우에는 大衆酒로서 거의 모든 계층이 즐기는 주종인 반면 위스키의 경우에는 所得水準의 지속적인 向上에 따라 消

費者層이 中低所得層으로 급속히 擴散되고는 있으나 아직까지는 위스키의 주된 소비자층과 소주에 대한 주된 소비자층간에는 상당히 큰 乖離가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위스키와 소주는 直接競爭 또는 代替關係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몇 가지 단적인 차이점을 지적한다면, 燒酒와 위스키간에는 대부분 價格隔差가 매우 크다는 점, 전자의 경우에는 주된 소비장소가 일반 대중음식점이고 후자의 경우에는 고급주점과 고급레스토랑 등이 대부분이라는 점, 주류의 성질상 스피릿類라는 점에서는 동일한 종류의 주종이지만 일반인들은 소주와 위스키를 완전히 다른 종류의 제품으로 인식하고 있는 점, 음용 형태의 차이 등을 들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차이점을 놓고 볼 때 우리나라에서 燒酒와 위스키의 市場은 상당한 정도 分離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燒酒와 위스키간에 消費의 代替關係가 없다는 第2節의 計量分析 結果는 妥當性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V. 韓·EU 酒稅協議와 우리나라 酒稅制度의 問題點

本章에서는 酒稅率 體系를 포함하여 우리나라의 酒稅制度가 지니고 있는 문제점을 짚어보고 酒稅制度和 관련한 外國과의 通商問題를 살펴본다. 또한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韓·EU 酒稅協議의 진행 상황에 대해 살펴본다. 第2節에서는 1990년대 초에 진행되었던 韓·EC 양자협약에 대해 살펴보고, 第3節에서는 최근 진행중에 있는 韓·EU간 酒稅 關聯 通商協商 問題에 대해 살펴본다. 그리고 第4節에서는 韓·EU 酒稅協議의 先例라고 할 수 있는 日·EU 酒稅協議의 결과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칠레·EU 酒稅協議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면서 示唆點에 대해 간략히 논의한다. 第5節에서는 飲酒와 國民保健과의 관계 및 酒稅 課稅體系의 形態에 대해 간략히 살펴본다. 第6節에서는 從量稅와 從價稅, 第7節에서는 일부 주류에 대한 공급구역 제한 제도의 문제점 등에 대해 살펴본다.

## 1. 우리나라 酒稅率 體系의 問題點

우리나라의 酒稅率 體系의 問題點을 요약하면 크게 稅負擔의 衡平性和 飲酒에 따른 外部不經濟 측면에서의 問題點, 일부 주류에 대한 酒種의 分類를 새로이 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酒類의 種類를 크게 스피릿類, 와인, 麥酒의 세 가지로 대분류하고 있으며, 주세율 체계는 이러한 분류 체계하에서 同種의 製品 또는 類似 製品으로서 競爭關係에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同一한 稅率을 適用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상당 수의 국

가에서는 일부 주종의 경우에는 알콜度數에 따라 稅率을 差等化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상당 수의 국가에서 알콜度數에 따라 酒稅率을 差等化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나친 飲酒가 人體에 有害하다는 데 根據하여 高알콜酒에 대한 消費를 抑制하는 데 근본 취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高알콜酒에 대해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價格效果에 따라 高알콜酒의 消費를 抑制함으로써 飲酒에 따른 外部不經濟를 縮小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주류를 모두 11가지로 세분화하고 있으며 酒稅率 體系도 同種 또는 類似 製品으로서 競爭關係에 따라 稅率을 差等化하기보다는 階層別 稅負擔의 衡平性 측면에 우선순위를 두어 稅率이 책정되어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에서는 酒稅率 적용에 있어 알콜度數의 差異에 따른 稅率 差等化는 없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稅負擔의 衡平性 측면에 置重하여 酒稅率을 適用함에 따라 서민 대중이 많이 소비하는 주류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을, 중·고소득층이 많이 소비하는 주류에 대해서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동일한 종류의 酒類라고 하더라도 酒種에 따라 稅率 隔差가 큰 편이다. 스피릿類를 예로 들어보면 1997년 현재 위스키의 경우에는 100%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반면 稀釋式 燒酒의 경우에는 35%(蒸溜式 燒酒는 50%)가 적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위스키의 경우 대부분 알콜도수가 40도이고 稀釋式 燒酒의 경우에는 대부분 25도인 점을 놓고 볼 때 현재의 稅率 隔差는 알콜度數의 差異보다 稅率 隔差가 더 크다.

또한 우리나라의 酒稅率 體系가 稅負擔의 衡平性 측면을 고려하여 책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부 주종의 경우에는 그러한 원칙이 제대로 적용되고 있지 않는 등 일관적이지 못한 모습도 갖고 있다. 일례로 麥酒의 경우를 보면 1997년 현재 130%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어 모든 酒類 가운데 가장 세율이 높다. 이는 麥酒보다 高級·高

價酒라고 할 수 있는 위스키나 브랜디에 대한 稅率(100%)보다 높다. 따라서 과세의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麥酒는 알콜度數가 대부분 5도 이하인 반면 위스키나 브랜디, 燒酒 등은 이보다 훨씬 높음에도 불구하고 麥酒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있어 飲酒에 따른 外部不經濟 측면에서도 麥酒 稅率 이 다른 주류보다 높은 것에 대한 정당성을 찾기 어렵다<sup>1)</sup>.

현행 주세법에 따르면 燒酒 또는 그와 유사한 주종 가운데 제조 과정에서 자작나무숯으로 여과하는 경우에는 소주에서 제외하여 다른 주종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드카는 자작나무숯으로 여과하기 때문에 一般蒸溜酒로 분류되고 있다. 보드카는 제조공정 및 주류의 성격상 소주와 매우 유사하지만 濾過手段의 差異에 따라 다른 주종으로 분류되는 것은 다소 문제의 소지가 있다. 더욱이 현행 주세법에 따른 주류 분류상 보드카는 일반증류주로 분류됨에 따라 소주의 세율(35% 또는 50%)보다 높은 80%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를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소주와 보드카를 여과수단의 차이에 따라 다른 주종으로 분류하는 것은 일본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이다. 그런데 일본의 경우에는 1996년에 종결된 日·EU 酒稅協議에서 소주와 보드카를 사실상 동일 제품인 것으로 판정하였는바 주종 재분류의 필요성을 뒷받침해 준다고 볼 수 있다.

## 2. 最近의 酒稅 關聯 韓·EU 兩者協議

1990년대 초에 EC는 우리나라의 酒類 關聯 酒稅, 教育稅 및 關稅率 體系가 輸入 酒類에 대해 差別的이라고 주장하면서 兩者協議를 제의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酒稅 課稅體系의 形態와, 燒酒

1) 맥주에 대한 세율이 위스키에 대한 세율보다 낮아지게 된 것은 1990년대 초의 韓·EC 酒稅協議의 결과 위스키의 세율을 인하하였기 때문이다.

와 위스키間的 酒稅率 隔差 問題, 關稅率 調整 問題 등을 중심으로 1991년에 고위급 회담을 개최하게 되었으며 이후 수차에 걸쳐 양자간에 실무회의가 개최되었다. 兩者協議에서 EC는 우리나라 酒稅의 課稅體系를 從量稅 體系로 改編할 것과 일부 주류에 대해 稅率을 調整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EC측의 주장이 부당함을 지적하고 이에 강력히 반대하였는바 EC는 從量稅 체계로의 개편 요구를 철회하였다.

다만 양자의 합의에 따라 일부 주류에 대한 稅率이 調整되었다. 먼저 燒酒와 위스키間的 稅率 隔差 問題와 관련하여 위스키에 대한 酒稅率을 引下하는 방향으로 합의하였는바 이에 따라 1994년과 1996년의 두 차례에 걸쳐 위스키와 브랜디에 대한 酒稅率이 150%에서 120%, 100%로 시차를 두고 引下하였다. 또한 蒸溜酒에 대한 關稅率도 1994년과 1996년의 두 차례에 걸쳐 40%에서 30%, 20%로 引下하였다. 이와 같이 위스키와 브랜디에 대한 酒稅率이 引下되었던 반면에 麥酒에 대한 稅率은 종전과 같은 150%의 세율이 그대로 적용되었다. 이에 따라 麥酒와 위스키간에 酒稅率의 逆轉現象이 나타나게 되었다.

酒稅分 教育稅와 관련해서는, 그 동안 燒酒에 대해서는 教育稅를 부과되지 않았으나 1995년부터 10%의 教育稅를 부과하기 시작하였다.

이상과 같이 1990년대 초에 韓·EC간의 주세협약이 타결됨에 따라 양자간의 주세 관련 분쟁이 진정국면에 들어가는 듯하였으나 1996년 日·EU 酒稅協議가 종결되면서 우리나라의 주세율 체계에 대해 EU가 다시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 문제가 양자간에 현안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보다 자세히 논의하기로 한다.

### 3. 最近의 韓·EU 酒稅協議 進行狀況

1996년에는 日·EU 酒稅協議가 WTO 분쟁 해결 절차에 따라 중

결되었다. WTO의 패널은 일본의 주세법이 燒酒와 위스키간의 稅率을 差等하는 것은 GATT 규정에 위배된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그러한 내용을 담은 패널 보고서가 발간되었다. 이에 따라 일본은 소주와 위스키간의 세율 격차를 최소 허용기준 이내의 범위로 축소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EU는 日·EU 酒稅協議에서 勝訴함에 따라 일본에서 燒酒와 위스키간의 稅率 隔差를 最小 許容基準(de minimis) 以下로 縮小하게 된 데 이어 다음 협상대상으로 우리나라를 지목하였다. EU는 日本 酒稅에 대한 WTO의 패널 보고서를 기초로 우리나라의 酒稅制度가 輸入酒類에 대해 여전히 差別的이라고 주장하면서 재차 韓·EU 酒稅協議를 개최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1997년 1월 17일 브뤼셀에서 회의를 가졌다. 이 회의에서 EU는 국산 주류와 수입 주류, 특히 그 가운데 燒酒와 위스키간의 稅率 隔差를 납득할 만한 수준, 즉 최소 허용기준 이내로 축소할 것을 우리측에 요구하였다. 그러나 우리측은 시장에서의 소주의 위치, 소비자들의 소주와 위스키간 음주형태의 차이, 위스키와 소주간에 대체관계가 없다는 점 그리고 최근 위스키의 수입이 매년 40~50%씩 증가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EU측의 주장이 부당함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EU에서는 1997년 3월 15일까지 납득할 만한 수준의 세율 개편안을 제시할 것을 우리측에 요구하였다. 1997년 3월 중순 우리 정부에서는 5월 중순에 양자협의를 개최하여 개편안을 제시하겠다는 의사를 EU측에 전달하였다.

그러나 EU는 우리측의 수정 제의에 관계없이 1997년 4월 2일(우리나라의 접수 일자는 4월 4일) 주세 문제에 관한 GATT 제22조 제1항 규정에 의거하여 협의개시를 요청하였다. 즉 EU는 우리나라의 주세 관련 문제를 WTO에 제소하는 한편 이와 별도로 WTO체제 밖의 양자협의로도 제시하는 등 두 가지 경로로 우리나라의 주세 문제를 협의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EU와의 양자협의를와는 별도로 제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WTO체제 내에서

협의를 개최하여 논의하게 되었으며, 여기서 합의에 실패하는 경우에는 패널이 구성되어 본격적인 분쟁 해결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日·EU 및 칠레·EU 酒稅協議에서도 보았듯이 韓·EU 酒稅協議의 핵심 논의대상은 蒸溜酒 또는 스피릿類에 대한 것으로서, 그 가운데 특히 가장 큰 爭點事項은 燒酒와 위스키간의 稅率 隔差 문제이다. 즉 EU는 日·EU 酒稅協議의 결정에 따라 GATT 제3조 제2항이 규정한 바에 따라 비록 燒酒와 위스키가 同質品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直接競爭 또는 代替關係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양자간의 稅率을 均等化하거나 稅率 隔差를 最小 許容基準 以內로 縮小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밖에 日·EU 酒稅協議의 결정 사항에 따르면 燒酒와 위스키뿐만 아니라 브랜디, 진, 럼 등의 스피릿類와 리큐르 등도 이들 주종과 직접경쟁 또는 대체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주세제도 개편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및 대응 논리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EU의 주장은 이미 日·EU 酒稅協議에서 승소한 바 있어 EU는 日本 주세제도에 대한 WTO 패널의 결정사항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韓·EU 酒稅協議에서는 燒酒와 위스키간에 대체관계가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日·EU 酒稅協議와 유사한 결론이 도출되는 경우에는 燒酒와 위스키 및 이와 유사한 酒種에 대한 현재의 세율 격차를 축소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제적으로 용인되고 있는 사항, 즉 예를 들면 알콜도수의 차이에 따른 세율 격차는 최소 허용기준 이내의 범위에서 수용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日·EU 酒稅協議의 결과에 따르면 보드카와 소주가 동질품으로 판정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제조공정상 여과수단의 차이로 양자간의 주종 분류 및 적용세율을 차등화하고 있다.

이는 곧 日·EU 酒稅協議의 결과에서 보듯이 양자가 사실상 동질품이라는 결론을 차치하고라도 양자간의 구분이 부당하다는 EU측의 주장도 상당 부분 수긍이 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세율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개편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보드카와 소주의 주종 분류가 차등화되어 있는 것을 동일 酒種으로 再分類하거나 同一한 稅率을 適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4. 日·EU 및 칠레·EU 酒稅協議

##### 가. 日·EU 酒稅協議

日本은 酒稅制度和 관련하여 EU로부터 1986년과 1995년 두 차례에 걸쳐 WTO에 제소당하였으며 이에 따라 각각 이듬해인 1987년과 1996년에 패널 보고서가 나왔다. 패널의 결정내용을 보면 두 번 모두 사실상 日本이 敗訴하고 EU가 勝訴하였다고 할 수 있다. 第1次 日·EU 酒稅協議의 결과 일본에서는 燒酒와 위스키간의 稅率 隔差를 종전에 비해 크게 縮小하였다. 그러나 第2次 日·EU 酒稅協議의 결과 아직도 양자간에 세율 격차가 크다는 패널의 결정에 따라 현재 양자간의 세율 격차를 최소 허용기준 3%로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세법을 개정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1) 第1次 酒稅協議

1986년에 EU(당시는 EC였음)는 주요 주류에 대한 酒稅率 隔差를 염두에 두고 日本의 酒稅法이 GATT 규정 제3조 제2항에 違背된다고 주장함에 따라 日·EU 酒稅協議가 개시되었다. EU가 자기들의 주장을 뒷받침해 준다고 하는 GATT 제3조 제2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GATT 제3조 제2항은 同質品('like' products) 및 直

接競爭 또는 代替關係(directly competitive or substitutable)에 있는 물품에 대해 差別的으로 課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同質品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모두 同一한 稅率을 적용하여야 하고, 直接競爭 또는 代替關係에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最小 許容基準 정도의 稅率 差異만을 正當한 것으로 認定하여 허용된다.

日本과 EU는 1986년에 개최된 兩者協議에서 異見을 좁히지 못하여 결국 EU가 日本을 提訴함에 따라 분쟁 해결 절차로 이행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87년에 패널이 설치되어 본격적인 분쟁 해결 절차에 돌입하였는바 그 결과로써 패널 보고서가 작성되었다. 패널은 GATT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協議對象 酒類가 ‘同質品’인지 또는 ‘直接競爭 또는 代替關係’에 있는지를 重點 調査하였다. 이에 따라 패널은 日本의 酒稅法이 上기 主류에 대해 差別的으로 稅率을 適用하여 國產酒類를 保護하고 輸入酒類를 差別하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에 日本에서는 燒酒와 위스키 등의 主류간에는 代替關係가 없으며 酒稅率 體系도 差別的이지 않다고 주장하였으나 패널은 日本의 主稅율의 差別적이기 때문에 市場에서 上기 主류간 대체관계가 근본적으로 왜곡되었다고 하여 日本의 主張을 棄却하였다.

1987년의 패널 보고서에서는 日本 主稅법의 일부 조항이 GATT 제3조 제2항에 不합되지 않는다는(inconsistent) 결론을 도출하였다. 즉 패널은 產品의 特性, 最終 消費형태, 上품 分類번호 등을 基準으로 眞, 보드카, 위스키, 브랜디, 發泡性 와인 등을 동질품으로 볼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또한 패널은 一般증류주, 위스키, 브랜디, 소주, 리큐르, 發泡性 와인 등이 직접경쟁 또는 대체관계에 있다는 결론도 내렸다.

## 2) 第2次 酒稅協議

1987년에 종결된 第1次 日·EU 酒稅協議에서의 패널 결정사항에

따라 日本은 燒酒에 대한 酒稅率을 引上하는 한편 위스키 등에 대한 酒稅率을 引下하였으며, 위스키 등에 적용되는 從價稅 부분을 廢止하였다. 그러나 EU는 第1次 日·EU 酒稅協議의 결과에 따라 改正된 酒稅法에 기초한 日本의 酒稅制度가 여전히 위스키를 비롯한 輸入 酒類에 대해 差別的이라고 하여 1995년에 兩者協議를 개최하게 되었다. 그러나 第2次 日·EU 酒稅協議에서도 第1次 日·EU 酒稅協議에서와 마찬가지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였는바 이듬해인 1996년에 EU가 일본을 WTO에 제소하게 되었다. 第2次 日·EU 酒稅協議에서도 WTO의 패널은 일본의 주세제도가 輸入 酒類에 대해 주세율을 차등하여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GATT 제3조 제2항에 위배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는바 그러한 내용을 위주로 WTO가 최종판결을 내림으로써 일본이 패소하게 되었으며 판결 내용을 담은 제2차 패널 보고서가 작성되었다.

<表 V-1> 日本의 酒稅率 調整

(單位: 度, 엔/千리터)

		알콜 度數	現 行 (A)	改 正			稅率引上幅 (D-A)
				1997.10.1~ 1998.9.30(B)	1998.10.1~ 2001.9.30(C)	2001.10.1~ (D)	
燒 酒	甲類	25	155,700 (6,228)	201,900 (8,076)	248,100 (9,924)	248,100 (9,924)	92,400
	乙類	25	102,100 (4,084)	150,700 (6,028)	199,400 (7,976)	248,100 (9,924)	146,000
위스키類		40	982,300 (24,558)	551,000 (13,775)	409,000 (10,225)	409,000 (10,225)	-573,300
스피릿類		37	367,300 (9,927)	367,188 (9,924)	367,188 (9,924)	367,188 (9,924)	-112
리큐르類		12	98,600 (8,217)	119,088 (9,924)	119,088 (9,924)	119,088 (9,924)	-20,488

註:1. ( ) 안은 알콜分 1度當 從量稅率(額)임.

2. 스피릿類는 (一般)蒸溜酒 등을 말하며 보드카는 스피릿類에 포함됨.

原資料: 日本 大藏省.

資料: 財政經濟院.

第2次 日·EU 酒稅協議에서의 주된 쟁점 사항은 1987년의 패널 보고서에 따라 일본 주세가 개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日本의 酒稅法이 여전히 燒酒와 보드카, 스피릿類(일반증류주), 위스키 등에 대해 稅率을 差等化함으로써 國產 酒類를 保護한다는 것이었다. 1996년에 작성된 第1次 패널 보고서에서는 燒酒와 보드카가 同質品이며, 燒酒와 스피릿類, 위스키, 브랜디 등은 直接競爭 또는 代替關係에 있다는 결론을 도출한 바 있음은 전술한 바와 같다.

第2次 日·EU 酒稅協議에서 패널의 결정에 따라 日本은 위스키의 稅率을 대폭 引下하고 燒酒의 稅率을 引上하는 방향으로 1997년 3월 말에 酒稅法을 改正하였으며 1997년 10월에 發효될 豫정에 있다. 개정 주세법안에서는 향후 5년에 걸쳐 燒酒와 스피릿類, 리큐르類는 알콜도수 1도 및 1킬리터당 9,924엔으로 稅額을 일치시키고, 위스키類의 稅率은 3%의 차이를 두어 알콜도수 1도 및 1킬리터당 10,225엔으로 조정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日·EU 酒稅協議가 패널의 결정에 따라 종결되었는바 WTO의 결정 내용을 15개월 이내에 이행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日本이 향후 5년에 걸쳐 세율을 조정하는 법안을 통과 시킴에 따라 이 문제가 일본과 미국간에 또 다른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sup>2)</sup>.

#### 나. 칠레·EU 酒稅協議의 進行狀況

칠레에서는 스피릿類의 일종인 피스코라는 주류가 葡萄酒와 麥酒에 이어 가장 많이 소비되고 있어 大衆酒로서 인기가 높으며, 그 다음으로는 위스키를 많이 소비하고 있다. 칠레의 酒稅에 대한 과세 체계는 從價稅 체계로 되어 있어 우리나라와 상당히 유사한 점이 많다. 칠레에서는 현재 피스코에 대해 20%의 주세율을 적용하고

2) 이 문제에 대해 EU측에서는 이행기간을 5년으로 하는 것에 대해 양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있으며 위스키에 대해서는 70%의 주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EU는 칠레의 주세가 피스코와 위스키간의 세율 격차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주세협약이 전개되었다. 1996년 칠레·EU 기본협력협정의 최종 협상과정에서 EU는 상기의 내용을 중심으로 칠레의 酒稅制度가 위스키를 비롯한 輸入酒類에 대해 差別的이라는 견해를 피력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였다. 이에 최근 칠레 정부에서는 알콜도수에 따른 세율 격차를 4%로 축소하는 주세법 개정안을 검토중에 있다. 그러나 의회에 계류중인 칠레의 주세법 개정안에 대해 EU는 충분하지 않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EU는 칠레 정부가 제시한 주세율 체계 개선안에 따른 위스키와 피스코의 세율 격차가 여전히 크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더 이상의 진전이 없는 경우 WTO에 제소할 것으로 알려져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 다. 示唆點

韓·EU 酒稅協議는 물론이고 日·EU 酒稅協議와 칠레·EU 酒稅協議에서의 공통적인 사항을 정리해 보면, EU는 위스키와 유사한 특성을 지니거나 경쟁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주류에 대해 위스키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GATT 규정에 위배된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이에 근거하여 EU는 해당국과 주세협의를 개최하며, 합의 도달에 실패할 때에는 WTO에 제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86~1987년과 1995~1996년의 두 차례에 걸친 日·EU 酒稅協議의 결과를 보면, EU는 일견 유사성을 발견하기 어려운 燒酒와 위스키에 대해 差等稅率을 適用하는 것을 문제삼아 日本을 WTO에 提訴하였다. 日·EU 酒稅協議에서 日本은 燒酒와 위스키간에 直接競爭 또는 代替關係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반면 EU는 현상적으로 燒酒와 위스키間에 直接競爭 또는 代替關係가 없는 것처럼 보

이더라도 그것은 酒稅率이 差等化되어 있기 때문에 直接競爭 또는 代替關係가 源泉的·人爲的으로 封鎖되면서 消費者의 嗜好도 크게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EU는 第1次 日·EU 酒稅協議에 따라 위스키와 燒酒에 대한 稅率 隔差가 縮小된 이후 日本에서 위스키의 市場占有率이 上昇하였다는 점이 兩者間에 直接競爭 또는 代替關係가 있음을 시사해 준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日本과 EU는 서로 상반된 견해를 피력하였으나 WTO의 패널은 그 가운데 EU의 주장을 받아들여 燒酒와 위스키가 直接競爭 또는 代替關係에 있다고 하여 피소국(일본)이 제시한 논거를 기각하였다. 이와 같은 전례는 우리나라에서 1994년과 1996년 두 차례에 걸쳐 위스키에 대한 稅率을 引下한 이후 위스키의 市場占有率이 급속히 增加하고 있는 점을 놓고 볼 때 韓·EU 酒稅協議에서도 유사하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비록 日·EU 酒稅協議에서 EU의 주장이 채택되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燒酒와 위스키의 주 소비자층이 구분되어 있다는 점, 日本과 달리 燒酒가 大衆酒라는 점 등의 차이점을 놓고 볼 때, 燒酒와 위스키가 直接競爭 또는 代替關係에 있다는 EU의 주장이 일본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견해는 부당하다고 할 수 있다.

日·EU 酒稅協議에서 皮소국(일본)은 EU측 주장의 부당성을 입증하고자 代替彈力性에 대한 計量分析 結果와 市場調査 結果를 제시하였으나 패널은 분석결과가 신빙성을 가지지 못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계량분석은 대부분 일정한 가정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분석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가정 자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가정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계량분석을 통해 논리를 개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일본에서와 같이 계량분석의 결과가 소주와 위스키간에 직접경쟁 또는 대체관계가 없다는 것을 보여 준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통계적 가정에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에

는 분석결과가 채택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다만 計量分析 結果가 棄却된다고 하더라도 그것 자체가 燒酒와 위스키間的 直接競爭 또는 代替關係가 없다는 결론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님은 물론이다. 따라서 韓·EU 酒稅協議에 대비한 대응논리를 개발함에 있어 계량분석 결과를 이용하는 데에 상당히 많은 애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GATT 및 WTO체제하에서 자유무역 질서가 더욱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EU가 우리보다 힘에 있어 우위에 있고 또한 日·EU 酒稅協議라는 先例가 있기 때문에 신중한 대처가 필요하다.

타국과의 주세협약에 있어 同質品 또는 直接競爭 또는 代替關係에 있는 주류에 대해서는 최소 허용기준 이내의 범위에서만 세율 격차를 인정할 뿐 본질적으로 같은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EU의 기본 방침인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燒酒와 위스키간에 대체관계가 없음에 대한 논리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우리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는 바, 그러한 경우에는 燒酒와 위스키간의 稅率 隔差가 最小 許容基準 以內로 縮小되지 않는 한 韓·EU 酒稅協議에서 양자협약에 의한 협상타결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보드카와 燒酒의 경우에는 日·EU 酒稅協議에서 同質品으로 판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기준으로 볼 때에도 양자간의 구분에는 타당성이 작은바, 우리나라에서도 일본과 같이 양자의 세율이 다른 상황에서 이에 대한 稅率調整 또는 酒種의 再分類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EU가 타국과의 주세 분쟁에 있어 중점적으로 논의한 대상은 스피릿類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또한 WTO 패널의 결정 사항을 분석해 볼 때 알콜도수의 차이에 따라 세율 격차를 두는 것은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대부분의 EU 국가에서도 스피릿類에 대해서는 알콜도수에 비례하여 세율을 책정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알콜度數 差異에 따른 稅率 差等化는 일반적인 현상인 것

으로 판단된다. 다만 그러한 것이 대부분 從量稅 課稅體系 아래에서 운용되고 있는 반면 從價稅 課稅體系 아래에서는 아직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고 있는 선례가 없다는 점이 중요한 고려요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

韓·EU 酒稅協議에서 우리나라의 酒稅 課稅體系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으나 1990년대 초에 진행되었던 韓·EC 酒稅協議에서 EC가 주장하였던 바와 마찬가지로 EU가 우리나라의 酒稅 課稅體系를 從量稅 體系로 개편할 것을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문제와 관련하여 日·EU 酒稅協議에서 WTO의 최종결정 내용을 담은 패널 보고서에 따르면, 'GATT 제3조가 회원국에게 특정한 형태의 조세제도나 규제장치를 채택하도록 하거나 또는 특정 회원국이 가지고 있는 제도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개편)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해 EU가 동의<sup>3)</sup>한 바 있다'고 하였는 바 현행의 증가세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에 대해 EU측이 부당성을 지적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酒稅制度의 差別性 與否를 判斷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소국(그 가운데 美國) 및 피소국(日本)에서 모두 주세법 제정의 '目的과 效果'(aim and effect) 분석방법을 제안하였으나 패널은 이 방법으로는 조사의 객관성 유지 및 사실여부 판단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하여 거부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주세법이 수입 주류를 차별하려는 의도(목적)가 없다는 주장은 EU 또는 패널에 대해 설득력을 가지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韓·EU 酒稅協議에서도 日本 등이 주장한 내용을 반복

3) WTO 패널 보고서(1996) p. 58 참조.

"The Community agreed that Article III does not require Members to adopt a particular system of taxes or regulations, or to harmonize with a system of a particular Member."

하는 정도로는 우리의 주장을 관철시킬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韓·EU 酒稅協議에서는 燒酒와 위스키間에 代替關係가 없음에 대한 보다 명확한 증거 제시가 필요하다. 또한 대응방안을 모색함에 있어서는 GATT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수준에서 국제적으로 용인되는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가 불가피하게 수용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수용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실정에 부합되도록 협상안을 제시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5. 飲酒와 國民健康

우리나라의 주세율 체계는 稅負擔의 衡平性 측면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는 반면 음주에 따른 社會的 外部費用 측면은 소홀히 하고 있음은 第1節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물론 그러한 것이 저소득층이 많이 소비하는 大衆酒에 대해 세율을 낮게 책정함으로써 稅負擔의 逆進性을 補完할 수 있다는 長點이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주류 소비량은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에 있을 뿐만 아니라 飲酒에 따른 각종 弊害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즉 음주에 따른 폐해의 예로는 알콜中毒, 飲酒運轉, 飲酒에 따른 生産性 減少, 酒類 生産 消費에 따른 直·間接的인 水質汚染 등 다수를 지적할 수 있다. 따라서 外部不經濟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주세율 체계를 살펴보면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범세계적으로 吸煙이나 飲酒에 따른 弊害를 縮小시키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酒稅率 體系도 稅負擔의 衡平性뿐만 아니라 外部不經濟 측면도 고려하여 차제에 합리적으로 改編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高價酒·低價酒의 區分이라는 단일 기준에 추가적으로 알콜도수의 차이도 함께 고려하여 酒稅率 策定の 基準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것은 세계적인 추

세라는 점에서도 설득력이 있다.

## 6. 從價稅와 從量稅

많은 국가에서 酒稅의 課稅體系를 從量稅 체계로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시장경제가 발달하기 이전부터 술에 대한 소비 및 과세가 이루어졌지만 주세를 징수함에 있어 당시에는 가격을 기준으로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시장경제가 형성된 이후에도 대부분의 酒類 製造 流通業者가 從量稅 體系를 유지하는 것이 稅負擔 側面에서 有利하기 때문에 그러한 체계가 유지되어 왔다. 따라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주세 체계가 從量稅 構造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론적으로 그것이 반드시 바람직하기 때문임은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오히려 이론적으로는 상대가격 구조를 왜곡하지 않는 從價稅 體系가 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비록 상대가격 측면에서 종가세 체계가 보다 효율적이지만 종량세 체계하에서는 알콜도수의 차이에 따른 세율 차등화가 종가세의 경우보다 더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從價稅와 從量稅 體系 중 어느 것을 選擇하느냐의 문제는 당사국의 傳統과 慣習, 文化的 背景, 納稅 및 徵稅 關聯 諸般 環境, 納稅意識, 納稅 및 徵稅費用, 課稅의 目的 등이 어떠한지에 달려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오래 전부터 종가세 체계를 유지하여 왔는데, 주세율 체계로서 어떠한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는 우리나라의 주세 정책의 목표가 무엇인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 7. 酒類의 供給區域 制限問題

우리나라에서는 일부의 주류 제품에 대해 공급구역이 제한되어 있다. 酒稅法 第38條 第7項에는 ‘稀釋式 燒酒의 自道 燒酒 100분의 50 이상 購入命命’이 규정되어 있다. 이 조항은 1995년 12월 세법

개정시에 신설되었다. 이 조항의 주요 내용은 酒類販賣業者의 판매장이 소재한 지역<sup>4)</sup>과 같은 지역에 소재하는 제조장으로부터 매월 稀釋式 燒酒 總購入額의 100분의 50 이상을 구입하도록 하고 있다.

이 조항은 기본적으로 지역산업 보호라는 명분하에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시장에서의 자율경쟁원칙을 인위적으로 제한함으로써 기업의 자율경쟁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소비자들의 선택기회를 제한하여 총체적인 사회후생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같이 판매구역을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단기적으로는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지역산업을 보호하는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지만 장기적으로는 국민경제의 자원 배분을 상대적으로 효율성이 낮은 부문에 과다하게 배분하게 되는 문제를 낳을 뿐만 아니라 경쟁제한에 따른 관련 산업의 경쟁력 둔화와 소비자들의 후생감소를 야기할 것이므로 경제학적 관점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규정은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稀釋式 燒酒의 自道 燒酒 100분의 50 이상 購入命令을 규정한 주세법 第38條의 第7項은 효력이 상실되어 사실상 폐지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공급구역을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경제학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법적인 측면에서도 적절하지 않다는 점이 입증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4)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대전광역시 및 충청남도는 각각 1개 지역으로 보고, 부산광역시와 그 밖의 道는 각각 별개의 지역으로 본다.

## VI. 酒稅率 體系의 改善方案과 期待效果

本章에서는 우리나라의 실정에 부합하도록 酒稅率 體系에 대한 改編方案을 제시하도록 한다. 아울러 개선방안을 제시함에 있어서는 對外通商 문제도 함께 고려하여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한다.

### 1. 現行 酒稅制度의 基本 改編方向

本節에서는 주요 酒種間 稅率 隔差 問題, 燒酒와 보드카의 關係에 입각한 酒種 再分類 또는 稅率 調整 問題, 그리고 酒稅率 體系에 대한 전반적인 改編方向에 대해 논의한다.

#### 가. 스피릿類間 稅率 隔差 問題

주류를 크게 麥酒, 스피릿類, 와인의 세 가지로 구분할 경우 대부분의 高알콜酒는 스피릿類에 속한다. 따라서 飲酒에 따른 外部不經濟를 縮小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보면 스피릿類에 대한 주세율 체계에 대한 개편의 필요성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外部不經濟 側面에서 스피릿類에 대한 주세율 체계의 개편을 논함에 있어서는 대내적으로 飲酒의 弊害를 縮小하고자 상대적으로 高알콜酒에 대한 消費를 抑制하는 목적에서뿐만 아니라 對外通商 問題까지도 함께 고려하여 주세율 체계에 대한 개편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먼저 대내적으로 飲酒에 따른 外部不經濟를 縮小한다는 차원에서 주세율 체계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한다면 알콜度數가 같은 주류에 대해서는 同一한 稅率로 과세하고 알콜도수가 다른 주류에 대해

서는 서로 상이한 세율로 과세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주종에 따라 기준이 되는 세율에 차등을 두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과세의 형평성 차원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외에 對外通商에 국한하여 초점을 맞추는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 범주에서 개편방향을 생각할 수 있다.

첫째, 현재 韓·EU간에 현안이 되고 있는 스피릿類, 특히 그 가운데 燒酒와 위스키간의 稅率 隔差 問題와 관련하여 兩者間에 直接競爭 또는 代替關係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현행 주세율 체계에 대한 개편의 필요성을 논할 수 있다. EU에서는 燒酒와 위스키가 모두 스피릿類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양자간에 직접경쟁 또는 대체관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소주와 위스키간에는 주된 소비자 계층이 다를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소비(음주)형태가 크게 다르다는 점, 그리고 주류의 주된 판매장소 등의 측면에서 상당히 큰 괴리가 있는바 직접경쟁 또는 대체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韓·EU 酒稅協議에서 燒酒와 위스키間에 直接競爭 또는 代替關係에 있다는 EU의 주장이 부당하다는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양자간에 직접경쟁 또는 대체관계가 있다는 EU의 주장이 설득력을 잃게 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주세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EU 등과의 對外通商 問題의 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현행 주세율 체계가 부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행 주세율 체계가 飲酒에 따른 外部不經濟 문제 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은 면이 있으므로 改善의 餘地가 있음은 물론이다.

둘째, 앞에서 제기한 命題, 즉 燒酒와 위스키간에 直接競爭 또는 代替關係가 없다는 점이 韓·EU 酒稅協議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에는 燒酒와 위스키 등 스피릿類 전반에 대한 稅率 調整이 불

가피할 수 있다.

日本에서는 第1次 日·EU 酒稅協議에 따라 위스키와 燒酒의 稅率 隔差가 縮小된 이후 위스키의 市場占有率이 上昇하였다는 점이 兩者間의 代替關係를 보여주는 證據라는 第2次 日·EU 酒稅協議의 패널 보고서가 있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1994년 이후 위스키의 稅率이 引下되면서 위스키의 國內 市場占有率이 上昇하였는바, EU의 주장에 대한 대응논리를 개발함에 있어 보다 신중해야 한다. 따라서 燒酒와 위스키간에 直接競爭 또는 代替關係가 있다고 EU측이 주장하고 韓·EU 酒稅協議에서 WTO의 패널도 EU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나라 酒稅率 體系에 대한 改編이 불가피할 수 있다. 이러한 논리는 비단 燒酒와 위스키 등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여타의 一般蒸溜酒와 리큐르 등 스피릿類 전반에 걸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從量稅 體系를 가지고 있는 외국의 경우를 보면 알콜도수의 차이에 따라 세율을 차등화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와 같이 從價稅 體系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아직 국제적으로 선례가 없다. 그러나 증가세 체계하에서도 알콜도수 차이에 따른 세율 차등화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스피릿類에 대한 세율을 알콜도수의 차이에 따라 비례적으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는 飲酒에 따른 社會的 外部費用 縮小 차원에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外部不經濟 縮小라는 대내적인 酒稅制度의 改編 必要性에 입각한 주세율 체계에 대한 改編方向과도 一致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日·EU 및 칠레·EU 酒稅協議의 결과 또는 진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燒酒와 위스키간의 주세율 격차를 알콜도수에 따라 비례적으로 차등화시키는 것 또한 EU측이 주장하는 최소 허용기준 원칙에 부합되지 않는 매우 극단적인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만은 없다. 따라서 세번째 개편방향으로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소주와 위스키 등 스피릿類 전반에 걸쳐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 나. 燒酒와 보드카의 關係

燒酒와 보드카는 제조공법상 濾過手段의 差異를 除外하고는 사실상 同一하므로 同一 酒種으로 再分類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여과수단(자작나무숫인지의 여부)의 차이가 보드카와 소주의 주종 분류를 차별화할 수 있는 만큼 중요한 구분 기준인지에 대한 명확한 당위성을 제시하는 것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드카와 소주를 인위적으로 구분하지 않음으로써 불필요한 通商摩擦을 回避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주종 분류를 새로이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기준이 되는 세율을 일치시키더라도 동일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 다. 其他 酒類에 대한 酒稅率 問題

앞의 ‘가’項과 ‘나’項에서 논의한 주류를 제외한 나머지 주류는 酒精, 濁酒, 麥酒, 藥酒類, 果實酒 등이 있다.

이 가운데 酒精과 濁酒의 경우에는 酒稅率 體系의 改編問題에 있어 개편의 필요성이 거의 없다. 왜냐하면 酒精의 경우에는 거의 전량이 소주 제조용으로 소비되며 그러한 경우에는 소주에 대한 주세 부과시 주정에 대해 기납부된 주세가 공제되기 때문이다. 濁酒는 주류 소비패턴의 고도화가 진전되면서 소비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대표적인 열등재의 하나이다. 따라서 사실상 탁주에 대한 주세의 과세가 점차 무의미해지고 있는바 탁주에 대해 주세율을 개편할 필요성이 없다고 할 수 있다.

藥酒類와 果實酒의 경우에도 주세율 체계 개편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藥酒類 가운데 쌀을 발효시켜 제조하는 청주의 경우에는 속칭 쌀와인(rice wine)이라고도 불리듯

이 와인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과일주 가운데 포도주 등의 경우에도 와인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와인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청주와 포도주 등은 동종의 주류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양자간에는 원료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비록 제조공정이 유사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별개의 주류로 보는 것이 보다 합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더욱이 일반적으로 포도주 등의 와인과 청주간에는 주된 소비자층과 음용 형태 등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는바 양자를 별개의 주류로 보아 세율을 차등화하더라도 별다른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麥酒의 경우에는 다른 酒種과의 課稅의 衡平性 問題가 제기되고 있다. 즉, 麥酒는 稅負擔의 衡平性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飲酒에 따른 外部不經濟의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위스키, 브랜디 등에 비해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것이 합당하다. 왜냐하면 위스키나 브랜디 등의 경우에는 일부의 고소득층에 소비가 집중되어 있는 반면 맥주의 경우에는 주 소비자층이 전 소득계층에 걸쳐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고 있어 세부담의 형평성 측면에서 前者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당위성을 찾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맥주 제품의 대부분은 알콜도수가 5도 이하로서 알콜도수가 대부분 40도 정도인 위스키, 브랜디 등에 비해 매우 낮기 때문에 음주에 따른 외부불경제 측면에서도 맥주를 위스키나 브랜디 등에 비해 중과세하여야 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이다.

麥酒의 경우에는 주요 財政品目으로서 현재 주세 수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등 麥酒에 대한 酒稅率을 引下하는 경우 稅收에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제약점으로 지적된다. 그러나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주류 산업 전반에 걸친 상대적 비중 축소와 세수 측면에서 酒稅의 機能弱화가 불가피한 추세라는 점을 감안할 때 중장기적으로도 계속 맥주의 세율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높게 유지하는 것은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다만 최근 경기가 부진

해지면서 세수여건이 전반적으로 매우 열악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단기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는 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의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므로 맥주의 경우에는 최소한 중기적인 관점에서 여타 주류 제품과의 과세 형평성과 외부 불경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율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라. 酒稅率 體系 改編의 基本方向 綜合

對外通商 問題와 관련하여 酒稅率 體系의 改編을 위해서는 韓·EU 酒稅協議의 前提條件, 즉 燒酒와 위스키間의 直接競爭 또는 代替關係에 대한 사실규명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燒酒와 위스키間에 直接競爭 또는 代替關係가 없다는 것을 EU 또는 WTO 패널이 수용하지 않는 경우에 대비하여 차선책으로 양자간의 稅率 隔差를 해소하는 방안도 모색하여야 한다. 또한 通商協商에 對備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酒稅率 體系를 正常化한다는 차원에서 改編方案을 강구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종가세 체계의 기본을 유지하면서 국제규범을 수용하는 수준에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酒稅率 體系를 합리적으로 改編하고 韓·EU 酒稅協議에도 對備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개편방향을 고려해야 한다. 먼저 燒酒와 위스키의 경우에는 알콜도수당 세율을 동일하게 하는 것을 검토하되 주세 정책의 기본방향을 세부담의 衡平性뿐만 아니라 外部不經濟 측면도 고려하여 설정하도록 한다. 다만 從價稅 체계하에서는 알콜도수의 차이에 따른 稅率 差等化 문제에 있어 아직 확립된 규범이 없는바 EU가 주장하는 最小 許容基準을 充足시켜 주는 수준에서 酒稅率 體系를 設定하는 것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보드카와 燒酒의 경우에는 주종 분류에 대한 정의를 통일하거나 또는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아울러 불필요

한 통상마찰을 회피하기 위해 주세율 체계 개편에 있어 附加稅인 教育稅의 稅率도 함께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주세율 체계를 개편하여야 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은 기본적으로 최근 음주에 따른 社會的 外部費用이 급격히 增大되고 있어 국민보건위생 차원에서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1980년대 말부터 자동차 보급이 급속히 확대되면서 飲酒運轉에 따른 交通事故의 增大와 이로 인한 勞動力 損失, 治療費, 物的 被害 등이 급격히 增大되고 있다. 또한 飲酒에 따라 알콜中毒, 勞動生産性 減少, 그리고 酒類의 生産 消費過程에서 水質汚染이 가속화되는 등 社會的 外部費用이 크게 增大되고 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高알콜酒에 대한 消費가 급속히 增加되고 있어 이에 따른 社會的·經濟的 費用, 즉 外部不經濟 問題가 매우 深刻한 상황에 도달해 있다.

그러므로 飲酒와 관련하여 社會的 外部不經濟를 적정 수준으로 縮小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酒稅制度를 消費抑制的 租稅(sumptuary tax) 또는 罪惡稅(sin tax)의인 性格이 強化되도록 改編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국민보건위생 측면에서 국제적으로도 흡연이나 음주와 관련하여 이들 제품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추세에 있거나 또는 흡연이나 음주가 초래하는 사회적 폐해(외부불경제)의 정도에 따라 차등과세하는 경향이 있음을 볼 때 그러한 방향으로의 개편은 시대적 흐름이라고 볼 수 있다.

주류, 특히 그 가운데 스피릿類의 경우에는 국제적으로 알콜도수에 비례하여 세율을 책정하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는 만큼 이는 곧 음주에 따른 外部不經濟의 정도에 따라 差等課稅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동종의 주류라고 하더라도 저알콜주의 경우에는 음주에 따른 외부불경제가 상대적으로 심하지 않은 반면 고알콜주의 경우에는 외부불경제의 정도가 심한 만큼 고알콜주에 대해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저알콜주에 낮은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고알콜주의 소비를 상대적으로 억제하여 사회적 외부불경제를 축소하는 경향이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酒稅의 課稅體系로 從量稅 體系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從量稅 體系下에서 이러한 것이 많이 적용되고 있다. 종가세 체계하에서는 이러한 체계가 아직 국제적으로 확립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종량세 체계하에서 알콜도수에 비례하여 세율을 차등화하는 논리가 종가세 체계하에서는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은 논리적 근거가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같이 주세 체계가 종가세 체계인 경우에도 알콜도수에 비례하여 차등과세함으로써 고알콜주에 대한 소비를 상대적으로 억제할 필요가 있다. 다만 종가세 체계하에서 알콜도수에 따라 세율을 차등화하는 경우 세율결정 기준의 객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스피릿類에 대해 주종의 차이에 불문하고 오직 알콜度數에만 국한하여 酒稅率을 알콜도수에 완전히 比例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은 기본 개편방향은 직접적으로 韓·EU 酒稅協議에 대응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酒稅制度를 合理的으로 改編한다는 차원에서도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韓·EU 酒稅協議에 있어 불가피하게 直接競爭 또는 代替關係에 있는 주종에 대한 주세율을 알콜도수에 관계없이 완전히 동일하게 개편해야 하는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러한 방향으로의 개편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만약 이와 같이 알콜도수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든 스피릿類에 대한 주세율을 동일하게 한다면 이는 상대적으로 저알콜주에 대한 소비를 억제하고 고알콜주에 대한 소비를 촉진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는 곧 飲酒에 따른 社會的 外部不經濟를 더욱 深化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사회·경제·국민보건위생정책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결과를 야기하여 중국적으로는 國民厚生을 劣惡하게 할 것이므로 바람직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한다.

기타 주종에 대해서도 稅率 體系의 衡平性 및 外部不經濟 등을 감안하여 酒稅率 體系를 전반적으로 整備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스피릿類 이외의 주종의 경우에는 韓·EU 酒稅協議와는 관련이 없

지만 이와 별도로 우리나라의 주세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한다는 차원에서 현실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편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 2. 改善方案

本節에서는 改善方案을 모색함에 있어 燒酒와 위스키間에 代替關係가 없다는 점에 초점을 맞춘 것과, 外部不經濟 측면을 고려한 것, 그리고 알콜도수에 관계없이 모든 스피릿類에 대해 同一 稅率을 適用하는 극단적인 경우 등 모두 세 가지 경우로 구분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도록 한다.

### 가. 燒酒와 위스키間 代替關係가 없는 경우

EU는 日·EU 酒稅協議에서 뿐만 아니라 韓·EU 酒稅協議에서도 동일하게 燒酒와 위스키間에 直接競爭 또는 代替關係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EU의 주장은 우리나라에서의 소주와 위스키간의 消費形態, 主 消費階層, 市場占有率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일반적 상식에 어긋난다. 즉, 우리나라에서 燒酒는 大衆酒로서 麥酒 다음으로 消費比重이 높을 뿐만 아니라 주된 소비계층도 서민들을 비롯하여 중산층까지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다. 반면에 위스키와 브랜디 등의 경우에는 일부의 高所得層이 주된 消費階層인바 양자간에는 市場이 區分되어 있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表 III-8> 참조).

따라서 燒酒와 위스키間에 直接競爭 또는 代替關係가 없거나 또는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관계가 경제적으로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미미하다는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주세제도를 EU의 주장에 따라 개편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따라서 EU측 주장에 대한 부당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주세제도에 대한 개편은 불필요하므로 현행 세율을 잠정적으로 유지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주세율 체계를 EU의 주장이 부당하다는 점에서 볼 때 개편이 불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飲酒에 따른 外部不經濟라는 측면에서 볼 때 現行 酒稅率 體系를 補完해야 할 必要性도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주세율 체계를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때에는 그 배경이 우리나라의 주세율 체계를 우리나라의 현실에 부합되도록 개편한다는 측면에서 찾아야지, EU의 주장과 같이 현실과 괴리된 논리를 적용하여 그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현행 세율체계를 유지하는 방안을 잠정적으로 인정하면서 추가적으로 개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項을 참조하기 바란다.

#### 나. 스피릿類 稅率에 대한 알콜도수 比例方案

우리나라의 酒稅率 體系는 稅負擔의 衡平性 측면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는 반면 飲酒에 따른 外部不經濟 측면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하고 있다. 따라서 주세율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前者뿐만 아니라 後者의 측면도 주요 고려사항으로 추가하여 주세제도 개편을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EU가 주장하고 있는 주장에 따른 주세율 체계 개편 문제와도 상당 부분에 있어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주세율 체계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함에 있어 그러한 측면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燒酒와 보드카, 위스키, 여타의 蒸溜酒, 리큐르 등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되 다만 알콜度數에 比例하여 稅率을 適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같이 알콜도수에 비례하는 세율개편 방안에서는 기준세율을 각 방안에 따라 알콜도수 1도당 2.5%, 2.0%, 3.25% 등으로 설정하는 것을 살펴본다. 이러한 경우에는 稅率의 差 등은 알콜度數의 差異에 의해서만 比例的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

특징적이다. 이와 같이 기준세율을 알콜도수 1도를 기준으로 從價稅率을 결정하게 되면 각 스피릿類 제품에 대한 주세율은 기준세율에 알콜도수를 곱하여 산출하는 방식을 택하게 된다. 예를 들어 기준세율을 2.5%/度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알콜도수 30도의 제품은  $2.5\%/度 \times 30度 = 75\%$ 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와 같이 알콜도수 1도당 기준세율을 설정함에 있어서는 스피릿類 내에서 주종의 구분을 불문하므로 最小 許容基準(de minimis)原則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모든 스피릿類에 대해 同一한 稅率을 적용하게 되므로 EU가 요구하는 최소 허용기준 원칙에도 완전히 부합된다.

#### 다. 스피릿類 稅率 一致方案

우리나라 酒稅의 課稅體系는 從價稅 體系인바 주세와 관련하여 종가세 체계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극히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종가세 체계하에서 알콜도수 차이에 따라 주세율을 차등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국제적으로 확립된 규범이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蒸溜酒(또는 스피릿類) 전반에 걸쳐 알콜度數의 高低에 불문하고 무조건 同一한 稅率을 적용해야 하는 극단적인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면 그러한 경우에도 대비하여 모든 蒸溜酒(또는 스피릿類)에 대해 同一한 稅率을 適用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 라. 酒稅分 教育稅率의 改善方案

酒稅分에 대한 現行 教育稅의 稅率은 酒稅率 80%를 기준으로 酒稅額의 10% 또는 30%로 稅率이 差等化되어 있다. 그러나 이미 주세율이 차등화된 상태에서 교육세율까지 차등화하면 酒類別로 總消費稅의 負擔率 隔差는 더욱 擴大된다. 따라서 酒稅分 教育稅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單一稅率 體系로 改編하는 것이 필요한바 酒稅

分 教育稅率은 均等化·單一化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마. 기타 酒類에 대한 酒稅率 調整方案

麥酒에 대한 酒稅率이 위스키보다 높은 것은 衡平性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外部不經濟 측면에서도 當爲性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위스키에 대한 세율 수준 이하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麥酒의 稅率을 下向 調整하는 경우에는 酒稅 收入의 급격한 減少가 예상되는데 短期的으로 麥酒 稅率을 引下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최근 경기가 크게 부진해지면서 稅收 與件도 크게 惡化되고 있어 1997년에는 정부 예산을 당초보다 약 2조원 가량 감축할 예정에 있고 이러한 상황은 내년에도 호전될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 麥酒에 대한 酒稅率을 引下하게 되면 稅收가 추가적으로 減少하게 되어 財政 與件을 더욱 惡化시키게 될 것임은 자명하다.

그러므로 麥酒의 경우에는 현재 주세율을 인하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에서는 이상과 같은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단기적으로 맥주 세율을 인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바 中·長期的으로 對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바. 改善方案 綜合

먼저 第1案의 경우에는 燒酒와 위스키가 直接競爭 또는 代替關係에 있다는 EU측 주장의 부당함이 입증되는 경우이므로 현행의 주세율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이다. 다만 맥주의 경우에는 위스키보다 세율이 높은 것이 문제인바 중기적으로 조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第2~4案은 酒稅率을 알콜度數에 比例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동종의 주류라고 하더라도 알콜도수의 차이에 따라 세율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이에 따라 알콜도수 25도의 소주와 40도의 위스키, 35도의 리큐르에 대한 세율의 상대비는 5:8:7(또는 1:1.6:1.4)로 개편한다.

第2案의 경우에는 알콜도수 1도당 기준세율을 2.5%로 설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경우에는 알콜도수 40도(예: 위스키) 제품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100%의 주세율이 적용되므로 알콜도수 25도의 소주의 경우에는 이에 비례하여 62.5%의 세율이 적용된다.

第3案은 알콜도수 1도당 기준세율을 2.0%로 설정하는 것으로 위스키(알콜도수 40도 기준)에 대해서는 80%, 소주(알콜도수 25도 기준)의 경우에는 이에 50%로 설정하는 方案이다.

第4案은 알콜도수 1도당 기준세율을 3.25%로 설정하는 것으로 위스키(알콜도수 40도 기준)에 대해서는 130%, 소주(알콜도수 25도 기준)의 경우에는 이에 81.25%로 설정하는 方案이다.

第5案은 알콜度數에 관계없이 스피릿類에 대해 모두 同一한 稅率을 적용하는 방안으로 100%의 稅率을 적용한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주세율 개편안을 제안하면 다음의 <表 VI-1>과 같다. 다만 麥酒의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세율을 인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개선방안에서는 中期的인 調整方向을 제시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자 한다.

다만 酒稅率 體系를 개편함에 있어 국내 주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시에 개편하기보다는 3년 정도의 시한을 두고 연차적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lt;表 VI-1&gt; 酒稅率의 改善方案

(單位:%)

	蒸 溜 酒					麥 酒
	麥酒	위스키, 브랜디	一般蒸溜酒	리큐르	알콜 도수	
현행 稅率	35	100	80	50	1 도 당	130
알콜 度數 基準	25	40	40	35	稅 率	-
第 1 案	35	100	80	50	-	100
第 2 案	62.5	100	100	87.5	2.5	100
第 3 案	50	80	80	70	2.0	80
第 4 案	81.25	130	130	113.75	3.25	130
第 5 案	100				-	100

註:1. 향후 3년에 걸쳐 세 차례 정도의 調整을 통해 最終 稅率로 수렴함.

2. 酒精, 濁酒, 淸酒, 果實酒 등의 경우에는 현행 세율 체계를 유지함.

&lt;表 VI-2&gt; 酒稅分 教育稅率의 改善方案

(單位:%)

現 行	改 善 方 案		備 考
酒稅率 80%를 基準으로 10%와 30%로 차등	第 1 案	單一稅率 10% 적용	酒精과 濁酒는 除外
	第 2 案	單一稅率 20% 적용	
	第 3 案	單一稅率 30% 적용	

### 3. 期待效果

#### 가. 通商問題와 衡平性 및 外部不經濟

第1案은 燒酒와 위스키間에 直接競爭 또는 代替關係가 없음이 입증될 경우에 국한하여 타당성을 가질 수 있으나, 만약 그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第1案을 채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작다. 다만 EU측 주장의 부당성이 입증된다고 하더라도 第1案은 주세제도의 합리화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第2~5案의 경우에는 '同質品'이나 '直接競爭 또는 代替關係'에 있는 주종간 세율 격차가 제거되므로 酒稅制度의 差別的 要素가 없어진다. 따라서 EU가 주장하는 세율 격차 문제가 해소되므로 通商 摩擦의 要因을 除去할 수 있다.

第2~5案의 경우에는 稅率調整에 따라 酒種間 相對價格 構造가 變化하여 酒種間 市場占有率이 다소 變化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燒酒의 需要가 다른 주종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대부분 麥酒 등의 需要 增加로 나타나는 반면 위스키에 대한 需要 變化 效果는 별로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반적으로 燒酒에 대한 酒稅率이 引上되기 때문에 燒酒의 價格이 上昇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곧 燒酒의 需要 減少로 연결되어 燒酒 製造會社의 經營壓迫이 예상된다. 특히 대부분의 소주 제조사는 현재 결손을 내고 있기 때문에 세율을 인상할 경우 상당 부분을 경영 합리화 등을 통해 흡수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세율 조정이 연차적·점진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희석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알콜度數에 따라 酒稅率이 差等化되기 때문에 稅負擔의 衡平性뿐만 아니라 飲酒에 따른 外部不經濟 縮小 측면도 상당 부분 반영된다고 볼 수 있는바, 高알콜酒에 대한 稅率이 引上됨에 따라 주류 消費패턴의 變化가 예상되며 이는 곧 社會的 外部費用이 縮小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 나. 價格 및 物價效果

燒酒와 一般蒸溜酒, 리큐르 등 스피릿類의 경우에 稅率을 引上하게 되면 價格이 다소 上昇할 것으로 예상된다. 燒酒의 경우에는 세율이 현행보다 다소 크게 인상되지만 대부분의 소주 제품의 가격이 낮기 때문에 稅率引上에 따른 價格引上의 絶對額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보드카 등의 일반증류주와 리큐르 등도 세율이 조정됨에 따라 가격이 수백원에서 1천원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蒸溜式 燒酒의 경우에는 소량 생산에 따라 제조원가가 높은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稅前價格이 위스키 등보다 높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稅率을 引上하는 경우에는

價格引上 幅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

燒酒의 경우 稅率 및 價格을 引上함에 따라 生産者物價 및 消費者物價 모두 上昇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에 위스키와 브랜디 등은 가격이 소폭 인하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는 物價를 다소 下落시킬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物價가 다소 上昇할 것으로 판단된다.

蒸溜式 燒酒의 경우에는 價格引上率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物價를 引上시킬 수 있는 요인이 있으나 蒸溜式 燒酒의 市場占有率이 매우 낮기 때문에 이에 따른 物價引上 效果는 매우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中期的으로 麥酒의 稅率을 調整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정도의 物價引下 效果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物價上昇 效果가 대부분 相殺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表 VI-3> 酒稅率과 教育稅率 調整에 따른 出庫價格 變化效果

(單位:ml, 度, 원)

	燒 酒				위 스키, 브랜디			一般蒸溜酒	리큐르	麥 酒
	一 般	김삿갓	안동소주	문 배 주	패스포트	원저프리머어12年	발렌타인30年	크리스탈(보드카)	캡 턴 큐	
製品 用量	360	360	800	700	360	700	750	700	700	500(OB)
알콜 度数	25	25	45	40	40	40	43	40	35	4
1996年 稅前 價 格 稅後	232.67 354.47	628.16 957.00	11,726.41 19,993.53	10,221.64 17,427.89	3,171.58 8,026.62	10,000.00 25,300.00	112,980.86 285,841.58	1,140.82 2,560.00	1,818.18 3,100.00	242.61 717.88
第1案 稅後價 (差異)	354.47 (0)	957.00 (0)	19,993.53 (0)	17,427.89 (0)	8,026.62 (0)	25,300.00 (0)	285,841.58 (0)	2,560.00 (0)	3,100.00 (0)	613.80 (-104.08)
第2案 稅後價 (差異)	447.89 (93.42)	1,209.21 (252.21)	30,312.77 (10,319.24)	24,736.37 (7,308.48)	7,675.22 (-351.40)	24,000.00 (-1,100.00)	284,598.79 (-1,242.79)	2,760.78 (200.78)	4,100 (1,000)	587.12 (-130.76)
第3案 稅後價 (差異)	409.50 (55.03)	1,105.56 (148.56)	26,830.03 (6,836.50)	22,037.86 (4,609.97)	6,837.93 (-1,188.69)	21,560.00 (-3,740.00)	252,534.82 (-33,306.76)	2,459.61 (-100.39)	3,680 (580)	523.07 (-194.81)
第4案 稅後價 (差異)	505.48 (151.01)	1,364.68 (407.68)	35,536.89 (15,543.36)	28,784.14 (11,356.25)	8,931.17 (904.55)	28,160.00 (2,860.00)	332,694.74 (46,853.16)	3,212.55 (652.55)	4,730 (1,630)	683.19 (-34.69)
第5案 稅後價 (差異)	563.06 (208.59)	1,520.15 (563.15)	28,377.91 (8,384.38)	24,736.37 (7,308.48)	7,675.22 (-351.40)	24,200.00 (-1,100.00)	273,413.68 (-12,427.90)	2,760.78 (200.78)	4,400 (1,300)	587.12 (-130.76)

註: 1. 一般蒸溜酒와 리큐르는 稅後價格으로부터 稅前價格을 逆算한 것임.

2. 稅後價格은 稅包含 工場渡價格 基準임. 단 麥酒의 稅後價格(1996年)은 稅前價格에 1997年의 酒稅率(130%)를 適用하여 算出한 것임.

3. 教育稅는 모든 酒類에 대해 20%의 稅率을 適用하였음(第2案). 단, 第1案의 경우에는 現행 教育稅率을 적용하였음.

&lt;表 VI-4&gt; 酒稅率과 教育稅率 調整에 따른 物價效果

(單位: %)

		燒酒	위스키, 브랜디	般蒸溜酒, 리큐르	麥酒
第1案	生産者物價	-	-	-	-0.126
	消費者物價	-	-	-	-0.088
第2案	生産者物價	0.098	-0.005	0.002	-0.158
	消費者物價	0.079	-0.004	0.007	-0.111
第3案	生産者物價	0.057	-0.018	-0.001	-0.236
	消費者物價	0.047	-0.013	-0.004	-0.166
第4案	生産者物價	0.158	0.014	0.008	-0.042
	消費者物價	0.128	0.010	0.023	-0.029
第5案	生産者物價	0.218	-0.005	0.002	-0.158
	消費者物價	0.177	-0.004	0.007	-0.111

註: 消費者價格은 出庫價格 變化率과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物價加重指數를 이용하여 直接效果만을 산출하였음.

#### 다. 豫想 需要變化率

<表 VI-1>과 <表 VI-2>에서 제시된 酒稅率 및 教育稅率 體系의 改編方案에 따라 燒酒, 위스키(브랜디 포함), 麥酒에 대한 需要變化率을 예측해 보면 다음의 <表 VI-5>와 보는 바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먼저 燒酒에 대한 需要效果를 살펴보면 세율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第1案의 경우에는 수요가 변화하지 않을 것을 예상되었다. 반면에 酒稅率을 35%에서 62.5%로 인상하고 教育稅의 稅率도 10%에서 20%로 인상하는 경우에는 價格引上에 따른 需要量의 減少效果로 인해 약 7.3% 정도 需要가 減少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주세율을 50%로 인상하는 경우에는 소주의 수요량이 약 4.55% 정도 감소하고, 주세율을 81.25% 또는 100%로 대폭 인상하는 경우에는 각각 10.81%와 13.86%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비록 燒酒의 需要가 價格에 대해 非彈力的이기는 하지만 酒稅率 및 教育稅率이 대폭 引上됨에 따라 價格引上率이 상당히 커지면서 燒酒의 需要量

이 크게 減少하는 것으로 豫想되었다.

위스키와 브랜드의 경우에도 酒稅率과 教育稅率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는 경우에는 需要量의 變化가 없을 것으로 豫想되었다. 그러나 教育稅率을 현재의 30%에서 20%로 引下하는 경우(第2案과 第5案)에는 需要量이 약 4% 정도 增加할 것으로 豫想되었다. 주세율과 教育세율을 각각 80%와 20%로 引하하는 경우(第3案)에는 위스키 수요량이 약 15.4% 정도로 대폭 增加할 것으로 豫想되었다. 반면에 주세율을 130%로 引상하고 教育세율은 20%로 引하하는 경우에는 수요량이 9.13% 정도 減少할 것으로 豫想되었다.

<表 VI-5> 酒稅率과 教育稅率 調整에 따른 豫想 需要變化率  
(1996年 換算)

(單位:%)

	燒 酒	위스키, 브랜드	麥 酒
第 1 案	0	0	11.38
第 2 案	-7.27	4.05	15.06
第 3 案	-4.55	15.38	25.68
第 4 案	-10.81	-9.13	3.35
第 5 案	-13.86	4.05	15.06

註:1. 豫想需要 變化率 추정에 있어서는 第2章의 수요분석 결과 가운데 BEER-1, SOJU-1, WHISKY-5를 기준으로 추정하였음. 다만 教育세율의 세율은 第1案의 경우에만 현행을 유지하도록 하였으며 기타의 경우에는 20%의 세율을 적용하였음.

2. 세전가격은 1996년의 수준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하였음.

3. 麥酒에 대한 개편방안은 중장기적으로 시행하므로 단기 개편에 따른 豫想需要 分析에서는 맥주의 가격이 현행과 동일하다는 가정을 채택하였음.

麥酒의 경우에는 중기적으로 주세율 체계를 개편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는바 그에 따른 수요의 변화율을 豫想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麥酒에 대한 酒稅率을 현재의 130%에서 100%로 引下하는 경우(第1案)에는 價格引下에 따른 需要量 增加로 인해 麥酒에 대한 需要量이 11.38% 정도 增加할 것으로 豫想되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教育세율을 30%에서 20%로 引하하는 경우(第2案)에는 수요

량이 현재보다 약 15%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만약 주세율을 80%로 인상하고 교육세율을 20%로 인하하는 第3案의 경우에는 수요량이 25.68% 정도 증가하여 증가율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반면에 맥주에 대한 주세율을 현재와 같은 130% 수준에서 유지하고 교육세율만 20%로 인하하는 경우에는 수요량이 3.35% 정도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되었다.

#### 라. 稅收效果

第1案은 맥주를 제외하고는 현행 주세율과 교육세율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이다. 따라서 맥주를 제외할 경우 酒稅 및 教育稅 稅收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燒酒의 경우에는 주세율과 교육세율을 각각 35%에서 62.5%, 10%에서 20%로 인상하면(第2案) 需要量이 약 7.3% 정도 減少할 것이지만 단위당 세액은 이보다 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따라 酒稅와 教育稅 稅收은 각각 약 1,400억원과 500억원 정도 增加할 것으로 예상된다. 酒稅率을 50%, 81.25%, 100%로 인상하고 교육세율을 20%로 인상하는 第3案~第5案의 경우에도 세율 및 가격인상에 따른 수요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역시 단위당 세액의 증가로 인해 酒稅와 教育稅 稅收의 합은 각각 1,100억원, 2,900억원, 3,800억원 정도 增加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위스키와 브랜디의 경우에는 현행의 주세율을 그대로 유지하는 한편 교육세율을 30%에서 20%로 인하하는 경우(第2案과 第5案)에는 교육세율의 인하에 따른 가격의 인하로 인해 수요량이 다소 증가할 것인바 酒稅의 稅收은 약 100억원 정도 增加하는 반면 教育稅의 稅收은 약 240억원 정도 減少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酒稅率을 130%로 인상하고 教育稅率은 20%로 인하하는 第4案의 경우에도 第2案이나 第5案과 마찬가지로 酒稅 稅收은 다소 增加하지만 教育稅의 稅收은 減少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주세율과 교육세율을 각

각 80%와 20%로 인하하는 第3案의 경우에는 酒稅 및 教育稅 稅收가 각각 200억원과 300억원 정도 減少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一般蒸溜酒의 경우에는 소비의 절대수준이 매우 작기 때문에 酒稅率 및 教育稅率을 조정하더라도 稅收效果는 매우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또한 리큐르의 경우에도 세율이 크게 상향 조정되더라도 稅收效果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麥酒에 대한 세율을 중장기적으로 조정하는 경우에 예상되는 세수효과는 다음과 같다. 전반적으로 맥주에 대한 세율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稅收效果가 매우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는 기본적으로 麥酒 消費量의 絕對水準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稅率도 상당히 높기 때문이다.

麥酒에 대한 酒稅率을 현행의 130%에서 100%로 引下하는 第1案의 경우에는 酒稅 稅收가 약 1,900억원 정도 減少하고 教育稅의 稅收도 주세 수입 감소분의 30%에 해당하는 약 570억원 정도가 減少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麥酒에 대한 酒稅率의 引下에 따른 단위당 세액의 감소율만을 고려한다면 酒稅收入의 減少率은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세율인하에 따른 가격인하가 需要量의 增加를 동반하기 때문에 稅收 減少效果는 상대적으로 완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주세율을 100%로 유지하지만 교육세율을 현재의 30%에서 20%로 인하하는 第2案 또는 第5案을 볼 때 교육세율의 인하에 따른 가격인하가 수요량의 증가를 가져오기 때문에 第2案과 第5案에서의 酒稅收入 減少效果가 1,500억원 정도로 第1案의 경우에 비해 약 400억원 정도 축소된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교육세의 경우에는 가격인하에 따른 수요량의 증가효과에 비해 교육세율의 인하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教育稅收入은 酒稅收入의 減少效果보다 약간 더 큰 1,600억원 정도일 것으로 예상되었다. 麥酒에 대한 酒稅率을 현행과 같이 130%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교육세의 세율만 20%로 하향조정하는 第4案의 경우에는 酒稅收入

이 약 450억원 정도 증가하는 반면 教育稅收入은 약 1,250억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酒稅率 및 教育稅率의 조정에 따른 稅收效果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중기적으로 세율을 조정하는 麥酒를 제외한 나머지 酒種에 대한 稅收效果만을 살펴보자.

현재의 주세율과 교육세율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第1案의 경우에는 稅收效果가 霽임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알콜도수 1도당 세율을 2.5%로 하고 教育稅의 稅率을 20%로 단일화하는 第2案의 경우에는 위스키와 브랜디로부터 다소의 稅收 減少效果가 있지만 나머지 주종으로부터의 稅收 增加效果가 이를 크게 상회하는바 전체적으로는 약 2천억원 정도 稅收가 增加할 것으로 예상된다. 알콜도수 1도당 세율을 2.0%로 하고 教育稅의 稅率을 20%로 단일화하는 第3案의 경우에는 위스키와 브랜디로부터 약 500억원 정도의 稅收 減少가 예상되는 반면 나머지 주종으로부터는 약 1,300억원 정도의 稅收 增加가 예상되어 전체적으로는 약 800억원 정도 稅收가 增加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알콜도수 1도당 세율을 3.25%로 하고 教育稅의 稅率을 20%로 단일화하는 第4案의 경우에는 위스키와 브랜디에 대한 教育稅의 稅收가 다소 減少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모든 주종으로부터 세수가 증가하여 약 3,650억원 정도 稅收가 增加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알콜도수의 차이에 따른 세율 격차를 허용하지 않고 모두 100%의 세율을 적용하는 第5案의 경우에는 燒酒로부터만 약 3,850억원 정도 稅收가 增加하고 나머지 주종으로부터는 약 200억원 정도의 稅收가 增加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전체적으로는 약 4,100억원 정도 稅收가 增大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상과 같이 주세율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酒稅 및 教育稅의 稅收가 전반적으로 크게 增加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이는 麥酒에 대한 酒稅率 및 教育稅率을 調整할 경우에 예상되는 稅收減少效果를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맥주에 대한 稅收效果까지 합

게 고려하면 稅收는 第1案~第3案의 경우에는 1,200억~4,200억원 정도 減少하는 반면 第4案~第5案의 경우에는 900억~2,850억원 정도 增加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대체로 稅收가 減少한다. 다만 전반적으로 세율을 대폭 인상하는 경우에는 稅收가 소폭 增加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表 VI-6> 酒稅率과 教育稅率 調整에 따른 稅收效果(1996年 換算)

(單位: 億圓)

		燒 酒	위스키, 브랜디	一般蒸溜酒	리 큐 르	麥 酒
第1案	酒 稅	0	0	0	0	-1,915
	教育稅	0	0	0	0	-574
	計	0	0	0	0	-2,489
第2案	酒 稅	1,361	105	9	200	-1,537
	教育稅	480	-239	-2	70	-1,644
	計	1,841	-133	7	270	-3,181
第3案	酒 稅	755	-200	0	109	-3,029
	教育稅	358	-300	-4	49	-1,943
	計	1,113	-500	-4	158	-4,972
第4案	酒 稅	2,221	471	23	346	448
	教育稅	652	-166	1	96	-2,247
	計	2,873	306	24	442	-7.99
第5案	酒 稅	3,032	105	9	272	-1,537
	教育稅	814	-239	-2	81	-1,644
	計	3,846	-133	7	353	-3,181

註:1. 稅收效果 推定에 있어서는 第2章의 수요분석 결과 가운데 BEER-1, SOJU-1, WHISKY-5를 기준으로 1997년의 전년 대비 수요량 증가율을 추정하고 이를 기초로 세율을 추정하였으며, 教育稅의 세율은 20%로 가정하였음. 단, 第1案의 경우에는 현행 教育稅率을 그대로 적용하였음.

2. 稅前價格은 1996년의 수준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하였음.

3. 麥酒에 대한 개편방안은 중장기적으로 시행하므로 단기 개편에 따른 세수효과 분석에서는 맥주의 가격이 현행과 동일하다는 가정을 채택하였음.

4. 一般蒸溜酒와 리큐르는 1996년의 소비량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가정하에서 稅收效果를 추정한 것임.

따라서 최근 경기부진에 따른 稅收 與件 惡化로 財政收支의 惡化

가 우려되는바 麥酒 稅率을 引下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문제를 더욱 惡化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전술한 바와 같이 현실적으로 맥주의 세율을 인하하는 것은 비록 당위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현 시점에서 맥주의 세율을 인하는 방안은 현실적이지 못하다. 이에 따라 맥주의 경우에는 稅收 및 財政與件과 기타 고려사항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長期的으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VII. 맥음말

우리나라의 酒稅率 體系는 稅負擔의 衡平性 側面에 置重하고 있는 반면에 飲酒에 따른 社會的 外部不經濟 측면은 거의 고려되지 않고 있다. 최근 飲酒의 弊害가 심각한 社會問題化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外部不經濟 側面도 감안하여 酒稅率 體系를 改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酒稅制度를 衡平性和 外部不經濟의 두 가지 측면에서 개편할 필요가 있다.

酒稅의 부과형식에는 크게 從量稅와 從價稅의 두 가지로 볼 수 있으며 양자를 혼합한 경우도 상정해 볼 수 있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從量稅 체계로 주세를 과세하고 있다. 주세의 과세체계는 기본적으로 해당 국가의 역사적인 배경과 사회 경제적 여건, 산업 정책적인 측면 등을 모두 고려하여 선택해야 한다. 따라서 주세의 과세체계에 대한 것은 우리나라의 실정에 부합되는 체계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결정해야 할 것이다.

本 研究에서 麥酒, 燒酒, 위스키에 대한 需要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燒酒와 위스키간에는 消費의 代替關係를 찾을 수 없다. 이는 두 주종에 대한 수요함수 추정식에서 각각에 대한 交叉價格彈力性 推定值의 통계적 유의성이 매우 낮은 것에서 찾을 수 있다. 반면에 麥酒와 燒酒間에는 상당한 정도의 代替關係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麥酒와 위스키間에는 서로 상이한 방향으로 代替關係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위스키 價格에 대한 麥酒 消費의 交叉價格彈力性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麥酒 價格에 대한 위스키 消費의 交叉價格彈力性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麥酒 價格의 變動에 따라 위스키의 消費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韓·EU 酒稅協議에 있어 燒酒와 위스키 등의 酒類間에 直接競爭 또는 代替關係가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韓·EU 酒稅協議에서 爭點이 되고 있는 燒酒와 위스키間的 直接競爭 또는 代替關係의 與否에 대해서는 본 연구의 수요분석 결과 그러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日·EU 酒稅協議에서 日本이 계량분석을 통해 日本 內에서 燒酒와 위스키間的 直接競爭 또는 代替關係가 없다는 것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을 놓고 볼 때 신중한 대처가 필요할 것이다. 이와 아울러 酒稅率 調整 問題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對應論理를 開發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燒酒와 위스키間 稅率 隔差 問題가 爭點이 되고 있는 韓·EU 酒稅協議 문제 는 이미 국제적으로 日·EU 酒稅協議라는 先例가 있는 사안인 만큼 우리나라가 현행 주세율 체계를 계속 유지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쟁점 사항인 스피릿類의 경우 우리나라의 주세율 격차가 크기 때문에 현재의 세율 격차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日·EU 酒稅協議에서 보듯이 논의의 핵심은 類似 酒種間 稅率 隔差 縮小에 있는 만큼 이에 대비한 대응논리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주류소비패턴을 고려할 때 燒酒와 위스키間에 直接競爭 또는 代替關係에 있다는 EU측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알콜도수의 차이에 따른 세율 차등화는 이미 국제적으로 용인되고 있는바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EU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국가가 從量稅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알콜도수의 차이에 따른 세율 차등도 종량세 체계하에서 확립되어 있

는 만큼 신중한 대처가 필요하다.

그러나 EU 및 OECD 국가 가운데 멕시코와 터키의 경우에는 酒稅의 體系가 從價稅 構造로 되어 있다. 또한 핀란드에서는 1990년대 초반만 해도 증가세 체계를 유지하였으며, 맥주의 경우에는 알콜도수에 따라 증가세율을 차등화하였다. 따라서 멕시코와 터키에서 증가세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핀란드에서는 종전에 맥주에 대하여 알콜도수에 따라 차등세율을 적용하였던 사례를 원용한다면 從價稅 體系下에서도 알콜度數의 差異에 따라 酒稅率(특히 스피릿類의 경우)을 差等化할 수 있을 것이므로 대외협상에 임해서도 그러한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한 방향으로의 개편은 비단 EU와의 통상협상을 떠나서라도 우리나라의 酒稅率 體系를 合理化한다는 측면에서 적극 검토해야 하는 사항이다.

주류는 대중적인 소비기반을 가지는 嗜好品인 동시에 外部不經濟를 유발하는 財貨이므로 外部不經濟 側面에서의 消費抑制라는 상반된 목표를 추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消費抑制라는 측면에서 高알콜酒에 대한 消費抑制를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外部不經濟 측면에서 볼 때 高알콜酒에 대해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만큼 위스키 등의 稅率을 引下하는 것보다는 燒酒의 稅率을 上向調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燒酒 稅率을 引上하는 것은 EU와의 협상에 있어 불가피하게 선택해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外部不經濟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酒稅率 體系를 合理的으로 改編한다는 차원에서도 妥當性이 있는 만큼 우리의 思考를 轉換적으로 轉換할 필요가 있다.

酒稅率 體系 개편에 있어서는 국내 주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3년 정도의 시한을 두고 연차적·단계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 韓·EU 酒稅協議가 WTO 패널의 판결로 이행하여 종결되는 경우에는 이행의무기간이 15개월로 단축되는바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1990년대 초에 개최되었던 韓·EU 酒稅協議에 의해 위스키와 브랜디에 대한 酒稅率이 引下되어 麥酒보다도 낮은 100%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위스키보다 低價·低級酒이며 알콜도수 또한 매우 낮은 麥酒에 대한 酒稅率도 稅負擔의 衡平性 및 外部不經濟 차원에서 下向 調整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다. 다만 麥酒의 경우에는 총주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70%에 약간 미달하는 정도로서 稅收比重이 매우 높기 때문에 麥酒에 대한 酒稅率을 引下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정도의 稅收 減少가 예상된다. 최근 경기부진에 따라 稅收 與件이 상당히 劣惡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麥酒에 대한 酒稅率은 그 당위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조정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麥酒에 대한 酒稅率은 中長期의인 관점에서 稅收與件을 고려하여 漸進的·段階的으로 引下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위와 같이 主要 酒種에 대한 酒稅率(教育稅率 포함)을 調整하는 경우에는 相對價格 및 絶對價格 變動에 따른 所得 및 價格效果로 인해 酒種別로 需要의 變化率 및 變化方向이 제 각각일 것으로 예상되는바 酒類市場의 再編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한 경우에는 稅率 및 價格이 대폭 引上되는 燒酒의 경우에는 需要減少에 따라 酒類市場 占有比가 下落하는 반면 麥酒에 대한 稅率을 중기적으로 引下하는 경우에는 麥酒의 市場占有率이 上昇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麥酒의 경우에는 燒酒와의 代替關係가 있는 만큼 麥酒에 대한 稅率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燒酒의 稅率을 인상하는 경우에는 麥酒의 市場占有率이 다소 上昇할 것으로 예측된다. 위스키의 경우에도 稅率을 다소 引下하는 경우에는 市場占有率이 지속적으로 增加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위스키의 경우에는 다른 주종과의 代替關係가 별로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바 市場占有率의 上昇은 다른 주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과 같은 酒稅率의 改編은 단기적으로 燒酒 등과 같은 일부 주류산업의 경우에는 市場 縮小로 인해 경영상 압박이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최근에는 일부 소주사들이 경기부진과 자금압박의 가중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주세율의 개편은 이들 회사에 경영압박을 가중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향으로의 개편은 대외통상 문제를 원활히 해소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酒類 關聯 政策을 미래지향적이고 사회적 외부비용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전개하기 위해 불가피한 방향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인 것으로 사료된다.

## 參考文獻

- 姜信逸, 『酒類產業의 構造分析』, 政策研究資料 88-06, 韓國開發研究院, 1988A.
- \_\_\_\_\_, 『酒類產業에 대한 政府規制의 問題點과 改善方向』, 『韓國開發研究』, 第10卷 第3號, 韓國開發研究院, 1988B.
- 關稅廳·韓國關稅研究所, 『貿易統計年報』, 各 年度.
- 國稅廳, 『國稅行政概要』, 1992. 10.
- \_\_\_\_\_, 『酒稅事務處理規程』, 1992. 1.
- 朴宗洪, 『韓國의 消費稅制: 酒稅制度를 中心으로』, 『研究論文集』, 仁荷大學校 產業經濟研究所, 1988.
- 成明宰, 『消費稅에 대한 都·農別·所得階層別 稅負擔 및 逆進度 實態分析에 관한 研究』, 『財政論集』, 제8집, 韓國財政學會, 1993.
- \_\_\_\_\_, 『우리나라 都市家口의 階層別·年齡別 消費稅 負擔 分布에 관한 研究』, 『財政金融研究』, 제3권 제1호, 韓國租稅研究院, 1996.
- \_\_\_\_\_, 『主要 에너지源에 대한 需要分析和 石油類 課稅政策의 改善方向』, 研究報告書 97-10, 韓國租稅研究院, 1997.
- 成明宰·金珍洙, 『個別消費稅制의 政策課題와 改善方向』, 研究報告書 93-08, 韓國租稅研究院, 1993.
- 稅制發展審議委員會 消費稅制度分課委員會, 『稅制發展研究報告書』, 1990. 6.
- 吳然天, 『韓國租稅論』, 서울:博英社, 1992.
- 李啓植·裴竣皓, 『우리나라의 間接稅 負擔分布 分析』, 郭泰元·李啓植 (編), 『租稅政策和 稅制發展』, 研究報告 86-01, 韓國開發研究院, 1986, pp. 61~122.
- 鄭憲培, 『우리나라 酒類產業의 發展의 改編 課題에 관한 研究』, 國際

- 經營經濟研究所, 1988.
- 財務部, 『消費稅制基本統計』, 1992. 9.
- \_\_\_\_\_, 「主要 酒類의 價格 現況」, 1992. 12.
- 車軀權, 「우리나라의 租稅負擔에 관한 考察」, 『經濟論集』, 第5卷 第4號, 서울大學校 經濟研究所, 1966.
- 崔 洸, 『消費課稅의 政策課題와 改善方向』, 韓國開發研究院, 1987. 12.
- \_\_\_\_\_, 「租稅負擔에 관한 實證的 分析」, 『分配正義와 財政政策』中 第8章, 經濟研究叢書 218, 大韓商工會議所 韓國經濟研究센터, 1991, pp. 159~206.
- \_\_\_\_\_, 「酒稅의 課稅論理와 政策課題」, 1992.
- 韓昇洙, 『租稅負擔의 測定과 適正負擔率에 관한 研究』, 韓國經濟研究院 研究叢書 5, 韓國經濟研究院, 1982.
- 大藏省, 『財政金融統計月報』, 1996. 4.
- Brazeau, Ron and Nancy Burr, *International Survey: Alcoholic Beverage Taxation and Control Policies*, edited by Margo Dewar and Howard Collins, Eighth Edition, Brewers Association of Canada, 1992.
- Goldberger, Arther S., *A Course in Econometrics*, Harvard University Press, 1991.
- Heller, P. S., "The Incidence of Taxation in Korea," IMF Fiscal Affairs Department, October 1978(mimeographed).
- \_\_\_\_\_, "Testing the Impact of Value-Added and Global Income Tax Reforms on Korean Tax Incidence in 1976: An Input-Output and Sensitivity Analysis," *IMF Staff Papers*, Vol. 28, No. 2, June 1981, pp. 375~410.
- Kopits, George(ed.), *Tax Harmonization in the European Community: Policy Issues and Analysis*, Occasional Papers 94, Washington D.C.: International Monetary

Fund, 1992. 7.

Judge, George G., W. E. Griffiths, R. C. Hill, H. Lutkepohl, T. Lee, *The Theory and Practice of Econometrics*, Second Edition, Wiley, 1985.

OECD, *Consumption Tax Trends*, Second Edition, 1997.

World Trade Organization, *Japan—Taxes on Alcoholic Beverages*, Report of Panel, 1996(第2次 日・EU 酒稅協議 패널 報告書).

<국문요약>

## 우리나라 酒稅制度의 政策課題와 改善方向

成 明 宰

酒稅의 課稅目的은 財政收入 確保에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1人當 酒類 消費量 增加率이 鈍化되고 人口增加率 또한 下落하면서 主稅의 稅收確保 機能이 低下되고 있다. 반면에 음주운전의 증가, 노동력 손실에 따른 생산성 하락 등과 같은 음주의 폐해가 社會的·經濟的 問題로 크게 대두되면서 飲酒에 따른 外部不經濟의 縮小 必要性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主稅의 課稅목적도 外部不經濟 縮小를 위한 消費抑制的 租稅로서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主稅제도는 대체로 高價·高級酒에 대해 높은 세율을, 低價·低級酒에 대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稅負擔의 逆進性 補完에 치중하고 있는 반면 外部不經濟 縮小 측면에서의 消費抑制 機能이 미약한 편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고급 주류에 대한 소비가 중·저소득층까지 크게 확대되면서 逆進性 補完 機能도 微弱해지고 있다. 따라서 변화된 주류소비 패턴에 따라 主稅의 衡平性 提高 機能에 한계가 노정되고 있는 만큼 그러한 측면보다는 음주에 따른 外部不經濟를 縮小하기 위한 方向에서 酒稅制度를 改編할 必要性이 커지고 있다.

최근 EU는 우리나라의 酒稅制度가 위스키를 비롯한 輸入酒類에 대해 差別的이라고 주장하면서 우리나라의 主稅율 체계를 개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와 EU는 수차례 걸쳐 양자협의를 개최하여 主稅율 체계 문제에 대해 논의하였으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였다. 이에 EU는 우리나라를 WTO에 제소하기에 이르렀다.

한·EU 주세협의를 주된 쟁점은 소주와 위스키에 대한 稅率隔差 문제에 있는바 EU는 燒酒와 위스키가 直接競爭 또는 代替關係가 있기 때문에 최소허용기준 범위 이내로 세율격차를 축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여건변화와 시대적 요청에 따라 대내적으로는 소비 억제적 조세로서 주세의 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대외적으로는 한·EU 주세협의를 원만한 타결을 위해 주세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外部不經濟 축소를 위해 알콜도수가 높은 스피릿류를 중심으로 주세율을 알콜도수에 비례하여 차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현재 맥주에 대한 주세율이 위스키보다 높는데 이는 外部不經濟 및 衡平性의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맥주 세율을 최소한 위스키 세율 이하로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최근의 財政與件이 좋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 맥주 세율을 조정하기보다는 중기적으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은 개편에 있어서는 酒稅의 外部不經濟 縮小效果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게 하기 위해 위스키에 대한 세율을 인하하기보다는 소주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그러한 방향으로 개편할 경우에는 소주의 가격인상이 불가피하게 되는데 관련 주류업계의 경영압박이 예상된다. 그러나 이는 국민경제의 후생증대를 위해 불가피한 것인바 소주회사의 경영압박 문제는 생산성 제고와 신제품 개발 등을 통한 경영 합리화를 통해 내재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Abstract>

## **Reform Proposal for Korean Liquor Tax**

Sung, Myung Jae

The revenue share of Liquor Tax has dwindled in Korea, due to decreases in population growth rate and tax rates, and consumption of liquor per capita.

Nowadays, the externalities from consuming alcoholic beverages such as drunk driving and labor loss become more severe socio-economic problem in Korea. Thus, it is claimed that we need to reduce the externalities caused by overdrink alcoholic beverages. To achieve this goal, it is recommended that Liquor Tax play a role as a sumptuary tax or a sin tax.

In 1996, EU raised the claim that Korean Liquor Tax discriminates imported liquor(mostly whisky) from domestic liquor in terms of differential tax rates. EU believes that Korean Liquor Tax is discriminatory with respect to tax rates between soju and whisky, and so, EU urges that the difference between soju and whisky needs to be within de minimis. Korea and EU hold several talks in the first quarter of 1997, but they did not reach mutual agreement; the dispute on Korean Liquor Tax has continued in WTO.

Therefore, we face two major issues in Liquor Tax; domestic need for reducing externalities and successful dispute settlement. In order to reduce externalities, we suggest that the tax rates be proportional to alcohol content especially for spirits. The reason is that

high alcoholic beverages tend to yield more severe problem than low alcoholic beverages in general. This change may also resolve EU's claim of discrimination between soju and whisky since the discriminatory factor in tax rates could disappear. Furthermore, current rate of beer is higher than that of whisky. However, this is not optimal and so, we need to decrease the rate of beer that of whisky or lower.